



The Women's Studies

2022년 3호

The Women's Studies

2022년 3호

| 연구논문 |

- 성범죄사건 양형판단에서 배심원 특성의 영향과
피고인 요인의 조절효과 황규진·박우현·이수정
- 피해자 의사존중과 강제개입의 논쟁을 통해 살펴본
가정폭력 대응정책의 한계 및 변화의 방향 신나래·박언주
- 한국과 일본 여성 청년 세대의 젠더 의식과 결혼 이행과의 관계 이수진·김주현
- 기혼여성의 경력유지에 성역할가치관이 미치는 영향
- 생존분석방법 적용 황지선·민현주
- 결혼이주여성의 다중부담에 영향 미치는 사회적 관계:
'단단한 껍데기'와 '날개'가 되는 관계를 중심으로 유수정·이청아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고등학생의 수학에 대한
태도와 성취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성차 정병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
TEL : 02-3156-7000 • FAX : 02-3156-7007
홈페이지 : <http://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KWDI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여성연구』는 여성정책 관련 기초이론을 탐색하고, 한국의 여성문제 및 현안해결에 기여할 연구의 동향과 새로운 연구성과를 소개하는 학술지입니다.

『여성연구』는 2009년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여성연구 학술지편집위원회

위원장 :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 원 :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기남 (사)한국인구보건복지협회

김남희 이화여자대학교 안숙영 계명대학교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돌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미주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주혜진 대전세종연구원

김복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무현 상지대학교

김혜경 전북대학교 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남윤주 University at Buffalo,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지편집위원회의 논문심사 기준에 의거 철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 본 학술지에 실린 내용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여성연구』 2022년 4호 논문 공모 안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여성연구』는 여성정책 관련 기초이론을 탐색하고, 한국의 여성문제 및 현안해결에 기여할 연구의 동향과 새로운 연구성과를 소개하는 학술지입니다. 『여성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은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여성연구』 2022년 4호(통권 115호)에 게재할 우수한 논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1. 게재 논문 공모 내용

여성문제 및 여성정책과 관련되는 학문분야의 논문으로서 학술 논문에 요구되는 형식과 체계를 갖춰 작성된 연구 논문에 한합니다. 단,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2. 『여성연구』투고 요령

- 원고 분량은 인쇄쪽수 20쪽(200자 원고지 120매 해당) 이내(요약 포함)로 하되 최대 30쪽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원고 편집 기준 및 자세한 내용은 『여성연구』 논문작성요령을 참조해야 합니다.

3. 투고 자격

여성문제 및 여성정책 관련 연구 전문가

4. 발행예정일 및 논문 마감일 논문접수 일정 및 관련사항

권호	발간예정일	논문접수 마감일
통권 115호	2022. 12. 31	2022. 10. 31

-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호에 게재할 논문의 편수와 순서를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 이월 게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논문접수 기간 이후 접수된 논문의 경우, 다음호로 심사가 이월될 수 있습니다.

5. 논문 제출 방법

-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https://kwdi.jams.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직접 논문 투고

6. 논문 관련 문의

- 전 화 : (02) 3156-7288
- E-mail : journal@kwdimail.re.kr



The Women's Studies

2022년 **3호**

| 연구논문 |

- | | |
|--|-------------|
| 성범죄사건 양형판단에서 배심원 특성의 영향과
피고인 요인의 조절효과 | 황규진·박우현·이수정 |
| 피해자 의사존중과 강제개입의 논쟁을 통해 살펴본
가정폭력 대응정책의 한계 및 변화의 방향 | 신나래·박언주 |
| 한국과 일본 여성 청년 세대의 젠더 의식과 결혼 이행과의 관계 | 이수진·김주현 |
| 기혼여성의 경력유지에 성역할가치관이 미치는 영향
- 생존분석방법 적용 | 황지선·민현주 |
| 결혼이주여성의 다중부담에 영향 미치는 사회적 관계:
'단단한 껍데기'와 '날개'가 되는 관계를 중심으로 | 유수정·이청아 |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고등학생의 수학에 대한
태도와 성취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성차 | 정병삼 |



1. 성범죄사건 양형판단에서 배심원 특성의 영향과 피고인 요인의 조절효과
/ 황규진·박우현·이수정 5

2. 피해자 의사존중과 강제개입의 논쟁을 통해 살펴본 가정폭력 대응정책
의 한계 및 변화의 방향
/ 신나래·박언주 33

3. 한국과 일본 여성 청년 세대의 젠더 의식과 결혼 이행과의 관계
/ 이수진·김주현 55

4. 기혼여성의 경력유지에 성역할가치관이 미치는 영향
- 생존분석방법 적용
/ 황지선·민현주 89

5. 결혼이주여성의 다중부담에 영향 미치는 사회적 관계:
‘단단한 껍데기’와 ‘날개’가 되는 관계를 중심으로
/ 유수정·이청아 113

6.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고등학생의 수학에 대한 태도와 성취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성차
/ 정병삼 141

성범죄사건 양형판단에서 배심원 특성의 영향과 피고인 요인의 조절효과*

황규진**·박우현***·이수정****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의 심리특성, 피고인 요인 등 법률 외적 요인이 배심원의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배심원의 심리특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피고인의 감정보호, 제3자의 선처 탄원서가 조절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가능성이 있는 만 20세부터 69세 사이의 연구 참여자 총 351명(여성 173명, 남성 17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은 배심원일수록 피고인에게 무죄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3자의 선처 탄원서가 피고인의 양형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한편 배심원에 대한 피고인의 감정보호 여부에 따라서는 양형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배심원의 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 통념 수용도와 양형의 관계에서 제3자의 선처 탄원서가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를 통해 법률 외 배심원의 심리특성과 피고인 요인이 배심원의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동정심을 호소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다는 언론의 여론몰이 주장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또한, 성범죄사건의 양형을 결정하는 준거로서 피고인 자신의 변론보다 제3자의 탄원이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제시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양형기준, 국민참여재판, 감정보호, 탄원서, 배심원의 심리특성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제1저자: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박사과정(babypink8227@gmail.com)

*** 공동저자: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박사과정(alucard1720@hanmail.net)

**** 교신저자: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suejung@hanmail.net)

I. 서론

199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자신의 전처와 남자친구를 살해한 O.J 심슨의 배심원 재판에서, 심슨이 범인임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들이 제출되고 다른 유력 용의자도 발견되지 않았으나 배심원은 무죄 평결을 내렸다. 심슨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은 경찰이 심슨에 대해 ‘검둥이(Nigger)’라는 표현을 41차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자 변호인은 배심원에게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하며 감성에 호소하였고, 그 전략이 성공하여 무죄 평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같이 사건관련자들이 배심원의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 변론이나 진술의 오류가 발생하고, 증거와 법적 논리보다 감정에 치우쳐 잘못된 판단을 내릴 소지가 있다(김현수, 2009). 특히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반인은 법관보다 편향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도 존재한다(김청택·최인철, 2010).

이렇듯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의 평의 결과가 변호인과 피고인의 동정심 호소와 법률 외적인 증거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김병수, 2018; 경향신문, 2021; 조선일보, 2012). 우리나라 배심재판에서 법률 내적인 요인과 법률 외적인 혼재된 측면은 피고인을 유죄로 하려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입증이 있어야 하는 즉, ‘의심스러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으나 반대로 피고인이 배심원을 상대로 법률 외적인 측면 중 판결에 유리한 부분을 자극하여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에 이를 수도 있는 양면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London과 Nunes(2000)는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성폭행 혐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에서 사용될 수 없었던 경우, 연구 참여자에게 나체 사진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처벌 판단시 배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참가자들은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고려하여 판단을 내렸다. 이 연구는 성범죄사건에서의 법률 외적인 증거가 판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후 약 10여 년이 지났으나 배제되어야 하는 증거들이 재판에 무분별하게 유입되었을 때 배심원들의 선입견과 편견 형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배심원에 의한 감정 재판, 여론 재판’이라

는 비판이 지속 제기된 바,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고인의 배심원에 대한 감정호소, 피고인 측의 선처 탄원서 제출 여부가 배심원의 유무죄 및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또한, 배심원의 심리특성인 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 통념 수용 도,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배심원에 대 한 감정호소, 선처 탄원서가 이를 조절하는지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 성범죄사건과 무관한 배심원의 통념과 같은 심리특성이 법적판단에 영향을 미 친다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 측이 제 출한 반성문, 선처 탄원서 등 반성이 진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이 불명확한 가해자 중심의 성범죄 감경요소가 배심원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성범죄사 건을 연구 주제로 선정한 것은 성범죄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 청 건수가 적지 않고 성범죄사건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명백한 증거가 부재함에 따라 외적 요인에 의존할 여지가 가장 강한 사건 유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사건의 건수는 살인죄와 비교할 때, 2013년에 살인죄 65건/성범죄 66건, 2014년에 살인죄 54건/성범죄 42건, 2016년에 살인죄 33건/성범죄 31건, 2017년에 살인죄 20건/성범죄 38건으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윤영석, 2021).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형사재 판에서 공정한 판결에 이르기 위해 법률 외적 요인이 성범죄사건 법적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 국민참여재판

대한민국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재판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 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 시행되어 현재까지 운용 중이다. 국민이 재판의 주체로서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국민 주권주의, 참여 민주주의 를 실현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으로부터 신 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한상훈, 2016).

배심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 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로,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참심제는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 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 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제도로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독일은 일반 시민들 중에 선발된 참심원이 직업 법관과 하나의 합의체를 구성하여 직업 법관과 동일한 지위와 동일한 권한을 갖고 함께 재판을 한다(정종섭, 1996).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양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 수정한 독특한 제도이다(대법원 국민참여재판 홈페이지).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기 이전까지의 소송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춘 헌법상 신분과 독립이 보장되는 직업 법관에 의하여 심리·종결되었으나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면서 일반 국민인 배심원도 유무죄 판단과 양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배심원제에 의하면 배심원이 된 국민은 검사와 변호사의 법적 공판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린다(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 제2항). 만약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평결 전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듣는다.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에 따라 진행한다(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 제3항). 이때 배심원은 검사와 변호사가 제시하는 다량의 증거, 이를 뒷받침할 논거 및 전문적인 법률 지식 등이 혼재된 법정에서 단 하루라는 짧은 시간 안에 피고인에 대한 사실판단과 양형 판단을 동시에 마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모든 증거가 배심원의 법적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배심제의 특성상 사실판단과 양형 판단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법정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증거들이 사실판단 단계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유무죄가 불확정적인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전과, 경제 사정, 교육 정도, 사생활 등의 양형 사유들이 공개된 재판에서 노출되어 배심원들에게 불필요한 선입견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피고인의 공정하고 적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협하게 된다(한인섭, 2009; 한상훈, 2016).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강간·강제추행 사건 중 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14건에서 배심원 판단과 재판부 판결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14건 중 12건은 배심원의 무죄를 재판부가 유죄로 뒤집었고, 상급심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이처럼 성범죄사건에 있어서 법관과 배심원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편견과 고정관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 있는데, 배심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정되는 배심원의 심리적 특성과 피고인 관련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성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피해자 보호까지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홍진영, 2017).

2. 성범죄사건의 판사와 배심원의 차별판단

박광배 등(2005)은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모의 형사 배심재판 연구에서 평의 초기에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해 소수의견을 가졌던 배심원들이 최종평결에서는 다수의견에 따라 만장일치를 이루게 되는 것이 소수파 배심원들이 다수파 배심원의 의견에 동조하기 때문인지(사회적 동조), 평의 과정에 의해 개인적 판단에 내용적 변화가 생겨 다수의견으로 전향하였기 때문인지(인지적 전향)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던 초기 다수파 배심원들이 자신들과 다른 견해를 진지하게 고려하였고, 초기 소수파 배심원들이 사회적 동조가 아닌 인지적 전향에 따라 만장일치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들어 2021년 8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의안 번호: 12066), 배심원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문성이나 배경지식이 부족하여 배심원 개인의 편견, 배경에 따라 의사결정이 일정 부분 좌우될 수 있으므로 재판 전 배심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양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 수정한 독특한 제도로서 법관은 배심원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다만,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과 판결 일치 여부를 살펴보면 판결 선고된 총 1,398건의 사건 중 1,274건(93%)에서 배심원 평결과 판결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고, 배심원 평결과 판결이 불일치한 94(7%)건 중 일부는 배심원이 무죄 평결하고 재판부가 유죄 판결한 사례였는데(YTN, 2018) 이는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성범죄 양형기준

우리나라는 각 법원 사이에 존재하는 양형 편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양형 기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구체적으로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고되는 기준을 말하는데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2007년 1월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81조의 6에 의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9년 7월 1일 시행되어 현재까지 운용 중에 있다(대법원 양형위원회).

현재 시행 중인 우리의 양형기준은 범죄유형별로 가중 또는 감경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양형구간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고형의 범위를 재판부에 권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여인권·이경렬, 2014). 성범죄의 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데,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논의하면서 양형 사유 중 ‘진지한 반성’에 대해 논의하였다(대법원 양형위원회 회의자료, 2022). 진지한 반성은 성범죄 뿐 아니라 기타 범죄의 처벌에서도 참작 요소로 고려되어왔지만, 내면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양형 판단시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진지한 반성이 양형 감경 인자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반성문을 대필하는 업체도 생겨났고 국회에서는 ‘반성문 감형 꼼수 근절법’도 발의되었다. 이에 진지한 반성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아닌 피해자를 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성폭력상담소, 2020).

성폭력상담소가 2019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선고된 총 137개의 성범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48건의 판결들에서 ‘반성 및 뉘우침’을 양형의 요소로 삼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또한 ‘선처용 탄원서’가 제출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고 개선의 정이 있다’고 보아 이를 양형에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을 어떤 근거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이에 따라 당면한 형벌을 감형받기 위해 반성문 대필, 장기 기증, 가해자 가족을 동원한 호소 등 수단과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범죄 가해자 전용 커뮤니티에서는 가해자의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식을 축적하고 수사 재판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판매하는 실정이다(김보화, 2020).

4.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외적 요인

법적 판단에 있어서 법률 외적요소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 성범죄사건의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 외적 요소로는 대표적으로 피고인의 평판, 피고인의 성격증거, 감정호소,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배심원의 성폭력에 대한 통념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도 가장 영향이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피의자들이 재판 전략으로 많이 활용하는 요소인 감정호소, 반성문 및 탄원서를 주요 변수로 고려하였다. 변수의 간명화를 위하여 피고인의 평판이나 성격증거는 제3자의 탄원서에 어느 정도 반영하여 함께 살펴볼 것이다. 또한, 양형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심원의 개인 특성 중에서도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1) 재판정에서의 감정호소

미투(Me Too) 운동을 계기로 성범죄 관련 고소가 증가하면서 성범죄 혐의 가해자들을 대상 맞춤 감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로펌들이 증가하고 있다. 배심원의 감성을 자극하여 무죄 선고를 견인하겠다고 광고하는 한편 배심원의 감정을 자극하고 동정심을 유도하기 위한 시각적인 자료 등을 제공하여 승소율을 높이겠다는 구체적인 컨설팅도 성행하고 있다(한겨레, 2021). 구체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거나 궁핍한 처지, 부양가족이 있음을 강조하는 등 배심원의 감정에 호소하는 대응 전략을 세워주기도 하는데(김보화, 2020), 이러한 성범죄 전문 로펌들의 가해자 중심의 광고내용, 변호 과정, 재판 전략들이 2차 가해를 양상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 운용과 관련된 김광준 외(2008)의 연구에서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에 대한 검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40명의 검사 중 22명이 불만족을 표시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 40%가 '배심원이 객관적 증거보다는 감성에 의지해 평결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변호인측이 피고인의 여동생을 증인으로 신청, 피고인의 강도상해 범행 무렵 피고인 및 증인이 처한 극도로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진술하였는데, 당시 사채업자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협박이 계속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젓먹이 아기를 안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울며 선처를 호소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08고합7 판결). 변호인 또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채업자의 협박에 의한 범죄이고, 어린 조카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사회복귀가 필요하다는 등 배심원의 감정에 호소하는 변론 전략을 내세웠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로서, 피고인의 법적 판단 결정시 고려되지 않아야 할 동정심과 같은 법률 외적 요인이 유무죄 및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재판 과정 중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동정심을 느꼈으나, 동정심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배심원 연구도 있는 등(김광준 외, 2008)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이 배심원의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가 혼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2)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2019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인 소위 ‘n번방’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자 n번방 회원들은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부금 후원, 반성문 작성 등과 같은 감형 전략을 재빠르게 공유하였다. 이렇듯 성범죄 가해자 전용 커뮤니티에서는 감형을 받는데 필요한 일종의 팁을 공유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지한 반성’은 감경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를 측정할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감경을 받기 위해 반성을 표현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인 반성인지, 감형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지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김보화, 2020).

2018년 미성년자 자녀의 친구를 유인, 추행,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그는 원심에서 16회, 2심 선고를 앞두고 26회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도 3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총 40여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였다. 실제 원심 판결문에는 ‘반성문의 전체적인 문맥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이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경한 별을 받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2심 판결문에서는 ‘반성문들의 전체적인 문맥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태도만으로 그 반성문들과 법정 진술들이 반성이나 참회 없는 위선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교화 가능성을 부정해 사형에 처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감형 이유를 밝히고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457, 2018고합2, 16, 17, 19 각 병합판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피고인의 재판부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감형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감형기준 중 진지한 반성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전면 삭제하자는 주장이 있다(대법원 양형위원회 연간보고서, 2021).

2020년, 입양한 여자아이를 장기간 심하게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소위 ‘정인이 사건’의 양모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12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양모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며 판결문에서 감형 사유를 밝혔다. 당시 양모는 총 32회 반성문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피해자가 아닌 법관에게 이루어진다는 점에도 문제가 있다.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은 총 100여 차례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나 재판이 끝나자 아버지가 운영하는 자신의 블로그에 판결에 대한 불만과 피해자 증언에 대한 비난 글을 올려 공분을 샀다. 이렇듯 성범죄 피고인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후 교도소 안에서 “출소하면 피해자에게 복수하겠다”고 공공연히 2차 가해를 발설하거나 재판 종료 후 즉시 후원을 철회하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반성문 대필 사이트에서 보내 준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친족 성범죄의 경우 친아버지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게 된 상황에서 가해자인 아버지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의 모는 피해자에게 선처 탄원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탄원서를 제출하여 감형받는 사례가 존재한다. 탄원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평판이나 성격에 대한 진술이 담길 수 있다. 명시적인 감경 사유는 아니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감경 사유에 준하여 활용된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예로 목사가 자신의 조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조카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25년간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해온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다(서울고등법원 2018노2333 판결). 또한, 미투(Me too)의 촉발로 인해 한국 사회에 드러나게 된 연극계 성추행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극계에 종사하면서 우리나라의 연극 발전에 이바지하였던 점’을 감경 사유로 삼았다(2018노2658, 2019노531(병합), 2018보노(병합)). 이와 같은 경우는 피해자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부분이다.

반대로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평판들이 무차별적으로 제출되게 되면 피고인에 대하여 문제가 된 혐의사실과 평판에 대한 부담까지 지게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강우예, 2022). 피고인의 성격증거에 대해서도 고민조·박주용(2020)은 재판에서 부정적 성격증거가 제시되는 경우 긍정적 성격증거가 제시되는 경우보다 유죄 판단의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형성된 판단은 이후 변호인과 검사의 변론을 판단하는데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바 있어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피고인의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는 방법을 사용, 재판부가 피

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여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로 공소사실과 무관한 허위서를 의견서에 기재할 소지도 다분하므로 피고인의 평판을 감형 사유로 인정함에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3) 배심원의 성폭력에 대한 통념

통념이란 사상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일반적인 신념으로, 복잡한 정보들을 단순화시키고 조직화함으로써 그러한 정보를 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성범죄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이고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판단자의 편견, 선입견에 따라 사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는데 판단자의 성범죄와 관련된 통념이 성범죄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국내외 다수 존재한다(이예림·박지선, 2021; 김보경·김범준·최종안, 2020; Grubb & Turner, 2012; Klement, Sagarin, & Skowronski, 2019; Süssenbach, Eyssel, Rees, & Bohner, 2017). 일례로 성폭력 통념을 높게 수용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가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에는 심각성을 축소하고 가해자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고, 가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에 대해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폭력 통념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김현승·박지선, 2021).

성폭력범죄가 허위 신고 또는 잘못 분류되는 원인 중의 하나는 판단자의 성범죄에 대한 편견으로, 피해자의 성범죄 신고가 허위 신고가 아닌 진짜 신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피해가 진짜 성폭력 즉 ‘피해자다움’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김보화, 2020). ‘피해자다움’은 피해자는 가해자와 일전의 일면식도 없는 사람일 것, 그로 인해 가해자와 성접촉이 없었을 것, 피해자는 주취 상태가 아니었을 것, 피해 직후 신고하였을 것, 수사, 재판 기간 중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며 깊은 자괴감에 빠져있을 것, 진술에 일관성이 있을 것 등을 요구한다. 만약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이 결여된 모습, 즉 통념에 입각한 전형적인 피해자상에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판단자는 사건의 본질을 직시하기보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가해자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릴 여지가 존재한다(허민숙, 2018). 이와 같이 피해자다움에 영향을 과도하게 받는다면 사건 자체보다 피해자에 대한 외적 정보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다움은 곧 성과 관련된 인식과 연관되는 것으로, 배심원의 성과 관련된 인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태도가 피해자다움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사건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 통념 수용도,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 척도를 사용하였다.

5.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의 특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 통념 수용도,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고, 이러한 특성들의 영향을 피고인 요인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배심원에 대한 감정호소 및 제3자의 선처 탄원서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고자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법률 외적 요인이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사건 판단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요인으로 감정호소와 탄원서를 조절변수로 삼았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고인의 배심원에 대한 감정호소, 피고인 가족 및 직장 동료의 탄원서는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배심원의 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 통념 수용도,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과 같은 심리적 특성은 유무죄 및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셋째, 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통념 수용도,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배심원에 대한 감정호소, 탄원서가 조절할 것인가?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및 절차

1)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가능성이 있는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의 성인 남녀 총 351명(여성 173명, 남성 178명)이다. G-power 분석 결과 본 연구 설계에 따른 필요한 표본 수는 269명으로 그 이상의 표본을 모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전문 사회 조사 기관인 마크로 밀 엠브레인(<https://embrain.com>)에 의뢰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실제 배심원 선정 가능성이 있는 일반 시민들의 법적 판단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참여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의 경우 남성이 178명으로 전체의 50.7%, 여성은 173명으로 전체의 49.3%로 유사하게 표집되었다. 연령의 경우 만 20세부터 69세까지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응답자 351명 중 60대가 전체의 2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와 40대의 경우 20.2%, 50대가 19.9%, 30대가 19.1% 순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246명으로 70.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72명 20.5%, 대학원 이상이 33명 9.4% 순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의 경우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78명 2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76명 21.7%,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 54명 15.4%,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48명 13.7%, 100만원 미만이 46명 13.1%, 1000만원 이상이 10명 2.8%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의 경우 기혼이 202명 57.5%으로 높게 나타났고 미혼 및 기타가 149명 42.5%로 나타났다.

2) 절차

본 연구는 2(감정호소: 있음 vs. 없음) × 3(탄원서 제출: 유 vs. 무 vs. 통제 조건) 피험자간 요인설계(between-subject factorial design)로 설계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총 여섯 가지(2 × 3)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무선 배정되었으며, 각 조건은 60명 내외의 연구 참여자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이 본 연구의 목적을 인지할 경우, 연구자의 의도에 맞추어 응답하는 등 편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 '성인 남녀의 성 인식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안내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성범죄(준강간)에 대한 시나리오를 읽고 이후 제시된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 및 양형 판단 관련 문항들에 응답하였다. 양형 판단의 응답은 개월 단위로 코딩하였다. 최종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 문항을 기입한 후 설문이 종료되었다.

모든 시나리오에는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혐의가 기술되어 있고 실제 준강간 판결문을 기반으로 연구 목적에 맞게 재구성되었다. 시나리오로 본 설문을 진행하기 전, 안면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심리학 교수 1명, 사회과학 박사과정 1명, 변호사 1명 총 3명이 각 시나리오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피고인의 전과는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향을 형성하여 판단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Greene & Dodge, 1995) 해당 시나리오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자로 제시, 전과 사실을 통제하였다.

2. 측정도구

1) 양가적 성차별 의식

양가적 성차별 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K-MSI: 안상수 등, 2007)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절반인 12개 문항은 적대적 성차별의식을, 나머지 12개 문항은 온정적 성차별의식을 측정한다.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온정적 성차별 의식에 대한 응답은 1)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7) 매우 그렇다의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각 하위척도의 점수는 해당 척도를 구성하는 12개의 문항의 점수를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차별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50로 나타났다.

2) 강간 통념 수용도

본 연구에서는 McMahon과 Farmer(2011)의 SRMA(Subtle Rape Myth Acceptance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부터 5) 전적으로 동의한다 까지의 5점 리커트(Likert) 척도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강간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이석재, 1999; Burt, 1980).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41로 나타났다.

3)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

본 연구에서 배심원의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Belief In a Just World Scale)을 측정하기 위해 Lipkus, Dalbert와 Siegler(1996)의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 척도를 바탕으로 손정아(2015)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 척도는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인적 공정 세상 신념(예 : 나는 이 세상이 나를 공정하게 대한다고 생각한다) 8문항 척도와 일반적 공정 세상 신념(예 : 나는 사람들이 서로를 공정하게 대한다고 생각한다)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6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1 : 강하게 반대한다, 6 : “강하게 동의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27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8.0과 Process Macro 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검증으로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대상자들의 성별에 따른 유죄와 무죄를 판정하는 경향성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과 유무죄에 대한 교차분석(cross tabulation)을 실시하였다.

둘째, 감정호소 및 탄원서 유무에 따른 양형 판단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 간의 관계와 다중공선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배심원의 심리특성(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 통념 수용도,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배심원의 심리특성(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 통념 수용도,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이 양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감정호소 및 탄원서 유무가 조절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형판단의 차이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탐색하고자 하는 것은 배심원에 대한 감정호소와 탄원서 제출 및 배심원의 신념에 따른 양형 판단 차이이다. 따라서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인구학적 변인인 성별, 연령, 학력, 월 소득수준, 결혼상태에 따른 양형 판단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결혼상태는 비혼과 기타의 빈도가 낮아 기혼과 미혼으로만 구분하였고, 학력은 초등학교, 중학교의 빈도가 낮아 고등학교 이하만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이분형 변수인 성별, 결혼상태는 독립표본 t 검정을, 나머지 변인들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모든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p < .05$). 즉 인구학적 특성과 양형 판단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후 나타나는 양형 판단의 차이는 조작에 따른 차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라 유죄를 판단한 빈도에 분포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chi^2=13.656$, $df=1$, $p < .001$). 분포를 살펴보면 여자가 유죄판정을 한 경우가 88명으로 전체 유죄판정의 61.1%를 차지하였다. 반면 남자는 56명(38.9%)이 유죄판정을 내렸다. 또한, 전체 무죄판정 중 122명(58.9%)이 남자로 여자 85명(41.1%)보다 높은 빈도를 보였다. 즉, 본 연구에 제시된 시나리오와 같은 준강간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있어 남자에 비해 여자가 피고인에게 유죄판정을 내리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성별에 따른 유무죄 판단의 교차분석 결과

구분	빈도(%)		전체	χ^2
	남자(N=178)	여자(N=173)		
유죄	56(38.9)	88(61.1)	144(41)	13.656***
무죄	122(58.9)	85(41.1)	207(59)	

주 : *** $p < .001$

2. 피고인 요인에 따른 양형 판단의 차이

배심원에 대한 감정호소와 탄원서 제출여부에 따른 양형 판단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감정호소와 탄원서 제출여부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2, 143)=.128$, $p=.880$). 감정호소 유무에 따른 양형 판단의 주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으나($F(1, 144)=3.782$, $p=.054$), 탄원서 제출여부에 따른 양형판단의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F(1, 144)=4.945$, $p < .01$, $\eta^2=.066$). 피고인측 탄원서가 제출된 조건이 제출되지 않은 조건과 통제조건보다 양형 판단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쳤다. 탄원서 유무에 따른 양형 판단에 대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탄원서 유무에 따른 양형 판단의 일원분산분석 결과

		양 형				
		N	M(SD)	F	p	Tukey
탄원서	긍정적 내용 탄원서 유a	43	11.51(10.84)	5.652	.004	a<b=c
	긍정적 내용 탄원서 무b	58	22.41(22.83)			
	무정보c (통제조건)	44	25.50(24.21)			

3. 배심원의 심리특성에 따른 유무죄 판단

배심원의 심리특성에 대하여 분석하기에 앞서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분형 변수인 감정호소와 탄원서 유무의 경우 조절변인으로 가정되므로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상관분석시 함께 투입하였다. 결과는 〈표 3〉와 같다.

상관분석 결과, 양형은 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 통념 수용도, 탄원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양형 판단과 가장 상관이 높은 변인은 양가적 성차별 의식($r=-.372, p<.01$)이며, 강간통념($r=-.371, p<.01$) 탄원서($r=-.265, p<.01$) 순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변수는 없었으므로 변수들간 다중공선성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변수간 상관분석 결과

	1	2	3	4	5	6
1. 양형판단	-					
2. 양가적 성차별	-.372**	-				
3. 강간통념	-.371**	.735**	-			
4. 공정세상	.091	.065	.056	-		
5. 감정호소	-.175	-.030	-.009	-.051	-	
6. 탄원서	-.265**	-.089	-.079	-.012	.006	-

주 : * $p<.05$, ** $p<.01$

다음으로 배심원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배심원의 심리특성 중 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통념 수용도와 유무죄 판단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으며($\chi^2=70.231, p<.001, -2LL=404.989$),

설명력은 24.4%로 나타났다. 양가적 성차별 의식이 1만큼 커질수록 배심원이 무죄 판단을 할 가능성이 1.02배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간 통념 수용도가 1만큼 커질수록 배심원이 무죄 판단을 할 가능성이 1.04배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 통념 수용도 수준이 높을수록 배심원이 무죄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시사한다.

〈표 4〉 배심원의 심리특성과 유무죄 판단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인	B	S.E	Wald	p	EXP(B)
양가적 성차별	-.020	.007	8.969	.003	1.021
강간 통념 수용도	-.035	.011	9.984	.002	1.036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	-.063	.011	.065	.799	1.003

4. 배심원 심리특성에 따른 양형 판단에 대한 피고인 요인의 조절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의 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 통념 수용도,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과 피고인 양형의 관계에서 감정호소 및 탄원서 제출 여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8.0과 Process Macro 4.0(Model 1)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에는 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 통념 수용도,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이, 조절변인에는 이분형 변인인 감정호소, 탄원서 제출여부가 0, 1의 더미변인으로 재코딩되었고, 종속변수에는 양형 판단이 투입된 분석이 이루어졌다. 다중공선성을 해결하기 위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유의성 검증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95% 신뢰구간에서 부트스트래핑 표본수는 Hayes(2017)의 제안에 따라 10,000개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를 〈표 5〉와 〈표 6〉에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조절효과에 대한 그래프를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5〉에 제시되었듯이, 배심원의 양가적 성차별 의식과 탄원서 유무의 상호작용항이 양형 판단을 유의하게 설명하였고($B=.363, p<.05$) 설명력은 26.5%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설명력의 증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Delta R^2=.033, p<.05$). 이는 양가적 성차별 의식과 양형 판단의 관계에서 탄원서 유무 조절효과가 유의미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또한, 강간 통념 수용도와 탄원서 유무의 상호작용항이 양형 판단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B=.683,$

$p < .01$), 설명력은 28.6%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의 증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Delta R^2 = .048$, $p < .01$). 이는 강간 통념 수용도와 양형 판단의 관계에서 탄원서 유무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배심원의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과 양형 판단의 관계에서 탄원서 유무의 조절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5〉 양가적 성차별, 강간 통념,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과 양형의 관계에서 탄원서의 조절효과

변인	B	S.E	t	95% CI	
				LL	UL
양가적 성차별	-.411	.067	-6.107***	-.544	-.278
탄원서	-38.858	10.395	-3.738***	-.59.409	-18.308
양가적 × 탄원서	.363	.145	2.499*	0.758	.649
강간통념 수용도	-.709	.109	-6.532***	-.923	-.494
탄원서	-47.108	11.028	-4.272***	-68.911	-25.306
강간통념 × 탄원서	.683	.223	3.069**	.243	1.123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	-.390	.560	-.695	-1.497	.718
탄원서	-6.885	18.801	-.366	-44.054	30.284
공정세상 × 탄원서	.334	.322	1.037	-.301	.971

주1 : * $p < .05$, ** $p < .01$, *** $p < .001$

주2 : 탄원서 유무 : 유 = 1, 무 = 0

또한, 배심원의 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 통념 수용도,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과 양형의 관계에서 감정호소의 조절효과는 〈표 6〉과 같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6〉 양가적 성차별, 강간 통념,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과 양형의 관계에서 감정호소의 조절효과

변인	B	S.E	t	95% CI	
				LL	UL
양가적 성차별	-.331	.090	-3.670***	-.509	-.153
감정호소	-10.931	9.501	-1.151	-29.714	7.852
양가적 × 감정호소	.051	.126	.403	-.199	.300
강간통념 수용도	-.666	.161	-4.125***	-.985	-.347
감정호소	-21.823	10.717	-2.036*	-43.010	-.635
강간통념 × 감정호소	.306	.207	.142	-.103	.715

변인	B	S.E	t	95% CI	
				LL	UL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	.319	.221	1.448	-.117	.755
감정호소	8.278	17.988	.460	-27.283	43.840
공정세상 × 감정호소	-.276	.308	-.894	-.885	.334

주1 : * $p < .05$, ** $p < .01$, *** $p < .001$
 주2 : 감정호소 유무 : 유 = 1, 무 = 0

조절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 기울기의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조절효과 내용을 <표 7>과 <표 8>에 제시하였고 [그림 1]에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두 직선의 기울기는 상호작용의 공식적인 탐색을 통하여 수량화되었는데, 조절변인이 이분형 변인인 경우에는 한 가지의 선택밖에 없다. 즉, 조절변인인 탄원서 제출여부에 대하여 초점예측변수인 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통념 수용도,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부효과를 추정한다(Hayes, 2015).

양가적 성차별 의식 총점이 높을수록 통념 수준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가적 성차별 의식 양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탄원서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증한 결과 탄원서의 부적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탄원서가 없는 조건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탄원서가 있는 조건에서($B = -.411$, $t = -6.107$, $p < .001$) 단순기울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7> 양가적 성차별 의식과 양형의 관계에서 탄원서 유무에 따른 단순 기울기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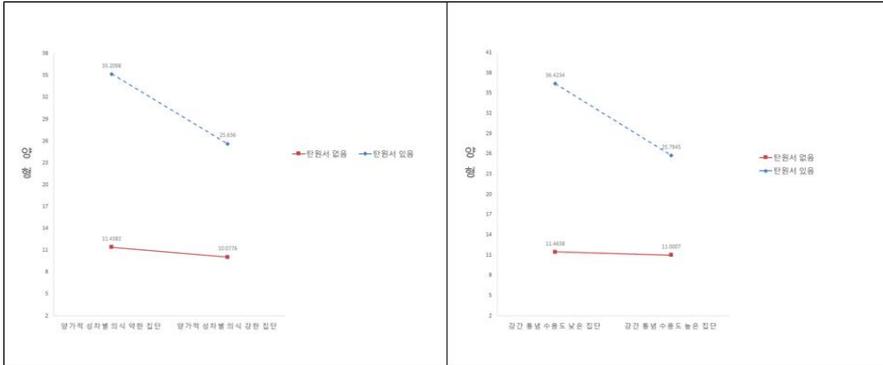
변인	Effect	S.E	t	95% CI	
				LL	UL
탄원서 유	-.411	.067	-6.107***	-.544	-.278
탄원서 무	-.049	.129	-.378	-.303	.206

주 : * $p < .05$, ** $p < .01$, *** $p < .001$

<표 8> 강간 통념 수용도 수준과 양형의 관계에서 탄원서 유무에 따른 단순 기울기 검증

변인	Effect	S.E	t	95% CI	
				LL	UL
탄원서 유	-.709	.109	-6.532***	-.923	-.494
탄원서 무	-.028	.194	-.132	-.410	.358

주 :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 통념 수용도 수준과 양형의 관계에서 탄원서 유무의 조절효과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성범죄사건에서 배심원의 심리특성과 피고인 요인이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의 심리특성과 피고인 요인에 따라 성범죄사건의 법적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 가정하고 특히 피고인의 배심원에 대한 감정호소, 탄원서 유무, 배심원의 심리특성에 따라 양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통계적으로 살펴보았다. 실질적 재판에서 양형 인자 등 변수들을 조작하는 것에 어려움이 존재하기에 시나리오를 사용한 모의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 피고인 처벌판단에는 법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요인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배경 특성, 판단자의 태도 등 법 외적 요인들 역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홍세은·이현정·허태균, 2018; Devine & Caughlin).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법 외적 요인 중 성범죄 피해자의 상황과 처벌 의사의 고려 없이 양형 감경요소로 작용하는 성범죄 가해자의 반성문, 선처 탄원서와 같은 양형 인자가 일반인들의 양형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이다. 범죄자의 성별, 연령, 인종 및 교육, 직업,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 등 법률 외적 요인들이 양형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들 (Steffensmeier 외, 1995; Freeman, 2006; Devine & Caughlin, 2014; D'Alessio & Stolzenberg, 1993, 김범준, 2007)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법률 외적 요인들이 피고인의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고인 측이 긍정적인 내용의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경우 피고인을 좀 더 관대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였다. 분석 결과, 선처 탄원서가 있는 조건에서 형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피고인의 배심원에 대한 감정호소는 양형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 측 선처 탄원서가 피고인의 양형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이 평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미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기존의 연구(김광준 외, 2008)와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사건의 양형을 결정하는 준거로서 피고인 자신이 변론하는 것 보다 제3자의 탄원이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이 시사되었다. 본 연구에 제시된 피고인 가족이나 지인 등의 탄원서는 성범죄사건과 관계가 없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양형 판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성범죄사건과 무관한 피고인 측의 탄원서가 제출되어 배심원의 양형 판단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실제적 진실발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둘째, 본 준강간 시나리오와 같은 성범죄사건에서 여성보다는 남성 배심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강간 사건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강간 통념 수용도가 낮은 판단자일수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더 높게 한다는 선행 연구(조은경·박지선, 202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셋째, 배심원의 심리특성에 해당하는 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 통념 수용도,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과 유무죄 판단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양가적 성차별 의식과 강간 통념 수용도가 양형 판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가해자를 더 가볍게 처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강간 통념을 많이 수용할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피고인을 더 관대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기존의 연구(이석재, 1999; 김보경·김범준·최종안, 202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배심원의 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 통념 수용도가 성범죄 사건의 양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조절효과 검증은 실시하여 이들 신념과 양형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탄원서 유무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강간 통념 수용도가 상승할수록 양형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탄원서가 제출된 조건에서는 유의미하게 큰 폭으로 낮은 형량을 부과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피해자 비난을 더 강하

게 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실증적 연구들과 이어지는 결과이다(이예림·박지선, 2021).

본 연구는 배심원의 심리특성과 피고인 요인에 따른 피고인 처벌판단에 있어 실제 배심원 선정 가능성이 있는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기존의 성범죄사건에 대한 처벌판단을 확인하는 국내 연구들은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김성현 외, 2018)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층, 직업군 등을 고려한 폭넓고 다양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결과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그간의 연구에서는 배심원의 법적 판단에 미치는 요인들 중 피해자 요인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피고인 요인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언론들은 과학적, 실증적 근거 없이 “성범죄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배심원에게 동정심을 호소하면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피고인의 감정호소는 피고인의 양형 판단과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심원 자격을 가진 국민들이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양형을 판단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과거 배심원의 심리특성이 양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감정호소나 탄원서와 같은 성범죄 양형 인자가 이를 조절할 수 있는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 심리학적 과정을 설명하는 실증적 연구가 부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감정호소와 탄원서라는 법률 외적 요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양형인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하였다. 최근 재판부에 제출되는 반성문, 선처 탄원서 등이 감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성범죄 반성문, 탄원서 대필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반성이 피해자가 아닌 재판부를 향한다는 점, 양형 판단시 피해자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만으로 판결을 내린다는 점, 진지한 반성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반성문 및 선처 탄원서는 법적 판단의 직접적인 증거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선처 탄원서가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탄원서가 제출된 조건에서 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은 배심원은 유의미하게 큰 폭으로 낮은 형량을 부과하려는 경향이 나타났음을 고려할 때, 사건을 판단할 때 배제하여야 할 부분 등을 다루는 배심원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정책적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반성문, 탄원서 제출 및 감정호소 등 가해자의 방어권 행사는 당연히 보장

되어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당면한 어려움 등을 반영한 피해 평가 결과도 더욱 심도 있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사건에서 여성보다는 남성 배심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배심원 선정시 남녀의 비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배심원의 심리 특성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배심원의 성향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입증해주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배심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해 피고인의 직업이나 성행과 같은 부분은 사건 판단에 고려 대상에서 배제됨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한계는 다음과 같다. 실제 성범죄 피고인의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배심원의 감정을 자극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시각적인 보조 자료나 영상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설문조사의 특성상 실제 국민참여재판과 같은 생동감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연구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실제 재판 과정과 달리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측정되었다. 이에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라 응답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 성인 남녀의 性 인식에 대한 연구'라는 가장 연구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응답 과정에서 실제보다 더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응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자기 보고식 설문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과 오류가 연구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법률 외적 요인의 재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성범죄사건에서 감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행 양형 인자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룬 준강간 사건 외 다양한 성범죄 양형 인자의 영향력 검증 및 법적 판단의 차이가 이루어지고 연구에서 제시한 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 통념 수용도,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 척도 외 권위주의 척도 등 배심원의 심리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척도들을 활용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우예 (2022). "형사절차에 있어 성격증거의 편향성과 증명력 - 미국 증거법의 논의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제23권 제4호. 107-144.
- 경향신문 (2021.12.2). "성범죄·강력 사건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쏠리는 까닭은... 피해자 권리 실종 우려도".
<http://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2021304001>에서 2022.1.25. 인출.
- 고민조·박주용 (2020). "피고인의 성격증거(Character Evidence)가 사실인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법*. 제10권 제3호. 215-235.
- 김광준·박미숙·이정민·임유석·추형관·황지태 (2008).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II)-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참관 및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총서*. 1-486.
- 김범준 (2007). "강간범죄에 대한 위협도 인식과 가치판단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1권 제3호. 57-73
- 김병수 (2018). "배심원 교육을 통한 공정한 국민참여재판의 실현". *법학연구*. 제59권 제3호. 35-63.
- 김보경·김범준·최종안 (2020). "판단자의 강간통념이 강간사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 - 강간 사건 전 피해자의 일탈행위 여부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법*. 제11권 제3호. 309-327.
- 김보화 (2020). 성폭력 사건 해결의 '법시장화' 비판과 '성폭력 정치'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성현·임광현·성현준·성나경·김성희·김광수·이수정 (2019). "대학생의 성인지각수성이 위력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8권 제4호. 3-36.
- 김청택·최인철 (2010). "법정의사결정에서의 판사들의 인지편향". *서울대학교 법학*. 제51권 제4호. 317-345.
- 김현수 (2009).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증인신문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214-245.
- 김현승·박지선 (2021).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 성폭력 통념과 권위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23-123.
- 대법원 양형위원회 회의자료 (2022). 2022-13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 의견.

- 박광배·김상준·이은로·서혜선 (2005). “형사배심 평의에서의 사회적 동조와 인지적 전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9권 제3호. 1-21.
- 손정아 (2015). 개인의 지각된 취약성과 공정세상신념이 기부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안상수·김혜숙·안미영 (2005).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 (K-ASI)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9권 제2호. 39-66.
- 여인권·이경렬 (2014). “양형인자의 통계적 분석을 통한 양형의 합리성 제고”,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제25권 제3호. 205-230.
- 이석재 (1999).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3권 제2호. 131-148.
- 이예림·박지선 (2021). “권위주의 성격과 강간 통념 수용도에 따른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의 판단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법. 제12권 제1호. 75-97.
- 윤영석 (2021).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 제32권 제1호, 107-136.
- 정종섭 (1996). “배심원 선정절차에 관한 연구”, 건대학술지 4집, 건국대학교 연구, 제25권 제3호, 205-230.
- 조선일보 (2012.11.23). “누나 살해 흉악범, 국민참여재판 신청…동정심 유발, 형량 낮춰.”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18662.html>에서 2022.8.29. 인출.
- 조은경, 박지선. (2020). “강간과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비난의 차이: 양가적 성차별의식과 대인 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34권 제1호, 45-66.
- 한겨레 (2021.11.10). “힘드시죠? 감형 컨설팅 해드릴게요”… 성범죄 가해자 지원 ‘시장’이 섰다”.
<http://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2021304001>에서 2022.1.25 인출.
- 한인섭 (2009). “한국의 배심원재판 -준비과정과 시행원년의 성과를 검토한다-”.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2호. 681-710.
- 한상훈 (2016).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제27권 제2호. 67-83.
- 허민숙 (2018). “너 같은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 한국여성학. 제33권 제3호. 1-31.
- 홍세은·이현정·허태균 (2018). “처벌판단에서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의도

- 불확실성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32권 제3호. 101-118.
- 홍진영 (2017). “국민참여재판에 따른 성폭력범죄 재판 운용의 실무적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법조협회: 법조. 제66권 제5호. 280-340.
- YTN (2018.10.2). “배심원 vs 판사 의견 일치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188&key=201810021536562669>에서 2022.8.29. 인출.
- Hayes, Andrew F. (2015). 매개분석 조절분석 및 조절된 매개분석. (이형권 역). 서울: 신영사(원서출판 2015).
- Burt, M. 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2), 217.
- D'Alessio, S. J., & Stolzenberg, L. (1993).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sentencing of the traditional offender.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1(1), 61-77.
- Devine, D. J., & Caughlin, D. E. (2014). Do they matter? A meta-analytic investigation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guilt judgment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20(2), 109.
- Freeman, N. J. (2006). Socioeconomic status and belief in a just world: Sentencing of criminal defendants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6(10), 2379-2394.
- Greene, E., & Dodge, M. (1995). The influence of prior record evidence on juror decision making. *Law and Human Behavior*, 19(1), 67-78.
- Grubb, A., & Turner, E. (2012). Attribution of blame in rape cases: A review of the impact of rape myth acceptance, gender role conformity and substance use on victim blaming.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7(5), 443-452.
- Klement, K. R., Sagarin, B. J., & Skowronski, J. J. (2019). Accusers lie and other myths: Rape myth acceptance predicts judgments made about accusers and accused perpetrators in a rape case. *Sex Roles*, 81(1), 16-33.
- London, K., & Nunez, N. (2000). The effect of jury deliberations on jurors' propensity to disregard inadmissible evide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5(6), 932-939.

Steffensmeier, D., Kramer, J., & Ulmer, J. (1995). Age differences in sentencing. *Justice Quarterly*, *12*(3), 583-602.

Süssenbach, P., Eyssel, F., Rees, J., & Bohner, G. (2017). Looking for blame: Rape myth acceptance and attention to victim and perpetrator.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2*(15), 2323-2344.

Abstract

Effects of jury characteristic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defendant's factors in the sentencing judgment of sexual crime cases

Kyujin Hwang*·Woohyun Park**·Soojung Lee***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non-legal factors such as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jury and the factors of the defendant on the jury's legal judgmen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defendant's emotional appeal and the petition for leniency of a third party could moderate the association between jury'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sentencing judgment. For this study, data of a total of 351 participants (173 females, 178 males) between the ages of 20 to 69 who are likely to be selected by jury for the Korean jury trial were analyze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jurors with higher ambivalent sexism and rape myths imposed not guilty on the accused. Second, there were possibilities that the third party's petition may have an effect on reducing the defendant's sentence.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sentencing depending on the defendant's emotional appeal to the jury. Third, the petition of a third party ha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uror.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defendant factors of the jury outside the law affect the jury's legal judgmen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the media's public opinion-driven argument that appealing for sympathy in the Korean jury trial is advantageous for sentencing has been empirically verified. Also,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sentence of a sexual crime case, it was suggested that the petition of a third party could be more persuasive than the defendant's own defense. Based on these results, th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Keywords : Sentencing guidelines, Korean jury trial, Emotional appeal, Petitio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jury

*** First Author: Doctoral Student, Kyonggi University

*** Co-Author: Doctoral Student, Kyonggi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Kyonggi University

피해자 의사존중과 강제개입의 논쟁을 통해 살펴본 가정폭력 대응정책의 한계 및 변화의 방향*

신나라**·박언주***

초 록

본 연구는 가정폭력 대응정책이 보다 강력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엄중하게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움직임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피해자 의사존중과 강제개입의 논쟁을 검토하였다.

가정폭력처벌법을 통해 명시되어 있는 피해자 의사존중과 의무체포제·강제기소제를 중심으로 한 강제개입의 논쟁을 통해 가정폭력 대응정책의 실효성과 한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의 맥락과 피해자의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기계적 의사존중은 가정폭력 사건처리를 피해자에게 의존,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또한 경찰의 적극적 개입을 저해하며 오히려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피해자 의사존중은 가정보호사건처리라는 한국적 특수성과 맞물려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를 처벌로부터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동됨을 볼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여성의 권한강화, 경찰의 적극적 대응, 강제개입정책의 도입, 가해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의 이중성 등을 논의하였다. 궁극적으로 적극적인 사법적 개입을 통해 가정폭력은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가정폭력, 피해자의사존중, 강제개입, 의무체포제, 강제기소제,
가정폭력 대응정책

* 본 연구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6076771)

** 제1저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교수(naraeshin@gmail.com)

*** 교신저자: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epark@dau.ac.kr)

I.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문제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 제정되어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법체제 정립이 시작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와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김용화·정준섭, 2020; 정현희, 2019; 허민숙, 2019; 박복순, 2018; 김혜정, 2015; 김은경, 2015; 김은경, 2003).¹⁾ 가정폭력 대응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을 근절·예방하고,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을 돕는 것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보호와 피해자보호라는, 어찌 보면 함께 추구하기 어려운 목표를 동시에 설정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허민숙, 2019; 김은경, 2015). 한국의 특례법상 가정폭력 사건처리는 보호절차와 형사절차로 구분되는데, 김은경(2003)은 이를 ‘피해자 선택모델’과 ‘강제개입모델’ 간의 절충 시도로 설명하였다.

가정폭력 대응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외에서도 의무체포제와 강제기소제, 피해자 의사존중에 관해 정책전문가, 검·경찰, 여성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상반된 정책평가가 제시되고 있다(Ryan et al., 2021; Lippy et al., 2020; Nichols, 2014; UK CRVAW, 2011; Frye, Haviland & Rajah, 2007; Williams, 2005; Han, 2003; Ford, 2003). 또한 국내에서도 한국 현실에서의 경찰대응정책에 대한 거듭된 비판과 논의를 바탕으로 최근 2020년에 가정폭력범죄처벌 개정안이 통과되며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의 현행법 체포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체포의 실효성은 기소단계에서 좌우되는데, 현재 가정폭력은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로 명시되지 않았지만²⁾ 피해자의 의사를 토대로 단순보호사건으로 귀결됨에 따라, 여타 범죄사건에 비해 기소유예율과 불처분율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가정폭력처벌법에는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을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1) 이와 관련된 정책들은 의무·강제체포 및 강제기소, 사건처리절차 및 전담제 도입,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대상범죄의 확대 및 가해자 처벌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처벌법 운용실무 실태조사를 실시한 김은경 외(2014)의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대응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합리적 처리기준이 없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유명무실한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사문화처리되어 효력을 찾기 어려운 감호위탁처분제도, 평균 3.6개월이 걸리는 사건처리기간, 임시조치위반자 등에 대한 낮은 과태료 부과규정 등을 비판하였다.

2)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기소를 중지해야 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등이 이에 속한다.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강제개입이 아닌 피해자 의사존중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우리 사회보다 앞서 강제개입정책과 피해자 의사존중정책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왔다.³⁾ 국내에서도 현재 처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 의사존중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며(김은경, 2003; 허민숙, 2019; 박복순, 2018; 정현희, 2019), 강제개입정책을 통해 보다 엄중한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가정폭력 대응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쟁점들을 분석하고, 한국적 현실을 고려하여 대응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피해자 의사존중과 강제개입을 둘러싼 논쟁

1. 피해자 의사존중의 실효성

가정폭력사건에서의 피해자 의사존중(피해자 선택모델, victim choice model)이란 경찰·검찰의 개입과정에서 가해자 처벌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와 선택을 반영하는 접근을 지칭해 왔다. 기소과정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하된 경우, 혹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했거나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기소는 철회될 수 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특별양형인자로 작용

3)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활동가들은 더욱 강력한 가정폭력예방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1980년대 이전에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를 제한받았으며, 가해자를 범죄자로 취급하기보다 가정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위기개입 기술들을 훈련받았다(Goolkasian, 1986; Mancuso, 1989). 이러한 '손떼기(hands off)정책'은 가정폭력을 범죄가 아닌 사회적영역에서의 해프닝으로 바라보았다(Bourg & Stock, 1994). 1980년대부터 여성주의 활동가들은 가정폭력범이 다른 사회적 폭력범들과 다르게 처벌받으며 더 낮은 형량을 받는 것을 비판하며, 가정폭력을 가족 내 위기가 아닌 사회적 범죄로 다루자고 주장하였다(Ellis, 1987). 이후 미니애폴리스(Minneapolis) 실험연구(Sherman & Berk, 1984)를 통해 체포·구속이 다른방식보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행위를 유의미하게 억제시킨다는 결과가 발표되고, 미국의 가정폭력대응정책은 피해자선택모델에서 체포우선모델로 선회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며 경찰의 전통적·수동적 접근법은 점차 적극적 체포제로 변화하였으며, 가정폭력은 체포를 통해 근절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확산되었다(Bourg & Stock, 1994). 이를 바탕으로 1994년에 미국 연방차원에서 제정된 여성폭력방지법(VAWA: Violence Against Women ACT)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경찰의 재량적 체포가 아닌 의무체포를 명시하였다.

하며 감형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Anderson, 2015; 정현희, 2019).

권한과 역량의 맥락에서 피해자 의사존중을 통해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의사 결정권을 가지며 피해여성은 역량강화(empowerment) 되거나, 반대로 사법 체계에서 피해여성의 목소리와 선택권이 제한되며 역량약화(disempowerment) 되는 것으로 언급되었다(Han, 2003; Anderson, 2015). 피해자에게 가해자 처벌에 대한 중요의사를 질문함으로써 피해자의 목소리가 경청되는 측면이 있으며, 피해자가 기소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통제력과 자신감을 회복하기도 한다(정세종, 2015).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김은경, 2003).

피해자 의사존중은 범죄사건에서 피해자의 목소리와 권한을 강화시키고, 피해자를 가해자 처벌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시키려는 여러 시도들의 결과로 평가되기도 한다. 피해자 의사존중은 가해자의 폭력중단이라는 공권력 개입의 효과를 기대하되 가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없이 혼인관계 유지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피해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러한 피해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이창무, 2004).

하지만 피해자 의사존중은 피해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김은경(2003)은 불기소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피해자가 자신에게 최선인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피해여성이 기소 이후 직면해야 하는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배우자 기소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비난,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및 닥쳐올 변화와 위협을 감당해 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해 기소의견을 철회·포기하는 경우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의 선택권이 가정폭력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작동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기소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보다는 피해자 의사존중을 문제 삼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 가정폭력 사건대응 초기지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신고 후 가해자 처벌이나 상담연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을 지속적인 폭력피해에 노출되며 '주체적으로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운' 존재로 설명하며,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의존하기보다는 위험성을 판단하여 사건처리"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유도하였다(여성가족부, 2018:2). 현재 가정폭력처벌법에서 보장하는 피해자 의사존중과는 모순되는 측면이 발견되는 지점이다.

2. 의무체포제의 실효성

의무체포제(mandatory arrest policy)는 가정폭력을 다루는 핵심정책 중 하나로 폭력 발생 현장에서 가-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분리, 안전의 확보를 위해 가정폭력을 무영장 체포가능범죄로 처리하는 것이다. 법률상 준·현행법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는 가능하지만, 가정폭력 발생 현장에서 의무체포를 통한 강제개입을 원칙으로 하자는 점이 강조되는 것은 이러한 정책이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폭력과 관련한 의무체포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경찰의 개인적 판단 여지를 최소화함으로써 가정사로 인식하여 개입을 꺼려했던 가정폭력 범죄 사건에 대한 경찰의 개입을 촉진하였다. 일례로 1980년대에 가정폭력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의무체포 정책의 목적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개인적 판단의 여지를 최소화시켜 경찰의 응답을 표준화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더욱 강력하게 개입하여 체포의 수를 높이기 위함이었다(Durfee, 2012; Frye, Haviland & Rajah, 2007; Han, 2003; Bourg & Stock, 1994; Sherman & Berk, 1984). 이를 통해 사적인 영역의 일로 인식되었던 가정폭력 사건에 경찰이 개입하기를 꺼려하는 상황들이 예방되는 효과를 보였다.

둘째, 의무체포제에 따라 경찰은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여성이 원치 않더라도 현장에서 즉시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다(Frye, Haviland & Rajah, 2007). 피해여성이 지속적 학대와 통제에 노출되어 가해자 체포에 대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피해여성의 선택을 배제하는 것이다(Han, 2003).

셋째, 의무체포를 통한 강제개입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적 성격뿐만 아니라, 추가적·잠재적 폭력발생에 대한 범행예방 효과가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Frye, Haviland & Rajah, 2007; Bourg & Stock, 1994; Sherman & Berk, 1984). 의무체포라는 사회적 옹호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공적 보호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제공하여 피해여성의 안전확보와 폭력 피해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강제체포제는 미래의 폭력 발생에 하나의 억제(deterrent)로 작용하며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데,⁴⁾ 여기에서 억제는 다른 사

4) 이러한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은 18세기 후반 Bentham과 Beccaria의 논의를 시작으로 가정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사람들이 제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폭력적 행동을 피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체포의 범죄 억제효과를 주장하였다.

람들의 경험을 통한 일반적 억제(*general deterrence*)와 가해자 자신이 경험하는 특수한 억제(*specific deterrence*)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법적제재를 강하게 인식할수록 가정폭력 발생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Williams & Hawkins, 1992). 또한 특수한 억제는 체포 이후의 재범율에 정적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억제가 확실하고 강력할수록 잠재적·실재 가해자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되었다(Williams, 2005).⁵⁾

하지만 의무체포정책에 따른 부작용도 보고되었는데 첫째, 의무체포제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도움요청에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가해자 체포로 상황이 악화되거나 가해자 체포가 두려워 피해여성은 신고 자체를 꺼리기도 하였다(UK CRVAW, 2011).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의 529,829명 인터뷰 자료를 분석한 Dugan(2003)의 연구에서도 의무체포제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고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여성이 도움요청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가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 법적 후속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는 부담감, 피해자가 가해자로 잘못 인식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 가해자를 신고하기 어렵고, 신고에 따라 피해여성 자신 또한 자녀로부터 분리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또한, 의무체포제는 오히려 쌍방체포와 보복체포의 증가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Durfee, 2012; Frye, Haviland & Rajah, 2007; Rajah, Frye & Haviland, 2006). 여성에 의한 가정폭력 발생율이 증가하진 않았지만 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여성피해자의 체포 및 쌍방체포가 증가하였다(Rajah, Frye & Haviland, 2006; Frye, Haviland & Rajah, 2007). 1994년부터 뉴욕시에서 시작된 의무체포제로 183명의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원치 않는, 쌍방의, 보복의, 불체포의 증가’를 보고하였으며, 쌍방체포된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더 심각한 폭력피해를 가지고 있었다(Frye, Haviland & Rajah, 2007). 의무체포는 잠재적 피해여성들의 도움 요청을 방해하였는데(Rajah, Frye & Haviland, 2006), 신고 이후 경찰의 조치에 대한 피해여성의 경험과 인식에 따라 이후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5) 특히 체포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클수록 가해자의 폭력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가해자는 폭력행위에 대한 가족과 친구들의 불승인, 파트너 상실, 직업 상실, 스스로에 대한 불승인 등을 실제 수감시간/법정 비용보다 크게 받아들여기도 하였으며, 체포는 거주지역 퇴거명령이나 경찰의 구두경고보다 6개월 이후에 낮은 재범율을 보였다(Williams & Hawkins, 1992).

둘째, 의무체포제는 체포 과정에서 피해여성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해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훼손하고 여성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Han, 2003). 의무체포제는 피해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역량에 대한 부당한 인식으로 연결되고, 피해자의 의사를 배제한 공간을 경찰의 판단이 자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경찰의 가해자 체포 결정(police officers' arrest decisions)에 관한 규정은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존재하면 법적 체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여전히 경찰의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비판받기도 한다(Bourg & Stock, 1994). 위험성 판단이 경찰의 자의적 판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경찰관과 가정폭력 피해자 간의 비협조적이고 적대적인 관계를 야기할 수 있어 의무체포제만으로는 가정폭력의 감소가 어려울 수 있다(Novisky & Peralta, 2015).

의무체포제에서 피해여성의 의사가 배제되는 것이 갖는 의미와 결과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 피해당사자 욕구에 기반한 정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피해여성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족 구조의 변화를 감안한다면, 강제체포가 가구 내 배우자폭력은 감소시켰으나 연인관계에서의 폭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Dugan, 2003).

게다가 의무체포제의 효과는 가-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균일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쌍방체포와 보복체포는 가해자가 소득수준,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범죄시스템에 대해 해박한 경우에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rye, Haviland & Rajah, 2007). 피해여성이 빈곤할수록 가해남성이 체포될 확률이 낮았으며, 피해자의 젠더와 인종에 따라 도움요청행위가 다르게 나타났다(Lippy et al., 2020; Frye, Haviland & Rajah, 2007). 둘째, 의무체포의 억제효과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성일수록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와 권력손실을 크게 인식하며 자신의 기질을 다스리고, 반면 잃을 게 적은 남성들은 이러한 제재를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Williams, 2005).

3. 강제기소제의 실효성

강제기소제(no-drop prosecution)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의사와 상관없이 체포된 가해자를 기소처리하는 것이다. 강제기소제는 피해자 의사존중에

따른 처벌불원이 증가함에 따라 기소율이 저조하게 되고 가해자 처벌이 유명 무실해지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제도화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미국에 도입되어 주(州)에 따라 차이를 보이다가 1990년대 후반에는 전역에 광범위하게 채택되었다(Han, 2003, DeCarlo, 2016). 한국의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사건의 형사처분과 보호사건처분 여부를 검사가 재량에 따라 판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⁶⁾ 하지만 가정폭력 사건의 형사처분과 보호사건처분에 대해 검사의 재량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추상적이고 상대적이라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승현, 2019).

의무체포제와 강제기소제는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며 강제기소제는 의무체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제화되어야 하는 제도로 인식된다(Han, 2003; Hirshel et al., 1992). 체포 이후 불기소 처분을 받는 비율이 높아지면 가해자는 체포에 대해 둔감해지거나 피해자에게 돌아가 보복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체포되더라도 효과적인 기소와 유죄확증 없이는 의무체포제가 유의미한 폭력범죄 억제효과를 가지기 어렵다(Hirshel et al., 1992). 체포제와 기소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소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존중을 강조함으로써 검사가 기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게 되면 의무체포제를 강화한 의의가 훼손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강제기소 정책을 됴으로써 의무체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지를 표명하였다(허민숙, 2019).

하지만 강제기소 또한 의무체포와 마찬가지로 상황과 제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으로 체포된 가해여성의 수 자체는 적더라도 남성에 비해(26.0%) 체포된 여성(60%)이 더 심각한 형량으로 기소되었다(Frye, Haviland & Rajah, 2007). 젠더뿐만 아니라 인종 또한 기소에 영향을 미치며 체포된 백인 남성 중 19.5%가 기소되는 것에 반해 같은 내용으로 체포된 흑인 여성의 기소율은 84.6%로 나타났다(Bourg & Stock, 1994). 이는 법적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이 여성에게 더욱 제한되었다는 사실로 분석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강제기소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폭력발생 현장에서 가-피해자를 분리시켜 원활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우선체포의 강점은 살리되 보다 강력한 의무체포제와 강제기소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6)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필요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김은경, 2015). 검사선의주의에 따라 기소방향이 결정되는 경우에도 그 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결정에 앞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맥락과 피의자·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검사의 기소방향에 대한 결정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이 제안되고 있다. 또한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조서연, 2019).

Ⅲ. 가정폭력처벌법의 특수성에 근거한 논쟁

1. 기계적 피해자 의사존중에 대한 비판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피해자 의사존중(제9조)’ 규정에 따라 행위자 처벌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역량을 가지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적 처리 및 대응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되기 위해서는 피해여성이 가해자와 폭력상황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가정상황, 가해자-피해자 간의 관계, 가정 회복의 가능성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다(김정혜 외, 2019).

또한 피해여성이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 피해여성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의사결정에 대한 압박을 받거나, 가해자와 주변인의 고소취하 및 합의 강요로 인해 2차 피해를 경험하기도 한다(김정혜 외, 2019). 가해자는 지속적 감시, 신체적 통제, 정서적 강요 등을 통해 피해여성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피해여성은 가해자와 가족공동체로 연결된 가운데 폭력피해에 대해 자책하며 온전히 자유로운 선택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Anderson, 2015).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꺼리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피해여성은 남편이자 자녀의 아버지인 가해자에 대해 처벌의사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 남편의 폭력행위만 중단된다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 처벌을 받은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가해자와 경제적 공동체로서 가구를 구성하고 유지해 온 결과 경제적 분리의 어려움, 자녀에게서 아버지를 분리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가족과 주변의 불기소 압박, 혹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가해자를 스스로 기소하는 것에 대한 자책감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Han, 2003;

Anderson, 2015; 정현희, 2019). 그 중 가해자-피해자의 가구 공동체로서의 경제적 상호의존은 처벌불원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김정혜 외, 2019). 형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부과된 벌금은 경제공동체의 구성원인 피해여성의 몫이 되거나, 가해자의 입건으로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가족의 총수입이 감소하는 문제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반의사불벌’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피해여성에게 대한 폭력을 사소화하고 묵인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형법에서는 단순폭행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상해(폭행치사, 폭행치상)와 특수폭행범죄는 해당하지 않는데 가정폭력 현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상해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 처벌이 결정된다. 즉, 아주 심각한 상해가 아닌 상해와 특수폭행범죄는 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의사불벌죄가 여전히 적용되어 처벌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은 가해자 처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부정적 효과를 갖는다(허민숙, 2019). 기소과정에서 검사의 재량에 따른 보호사건처분시 피해자 의사 존중은 사법체제의 피해자 의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피해자 의사존중이 아닌 책임 떠넘기기는 피해자의 재피해자화를 야기할 수 있다(김은경, 2015). 기소과정에서 형식적 피해자 의사존중과 기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여 체포제를 강화한 의의가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체포제의 실효성을 살림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의사에 따라 가해자 기소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강조하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기보다 가해자 처벌을 피해자에게 책임지우는 행위로 작동하고 있으므로, 가해자 처벌에 대한 국가 공권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또한 가해자 구속, 자녀에게 아버지의 부재, 가족의 경제력 감소 혹은 상실 등을 피해자가 야기했다는 2차피해가 뒤따른다. 김은경(2015)은 이를 피해자 의사존중의 기계적 해석과 적용이라고 비판하고, 특례법에서 피해자 의사존중 규정을 삭제하여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피해자 의사존중을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 및 교화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결정 과정과 그 맥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법체제의 형식적인 피해자 의사존중은 피해자 의존, 피해자에게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며,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피해자의 표면적 의사를 반영한 기계적 판단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조서연, 2019; 김은경, 2015).

2. 기계적 의사존중이 야기한 경찰의 소극적 대응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행위를 제지, 가-피해자를 분리하고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실시,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거나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며, 폭력행위의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제5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경찰은 가정폭력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제7조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지만 가정보호사건은 공소권이 없어도 송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찰의 대응은 현행범 체포를 기피하고 피해자 보호를 부차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서 피해자 의사존중은 다음과 같이 고려되고 있다. 경찰관 21인과의 면접조사내용을 분석한 김정혜 외(2019)의 연구에 따르면, 경찰에게는 가해자 현장 입건이 가능하도록 권한이 부여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피해자 의사(처벌불원)에 따라 의무체포가 적용되지 않았다. 현장 출동 시 폭행의 수위가 높으면 가해자를 입건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건하였다가 오히려 원망을 듣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해가 입증되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으면 개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정혜 외, 2019; 김혁·김학경, 2018). 현행범 체포에 대한 부담으로 대부분 임의동행 형식으로 가해자를 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해자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볼 수 있다(김혁·김학경, 2018). 또한, 현재는 없어졌지만, 조사 시점 직전년도까지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은 경찰서 평가의 감점 사유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가정보호사건 송치여부에 영향을 주었다(김정혜 외, 2019). 경찰의 권한은 강화되었으나 가정보호라는 목적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현실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았으며, 경찰조직 내부의 평가체계에 따라 경찰이 가정폭력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었다. 신체적 폭력의 흔적 및 흉기가 발견된다면 피해자가 불처벌 의사를 보이더라도 일반 범죄처럼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해죄나 특수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의 가정폭력범죄조차 관행상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었다. 이후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의 발

생으로 2018년 경찰 내부의 변화가 진행됨으로써 반의사불벌죄 관련 지침을 변경하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경우에도 재범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가-피해자 분리 수사가 가능하도록 가정폭력 현장처리 지침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⁷⁾

반의사불벌죄는 단순폭행에만 적용되며 상해 및 특수범죄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기소가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출동경찰은 현장에서 폭력피해의 심각성보다 피해여성의 의견에 따라 후속조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여성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기소처리하였다가 나중에 오히려 피해자와 가족으로부터 원망을 들었던 경험들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김정혜 외, 2019). 이러한 경찰의 고충 때문에 심지어 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에 해당하는 가정폭력사건에도 ‘아주 큰’ 피해가 아니라면 통상적인 가족 간 다툼으로 처리하기도 하였다(김정혜 외, 2019). 경찰의 소극적 대응은 가해자가 경찰의 개입에 겁을 먹고 폭력을 중단할 것을 기대했던 일부 피해여성에게 예상치 못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 경찰의 출동과 조사를 공권력의 개입, 사회적 통제로 받아들이고 가해자가 자중할 것을 기대했던 피해자는 경찰의 개입이 구두경고에 그치자 오히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세등등해진 가해자를 대하게 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피해여성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피해여성의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맥락에 대한 고려와 이해는 부족하다. 피해여성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자녀들과의 갈등,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경제적 자립 등의 맥락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피해자 의사존중과 가정보호의 결합

가정폭력처벌법은 제1조의 목적조항을 통해 형사처벌과 더불어 보호처분을 제도화하여⁸⁾ 한국 가정폭력처벌정책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1997년 특례법 제

7) 2018년 12월에 경찰권한 및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 대응모델을 시범운영, 2019년 6월 가정폭력 대응 강화지침을 전국적으로 시행, 이를 바탕으로 2020년 가정폭력특례법의 개정이 이뤄졌다.

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의 목적조항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정 시, 가정보호사건처리는 여성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려는 시대적 배경에서의 결정이었다. 가정폭력이 가정사로 여겨지던 시절에 피해자의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장치라는 시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가정폭력처벌법은 여전히 가정보호사건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는 이 제도가 여전히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고를 독려하는지, 피해여성에게 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⁹⁾

2013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가정폭력은 4대 사회악 범죄 중 하나로 규정되며 가정폭력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정폭력 삼진아웃제’가 실시되었다. 삼진아웃제는 최근 3년 이내 가정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이 세 번째 가정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구속기소하는 제도로, 가정폭력 삼진아웃제 시행을 통해 가정폭력사범의 정식재판 회부비율이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는 가정폭력 사건이 가-피해자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가정폭력 초기에 사회적 개입이 제대로 적용되거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정폭력 엄벌대응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으로 접수된 사건들은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 가정폭력사건이 기소되는 비율 자체가 낮은 상황에서 절반가량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¹⁰⁾ 가정보호사건처분은 피해자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결국 처벌받아야 할 가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로 작동하고 있으므로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정보호사건처리와 피해자의 의사존중의 기조가 합쳐지며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이중장치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 의사존중은 사법체계의 피해자 의존 및 피해자에 대한 책임전가가 되어서는 안되며, 기계적이고 표면적인 피해자 의사존중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과정과 맥락에 대해 인식하고 고려해야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가정보호라는 입법 목적은 가해배우자를 형사고소하거나 이혼을 결정한 피해자에 대한 암묵적 비난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를 의식한 피해자는 자유선택이 어려울 수 있다.

9) 윤정숙 외(2017)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한 현장실무자의 53.7%가 ‘가정폭력사건을 가정보호사건과 형사처분사건으로 나누어 처리하는데 동의한다’고, 25.1%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가정보호사건과 형사사건 이원화시스템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10) 2020년 경찰청의 가정폭력 검거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총 검거건수는 44,459명이며 이 중 가정보호 송치인원은 19,379명(43.59%), 구속인원은 330명(0.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정폭력처벌법 제1조의 목적조항에 대한 개정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적극적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정보호사건 입법목적에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한다는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이승현, 2019). 가정폭력처벌법은 가해자 처벌에 더해 원가정 보호라는 목적까지 명시된 셈인데, 이는 피해자보호를 위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현실적으로 가해자를 처벌로부터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I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국내외의 가정폭력 대응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그 내용을 한계와 변화의 방향에 대한 논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의무체포제와 강제기소제를 포함하는 강제개입정책과 피해자 의사존중정책의 실효성과 적용가능성, 그 밖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나아가 가정폭력처벌법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보호처분의 과정에서 피해자 의사존중에 대해 피해자 의사결정의 과정과 맥락에 대해 고려할 필요성을 함께 논의하였다.

그 결과 피해여성의 자유선택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의사결정 과정과 가정폭력이라는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피해자의 의사를 기계적으로 존중하는 것은 가해자 처벌의 사법적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 의사존중은 가정폭력 현장 출동 및 수사, 기소의견 송치의 과정에서 오히려 경찰이 적극적 개입을 꺼리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에 저해되는 측면이 있다. 더욱이 피해자 의사존중정책이 가정보호사건처리라는 한국적 기소절차와 맞물리며 피해자의 결정을 통해 형사적 처벌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서 가해자에게 2차례의 감형 기회를 주게 된다. 이는 피해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한다기보다 가해자를 처벌로부터 보호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가해자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현실을 반영한 가정폭력 대응정책의 수립을 위해 다음의 내용들을 제안한다. 첫째, 가정폭력 개입정책의 방향은 경찰이 현행법 체포를 기피하고 피해자 보호를 부차화하지 않도록 경찰의 의무체포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의무체포제는 경찰개입단계에서 경찰과 피해자 모두의 개인적 판단이나 의사가 가정폭력범죄 처리과정에 개입할 여지를 최소

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0년에 일부 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피해자 보호 내실화와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해 경찰 출동시 응급조치에서 가·피해자 분리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하여 보다 적극적 개입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더욱 힘을 쓰고, 가정폭력은 사회적 범죄로 무겁게 다뤄진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확산해야 한다.

이러한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경찰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개입이 아니라 엄격하고 명료한 가정폭력사정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강력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의무체포제를 통한 경찰의 권한 강화에서 멈추지 않고, 해외사례들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의무체포제에서도 경찰의 가정폭력범죄 사건에 대한 자의적 판단에 대한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고, 피해여성의 의사가 배제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강력해진 의무체포의 기준에 따라 피해여성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쌍방폭력으로 가해자와 함께 체포되거나 이를 우려하여 경찰에 도움요청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사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강제체포의 가정폭력범죄 억제효과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가해자에게서 주로 나타났고, 피해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열악할수록 강제체포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Rajah et al., 2006; Frye, Haviland & Rajah, 2007). 즉,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의무체포제는 피해여성의 의사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피해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무체포제가 보다 강력한 정책개입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강제기소제와 연동될 필요가 있으므로 예측 가능한 긍·부정적 효과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어야 한다(DeCarlo, 2016; Frye, Haviland & Rajah, 2007; Hirshel et al., 1992).

둘째, 보호처분을 통한 가해자 교정과 가정을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은 피해자 의사존중이라는 정책적 방향성을 만나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감형을 받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다.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범죄도 피해자 의사존중을 근거로 보호처분으로 기소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가해자가 감형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누적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렇다면, 보호처분을 통해서 추가적인 가정폭력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지, 폭력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혼인유지 의사가 있는 피해여성에게 보호처분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경찰신고와 의무체포를 통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차후 폭력 발생의 여지를 차단 시키고자 하는 신고의도를 가진 피해여성에게 보호처분이 추가 폭력을 예방하

는 효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즉,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가-피해자의 경험에 대해 정책 대상자의 목소리를 통해 후속 연구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셋째, 가정폭력처벌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피해여성의 의사가 존중되고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하며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피해자 선택(victim choice)은 피해자 권한강화(victim empowerment)의 방향으로 이해되고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김은경, 2003; Hoyle & Sanders, 2000; Anderson, 2015). 강제개입을 통해 가해자를 보다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려는 정책의 방향성이 피해자 의사존중과 상충되거나 배타적인 개념으로 간주되는 정책프레임 자체가 재고려되어야 한다. 강제개입과 의사존중이 충돌되는 지점이 발생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인권과 의사가 존중되는 맥락 안에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여성의 의사 및 자기결정권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피해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면서 동시에 자녀를 포함한 피해여성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다양한 폭력전략 속에서 생존해 온 피해여성의 선택은 자녀와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는 점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피해자는 가해자와 경제공동체를 구성하고 생활을 유지해 왔고, 자녀와 가해자의 관계를 단절시켰다는 죄책감의 압력을 감당해야 하는 등 피해여성이 온전히 자유로운 선택을 하기 힘들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가정폭력처벌법의 특수성으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정폭력법원 및 가정폭력 전담부서의 도입이 제안되고 있다. 가정폭력법원은 가정폭력에 대한 전문적 훈련을 받은 검사, 판사, 경찰, 보호관찰관 등이 협력하여 가정폭력 사례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제도이다(정세종, 2015). 가정폭력 전담부서의 도입에 대해서는 포틀랜드 가정폭력담당반(Portland DVRU: Domestic Violence Reduction Unit)의 사례가 소개되었는데, 일반경찰이 체포한 경우(67%)보다 가정폭력담당반이 가정폭력 사건에 개입한 경우(54%)가 가정폭력의 재범 가능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Jolin et al., 1998). 가정폭력법원과 가정폭력 전담부서의 구성원은 가정폭력의 특수성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이수하고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의사결정의 과정과 맥락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전문가로 한정된다는 것을 전제할 수 있다면 이들 구성원들이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의사를 대변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은 가정폭력범죄를 처벌함으로써 가해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가정폭력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가정폭력 근절은 형사사법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 여성단체 및 예방교육기관 등이 협력을 통해 다양한 조치들, 효과적인 사회적 대처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법체계 구조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이승현, 2019; 정세종, 2015).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 독일의 ‘폭력보호법’, 일본의 ‘배우자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이 하나로 통합·관리되고 있는데, 한국의 특례법에서는 이원화되어 복잡하다는 비판 때문이다(이승현, 2019; 정세종, 2015).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이원화되지 않고 형사사건으로만 처리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 범죄를 예방하여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질문이 필요하다. 형사사건으로만 처리되고 피해자 의사존중에 따른 피해여성들의 선택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가정폭력 범죄예방 효과는 어떻게 변화할지, 가정보호사건 처리 가능성으로 인해 기소를 취하지 않는 경우는 얼마나 될지, 형사법적 기준의 강제기소는 아직 공적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피해여성들에게는 도움요청의 장벽으로 작용할지를 예측하여 정책의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용화·정준섭(2020). “가정폭력특별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제12권 제1호. 111-145.
- 김은경(2003). *가정폭력범죄 대응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피해자 선택”으로부터 “피해자 권한강화”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_____(2015). “가정폭력처벌특례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KIC Issue Paper*. 제7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김혜정·박소현·유숙영(2014).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운용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정혜·윤덕경·정수연·이인선·이주영(2019).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개선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혁·김학경(2018). “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한 경찰개입의 한계요인과 개선방안”. *경찰학연구*. 제18권 제1호. 9-35.
- 김혜정(2015). “유럽의 가정폭력범죄 대응정책에 관한 검토”. *피해자학연구*. 제23권 제2호. 127-152.
- 박복순(2018). “가정폭력처벌법 시행 20주년의 평가 및 향후 과제”. *여성연구*. 제99권 제4호. 181-218.
- 여성가족부(2018). *경찰-피해자 가정폭력 사건대응 초기지원 가이드라인*.
- 윤정숙·이승현·박미랑·김미숙·김유경·김지민·박미랑(2017). *가정내 폭력범죄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승현(2019). “가정폭력처벌법을 통해 본 입법쟁점과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제11권 제2호. 91-120.
- 이창무(2004).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 시행의 영향 및 효과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16권 제1호. 277-304.
- 정세중(2015).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4권 제2호. 75-103.
- 정현희(2019).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법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젠더법학*. 제10권 제2호. 35-62.
- 조서연(2019).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별 대응의 개선방안”. *NARS 현안분석*. 제84권. 국회입법조사처.
- 허민숙(2019).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 보호 제도의 한계와 과제”. *이슈와 논점*. 제

1546권. 국회입법조사처.

- Anderson, K. L. (2015). Victims' voices and victims' choices in three IPV courts. *Violence Against Women, 21*(1), 105-124
- Bourg, S., & Stock, H. V. (1994). A review of domestic violence arrest statistic in a police department using a pro-arrest policy: Are pro-arrest policies enough?. *Journal of Family Violence, 9*(2), 177-189.
- DeCarlo, A. (2016). No drop prosecution & domestic violence: Screening for cooperation in the city that never speaks. *Journal of Law & Policy, 25*, 357.
- Dugan, L. (2006). Domestic violence legislation: Exploring its impact on the likelihood of domestic violence, police involvement, and arrest. *Criminology & Public Policy, 2*, 283-312.
- Durfee, A. (2012). Situational ambiguity and gendered patterns of arrest for intimate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18*(1), 64-84.
- Ellis, D. (1987). Policing wife-abuse: The contribution made by 'domestic disturbances' to deaths and injuries among police officers. *Journal of Family Violence, 2*(4), 319-333.
- Ford, D. A. (2003). Coercing victim participation in domestic violence prosecution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8*(6), 669-684.
- Frye, V., Haviland, M., & Rajah, V. (2007). Dual arrest and other unintended consequences of mandatory arrest in New York City: A brief report. *Journal of Family Violence, 22*, 397-405.
- Goolkasian, G. A. (1986). *Confronting Domestic Violence: The Role of Criminal Court Judges*. U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Han, E. L. (2003). Mandatory arrest and no-drop policies: Victim empowerment in domestic violence cases. *Boston College Third World Law Journal, 23*(1), 159-191.
- Hirschel, J. D., Hutchison, I. W., Dean, C. W., & Mills, A. M. (1992). Review essay on the law enforcement response to spouse abuse: Past, present, and future. *Justice Quarterly, 9*(2), 247-283.
- Hoyle, C. & Sanders, A. (2000). Police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from victim choice to victim empowerment?. *The British*

- Journal of Criminology*, 40(1), 14-36.
- Jolin, A., Feyerherm, W., Fountain, R., & Friedman, S. (1998). *Beyond arrest: The Portland, Oregon domestic violence experiment, final report* (p. 196).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US Department of Justice.
- Lippy, C., Jumrali, S. N., Nnawulezi, N. A., Williams, E. P., & Burk, C. (2020). The impact of mandatory reporting laws on survivor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Intersectionality, help-seeking and the need for change. *Journal of Family Violence*, 35, 255-267.
- Mancuso, P. J. (1989). Domestic violence and the police: Theory, policy, and practice. In Dickstein, L. J., and Nadelson, C. C. (eds.), *Family Violence: Emerging Issues of a National Crisis*, American Psychiatric Press, Washington, D.C.
- Nichols, A. J. (2014). No-drop prosecution in domestic violence cases: Survivor-defined and social change approaches to victim advocac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9(11), 2114-2142.
- Novisky, M. A., & Peralta, R. L. (2015). When women tell: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the factors related to police notification. *Violence against women*, 21(1), 65-86.
- Rajah, V., Frye, V., & Haviland, M. (2006). "Aren't I a victim?" Notes on identity challenges relating to police action in a mandatory arrest jurisdiction. *Violence Against Women*, 12(10), 897-916.
- Ryan, C., Silvio, D., Borden, T., & Ross, N. M. (2021). A review of pro-arrest, pro-charge, and pro-prosecution policies as a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Social Work*, 0(0), 1-28.
- Sherman, L. & Berk, R. (1984). The specific deterrent effects of arrest for domestic assaul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 261-272.
- UK Center for Research on Violence Against Women (2011). What is the impact of mandatory arrest laws on intimate partner violence victims and offenders?. *Research to Practice Brief*, 1-5.

Williams, K. R. (2005). Arrest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Toward a more complete application of deterrence theory.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0*, 660-679.

Williams, K. R., & Hawkins, R. (1992). Wife assault, costs of arrest, and the deterrence proces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9*(3), 292-310.

Abstract

Limitations and Directions of Change in the Domestic Violence Policy

Narae Shin*·Eonju Park**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debates between mandatory intervention for domestic violence(mandatory arrest and no-drop policies) and a victim-choice policy and tried to suggest future directions for change. Controversy over the forced intervention policy was analyzed focusing on the effectiveness and limitations of the mandatory arrest and prosecution systems. It was also examined whether victims' choices were guaranteed well enough by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The result showed that it could be ended up shifting the responsibility of domestic violence to the victim without understanding the victim's situation and decision-making process. Victim-choice policy in Korean even hindered the police's active intervention and made it difficult to protect victims. Also, when a victim-choice policy was provided with family protection cases, it would work in the direction of protecting the perpetrator from punishment, rather than protecting the victim. It further discussed victimized women's empowerment, the police's active response, the possibility of mandatory intervention, proper punishment for domestic violence, and so on.

Keywords : domestic violence, mandatory arrest policy, no-drop prosecution, victim-choice policy

* First Author: Research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ong-A University

한국과 일본 여성 청년 세대의 젠더 의식과 결혼 이행과의 관계*

이수진**·김주현***

초 록

본연구의 목적은 젠더 의식(결혼 가치관, 모성 이데올로기,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이 여성 청년 세대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 여성 청년들의 젠더 의식과 결혼 이행과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의 특성을 밝혀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 데이터는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1-8차(2007-2020)이다. 일본 데이터는 동경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청년패널조사JLPS-Y, 1-10차(2007-2016) 및 장년패널조사 JLPS-M, 1-10차(2007-2016)이다. 분석 대상자는 18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한정하였으며, 한국은 7,893명, 일본은 3,429명이 선정되었다. 분석방법으로는 결혼 상태 변화를 종속변수로, 젠더 의식을 독립변수로 하는 이산시간 사건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결혼 이행 확률을 높이는 요인은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는 성별 역할 분업 의식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실과 결혼 후의 생활에 대한 이상 사이에서 결혼으로 이행하기 이전에 가치관의 타협을 할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한국은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할수록, 결혼하면 자녀를 빨리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결혼 이행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가치관의 효과와 모성이데올로기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면 한국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생애 과정에서 순차적이고 당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규범이 강하게 남아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주제어 : 젠더 의식, 결혼 이행, 여성 청년, 한국, 일본

* 본 논문은 2021년 여성가족패널 학술심포지움 발표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충남대학교 자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됨.

** 제1저자: 히로사키대학(일본) 교육학부 준교수(leesujin@hirosaki-u.ac.jp)

*** 교신저자: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haha0929@cnu.ac.kr)

I. 서론

청년층의 가족 및 개인 가치관은 자발적인 변화 혹은 사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비자발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가족 형성의 지연과 저출산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인구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여성 청년의 결혼 행동을 살펴보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한 지표이다. 한국의 경우 청년 세대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를 보면 비전통적 결혼관과 비전통적 남성성 의식이 증가하였으며(오영은·추주희, 2020), 20대 미혼 청년들이 전통적인 가치관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연구가 있다(유계숙·정선영, 2018). 한국 청년 세대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단서를 결혼 상대의 조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상림(2019)의 연구에서 20~44세 미혼 남성과 미혼 여성 모두 성격, 건강, 가사·육아에 대한 태도, 일에 대한 이해·협조가 결혼 상대의 조건으로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혼 여성은 경제력, 학력, 직업이 결혼 상대의 조건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응답 비율이 남성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혼 여성의 응답에서 가사·육아에 대한 태도, 일에 대한 이해·협조를 중요한 조건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결혼 상대의 경제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은 점도 결혼관의 변화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청년 세대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가치관은 진보적 가치관과 전통적 가치관이 혼재하는 양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 청년 세대의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남성 청년 세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최근 10여 년 전부터 청년 세대의 특징 중의 하나로 결혼관 및 성별 역할 분업 의식 등이 보수화하고 있다는 논의가 있다(白河, 2014; 山田, 2015; 山田, 2019). 일본 청년 세대의 보수화가 논의된 근거로 성별 역할 분업을 지지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내각부의 '남녀공동참획사회(男女共同参画社会)에 관한 조사'보고서(2012, 2016, 2019)에서 '남성은 바깥에서 일을 하고 여성은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성별 역할 분업에 찬성하는 응답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2년 및 2016년에는 20대와 30대에서 성별 역할 분업에 찬성하는 응답 비율이 40대 및 50대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内閣府, 2012, 2016, 2019). 일본 청년 세대의 보수화 논의는 전업주부가 되기를 희망하는 청년 세대의 존재에 주목하기도 한다. 후생노동성의 보고서(2013)에 따르면, 15~39세의 미혼 여성의 34.2% 즉 미혼 여성 3명 중 1명이 전업주부가 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厚生労働省, 2013). 소니생명의

조사(2019)에 따르면, 직업을 가진 여성 619명을 대상으로 전업주부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직업을 가진 여성의 36.7%가 전업주부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20대에서 53.2%로 나타나, 전체 여성의 응답보다 16.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ソニー生命保険株式会社, 2019). 山田(2015)는 20대 여성 청년들의 성별 분업 의식이 보수화 한 점을 지적하면서 여성들 간의 이분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결혼 후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향하는 그룹과, 바깥에서 일하는 것은 남성에게 맡기고 소소한 개인생활을 즐김과 동시에 가정에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룹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성별 역할 분업을 지지하고, 전업주부를 지향하는 이유는 경제적 불황 등의 경제정세의 영향을 남성보다 여성이 크게 받는다는 해석과 장노동시간 등의 문제로 인해 일과 가사 및 육아의 양립을 실현하는 것보다 성별 분업이 더 현실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존재한다(的場, 2013).

한국과 일본의 청년 세대의 결혼 및 젠더 의식의 변화는 다소 상이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의 청년 세대의 가족 및 젠더 인식은 결혼 이행에 차별적인 영향을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데,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수행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 중 하나로 한일 양국은 공통적으로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결혼을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젠더 의식에 초점을 두고 결혼 이행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결혼 이행의 결정에 대한 다수의 선행 연구(이삼식, 2006; 유홍준·현성민, 2010; 장경섭, 2011; 山田, 2019)에서 청년 세대의 결혼 이행에 경제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청년층의 가족 형성 지연이나 비혼화 현상은 구조적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위험 관리(장경섭, 2011)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포기’로 답론화되기도 한다. 또한, 결혼 후 실제로 예상되는 생활 수준과 결혼 후 기대되는 생활 수준의 격차를 가족 형성 지연이나 비혼화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데, 결혼으로 인해 생활 수준이 낮아지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느냐에 따라서 결혼 행동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山田, 2019).

일본의 경우, 2000년도 이후 여성의 취업률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대, 30대 여성의 취업률도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内閣府, 2021). 경제적 여건의 불안정성이 결혼 이행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선행연구들의 결

과에 비추어 보면, 여성 취업률의 증가는 결혼으로의 이행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비혼화 및 만혼화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경제적 요인 이외의 요인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성 청년 세대의 결혼 및 젠더 의식이 남성과는 다른 양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결혼 이행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진 경제적 요인의 효과를 통제 후, 결혼관 및 성별 역할 분업 의식이 결혼으로 이행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젠더 의식(결혼 가치관, 모성 이데올로기,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이 여성 청년 세대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젠더 의식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결혼 가치관, 모성 이데올로기,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로 젠더 의식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젠더 의식으로 상정하는 범위는 결혼, 출산 및 자녀양육,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에 관한 의식이며, 이러한 의식과 결혼 행동과의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본 연구의 특색 중의 하나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청년 세대의 결혼 행동의 결과가 다소 상이하다는 현재의 논의를 고려하여 여성 청년의 젠더 의식의 실태 및 변화와 결혼 이행과의 관계에 대해서 일본과 비교분석을 하는 것은 한국의 특성을 명확히 밝혀내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II. 선행연구

1. 젠더 의식과 결혼 이행과의 관계

결혼 행동에서 가치관 변화에 주목한 논의들이 있다. 가족이나 결혼, 성역할 태도 등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비혼을 선택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은정, 2018; 변수정, 2018; 이삼식, 2006; 최효미, 2017). 인식 및 개인의 가치관 자체가 변화하여 결혼 및 출산의 행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이삼식, 2006; 이순미, 2016; 진미정·정혜은, 2010)와 개인의 가치관 자체가 변화하여 결혼 및 출산 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여 결과적으로 가치관이 변화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결혼 및 출산의 행위를 기피한다고 보는 견해(호정화, 2014)가 있다.

여성이 가진 결혼 가치관 및 성역할 태도가 결혼 이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이삼식, 2016; 정희경·신형진, 2020; 호정화, 2014; 콜무시, 2019; 藤原, 2016).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결혼 가치관이 전통적일수록 또는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결혼 이행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한국과 일본에서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정희경과 신형진(2020)의 연구, 藤原(2016)의 연구, 콜무시(2019)의 연구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자료와 동일한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이 연구들에서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희경과 신형진(2020)은 혼인 직전의 결혼 가치관이 결혼 이행에 유의미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결혼 이행 여부에 따른 결혼 가치관의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비혼 유지 집단과 초혼 이행 집단의 가치관은 처음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초혼 이행 집단은 혼인 직전의 가치관이 처음보다 전통적으로 변화한 반면, 비혼 유지 집단은 보다 비전통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 가치관이 비전통적일수록 비혼 유지 확률 즉 결혼 이행 확률이 낮음을 밝혀냈다(정희경·신형진, 2020). 정희경과 신형진(2020)의 분석 자료의 특징은 결혼 가치관을 조사자료에 포함된 8개의 문항을 합성하여 분석에 사용하고 있으며, 결혼 가치관은 결혼 이행의 직전년도에 가치관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藤原(2016)는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있는 사람보다 행복하다’에 동의할수록 결혼 이행 확률이 높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동일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또한 ‘자녀가 있으면 부부의 자유로운 생활에 방해가 된다’에 동의할수록 결혼 이행 확률은 낮아진다고 하였는데, 이는 남성에서만 유의한 결과임을 제시하였다(藤原, 2016). 藤原(2016)의 분석 자료의 특징으로는 제1차년도(2007년)에 결혼 상대가 없고 결혼 예정이 없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8년간에 걸친 결혼 타이밍에 제1차년도(2007년)의 결혼, 가족 및 젠더 의식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녀 양육 의식과 결혼 이행과의 관계에 대해서 콜무시(2019)는 ‘엄마가 밖에서 일을 하면 초등학교 입학 전의 자녀는 어려움을 경험한다’에 찬성할수록 남성의 결혼 이행 확률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콜무시(2019)의 연구는 분석 자료로 제1차년도, 제3차년도, 제5차년도, 제7차년도 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성역할 태도와 결혼 이행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성역할 태도를 성별 역할 분업에 관한 의식(이삼식, 2016; 阿部·北村, 1999; 콜무시, 2019; 彭·佐藤佐·武藤, 1999; 藤原, 2016), 자녀 양육에 관한 의식(彭·佐藤佐·武藤,

1999; コルムシ, 2019; 藤原, 2016) 등으로 살펴보고 있다. 한국의 연구를 보면, 이삼식(2016)은 성별 역할 분업에 부정적일수록 결혼 시기가 늦어진다고 하였다. 서구의 연구에서 가정에서의 평등주의적 성역할을 지지하는 것이 결혼 및 양육 진입 시기를 늦추는 것과 연관됨을 확인하였다(Cunningham et al., 2005). 반면, Pessin(2018)의 연구에서는 1968년부터 2012년 사이, 젠더 규범의 변화가 어떻게 여성의 결혼 역동과 연관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젠더 규범과 결혼 이행과의 관계에 여성의 학력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졸 이상의 학력이면서 평등주의적 젠더 규범을 가질 경우 결혼으로의 이행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연구를 보면, 阿部와 北村(1999)의 연구에서는 ‘남편도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에 동의할수록 즉 평등주의적 성역할을 추구할수록 초혼 연령이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彭潤希 등(1999)은 30대 전반의 미혼 여성이 가지고 있는 ‘결혼 후 가사를 본인이 전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자체가 결혼으로 이행하는데 장애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자녀 양육 의식과 결혼 이행과의 관계에 대해서 彭潤希 등(1999)에 따르면 미혼 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위해서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건을 결혼 이행에 있어서 장애 조건으로 꼽고 있었다. 반면, コルムシ(2019)는 ‘남성은 밖에서 수입을 얻는 일을 하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에 동의할수록 남성의 결혼 확률이 높고, ‘엄마가 밖에서 일을 하면 초등학교 입학 전의 자녀는 어려움을 경험한다’에 찬성할수록 남성의 결혼 이행 확률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사회 전체 차원에서 성역할 규범의 변화가 결혼 인식의 변화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결혼 이행에 관한 비교분석을 시도한 연구들도 있다(Bellani, Esping-Andersen and Nedoluzhko., 2017; Esping-Anderson & Billari, 2015; Goldscheide, Bernhardt and Lappegård., 2015; 채민진, 2019). 국가 간 차이, 교육, 출산률 등 여러 변인과 성역할 태도와 결혼 이행 및 인식의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Barber & Axinn, 1998; Kolpashnikova, Zhou, and Kan, 2020)

성별 역할 분업 의식과 결혼 이행과의 관계는 성별로 볼 때, 국가별로 볼 때 일률적인 경향을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성별 역할 분업 의식의 측정 방법과의 관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결혼 의향과 결혼 이행

결혼 의향은 결혼 이행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진미정·정혜은, 2010; コルムシ, 2019; 小林, 2006; 橋本, 2009)이라는 점이 한국과 일본 양국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졌으며, 이런 점에서 결혼 이행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결혼 의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선행 연구들에서는 주로 결혼을 할 것인지의 여부, 즉 결혼에 대한 생각 혹은 의지를 결혼 의향으로 정의하고(김은정, 2018), 젠더 및 성역할 태도가 결혼 의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고하였다(이삼식, 2006; 임훈민·김중백, 2013; 진미정·정혜은, 2010; 채민진, 2019). 즉, 결혼에 대한 의식과 가치관에 관련한 사회 문화적 변인이 결혼 의향에 주요하게 작용한다는 주장들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결혼 의향이 낮으며, '전통적' 성역할 태도에 동의하지 않을수록 결혼 의향이 낮아진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젠더 의식 또한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 특성, 성과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가 결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가족 가치관과 성역할 태도가 결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등에서 양성 평등적 가족 내 성별 분담에 동의도가 높은 경우 결혼 의향이 높았다(김정석, 2006; 최효미, 2017; 中谷, 2018; 橋本, 2009). 또한, 비혼 유지와 혼인 이행에 결혼 가치관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연구(정희경·신형진, 2020), 결혼 가치관 중에서 결혼에 대해 긍정적 주체적 태도를 가진 경우, 전통적 결혼 문화에 대해 수용적인 경우에는 결혼 의향은 있으나 결혼으로 이행이 늦어지는 자발적 결혼 연기 그룹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등이 있다(최효미, 2017; 中谷, 2018).

3. 결혼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인구학적 요인

교육 수준, 고용 지위, 소득 등의 요인이 여성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은 두가지 방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교육 수준, 고용 지원, 소득 등의 자원이 풍부한 여성들이 결혼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오히려 낮다는 연구 결과(김주현·이수진, 2019; 박경숙·김영혜·김현숙, 2005; 유흥준·현성민, 2010; 탁현우, 2020; Espenshade, 1985; Goldscheider & Waite, 1986)가 있고 또 하나는 자원이 풍부한 여성들이 결혼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오지

해, 2020; 何芳, 2018; 福田, 2007)가 있다.

본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통제 변수로 사용된 연령, 학력, 취업여부, 주택 형태와 결혼 이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령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연령이 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여성의 연령이 증가하면 결혼 이행 확률이 낮아진다고 보는 것이다(오지혜, 2020; 阿部·北村, 1999; 小林, 2006; 小林·能智, 2016). 학력이 여성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적 결과가 얻어졌다. 즉, 고학력 여성일수록 결혼 시기가 늦어지거나, 결혼 이행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우해봉, 2009; 유홍준·현성민, 2010; 阿部·北村, 1999; コルムシ, 2019; 加藤, 2004; 津谷, 2009; 酒井·樋口, 2005; 佐々木尚之, 2012; 永瀬, 2002; 水落, 2006; 福田, 2007). 우해봉(2009)은 여성의 경우 고학력 여성들 중 결혼을 하지 않는 비중은 저학력 여성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고, 특히, 1970년 이후 출생한 코호트와 관련된 분석 결과는 고학력 여성들이 생애 동안 결혼을 하지 않고 미혼으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小林(2006)의 연구에서 학력은 여성의 결혼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남성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두 방향의 결과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는 대조를 이룬다. 고학력 남성의 결혼 이행 확률이 높다는 결과(코르무시, 2019)와 고학력 남성의 결혼 이행 확률이 낮다는 결과(加藤, 2004; 佐々木, 2012)가 있다. 취업 및 소득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일관된 결과가 얻어지지 않았다(Burgess, Propper and Aassve., 2003; 何芳, 2018; 三好, 2013; 橋本, 2009; 福田, 2007). 소득의 효과를 보면, 여성의 소득이 많을수록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등 여성의 결혼 이행에는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Burgess, Propper and Aassve., 2003; 三好, 2013)와 여성 본인의 소득이 높으면 결혼 이행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오지혜, 2020)가 공존하다. 수입이 증가할수록 결혼 의욕이 증가하고(永瀬, 2018), ‘결혼하지 않아도 좋다’에 동의할수록 평균 연간 소득이 높다는 결과도 있다(橋本, 2009). 코호트로 구분할 때 젊은 코호트에 속하면서 임금이 높은 여성일수록 결혼 확률이 높음을 밝혀낸 연구도 있다(何芳, 2018; 福田, 2007). 여성의 소득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福田(2007)의 연구에서 여성의 연간 소득이 초혼 이행 확률에 정의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는데, 흥미로운 점은 연간 소득이 410만엔까지는 결혼 이행 확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데 반해서, 그 이상의 연간 소득일 경우에는 결혼 이행 확률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남성의 소득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는 일관성을 보인다.

즉 남성은 소득 분위가 높을 수록 결혼 이행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오지혜, 2020; Burgess, Propper and Aassve, 2003; 三好, 2013). 또한, 본인 소득뿐 만 아니라 세대 소득도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는 연구도 있다(三好, 2013). 주거 형태의 하나로 부모와의 동거가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부모와의 동거는 결혼 이행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何芳, 2018; 佐々木, 2012).

Ⅲ. 분석 자료 및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 데이터는 여성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KLoWF) 1-8차(2007-2020)이다. 여성가족패널은 2007년 1차년도 조사, 2008년 2차년도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3차년도 조사부터 2년 주기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은 2007년 1차 조사에서 전국 대표성을 갖춘 9,068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 9,997명을 패널로 구축하였고, 이후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일본 데이터는 동경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청년패널조사 JLPS-Y, 1-10차(2007-2016) 및 장년패널조사 JLPS-M, 1-10차(2007-2016)이다. JLPS-Y 데이터는 2006년말 현재 24세부터 34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JLPS-M 데이터는 2006년 12월말 현재 35세부터 40세의 장년층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10차 조사(2016년 조사)까지 사용하므로 24세부터 49세까지의 연령층이 포함되게 된다

한일 양국의 패널데이터는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결혼에 대한 의식, 자녀 양육 및 가사 분담 등에 관한 성별 역할 의식 등을 포함한 젠더 의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동일한 조사 대상을 수년간에 걸쳐 추적조사 함으로써 결혼 상태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삼았다.

본 연구의 분석의 초점은 여성 청년 세대의 결혼 이행 행위에 있으므로 미혼에서 초혼을 경험한 대상자를 추출하고자 연령을 18세이상 49세로 한정하였다. 한국 데이터는 1차부터 8차까지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7,893명이 분석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 중에서 미혼을 지속한 사람은 7,612

명(96.4%), 결혼으로 이행한 사람은 281명(3.6%)였다. 일본 데이터는 1차부터 10차 조사를 통합하여 사용하였고, 총 3,429명이 분석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 중에서 미혼을 지속한 사람은 3,210명(93.6%), 결혼으로 이행한 사람은 219명(6.4%)였다. 데이터 통합은 총 3단계를 거쳤다. 1단계에서 t년도에 결혼 상태가 미혼이었던 표본을 추출하고, 2단계에서 t+1년도에 결혼 상태가 미혼이거나 기혼인 표본을 추출하였다. 3단계에서 1단계와 2단계의 표본을 개인 고유번호를 기준으로 통합하였다. 본 분석에서 사용한 독립변수는 t년도의 상태를 나타낸다. 즉, t+1년도에 결혼으로 이행한 사람들의 젠더 의식은 미혼일 당시인 t년도의 젠더 의식을 측정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1단계 및 2단계를 일곱차례 반복하여 7개의 데이터 셋을 생성하였고, 최종적으로 이를 하나의 데이터 셋으로 통합하였다. 일본의 경우, 1단계 및 2단계에서 1-2차, 3-4차, 5-6차, 7-8차, 9-10차를 묶어서 5개의 데이터 셋을 만든 후, 최종적으로 이를 하나의 데이터 셋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방식을 취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핵심이 되는 젠더 의식에 관한 문항이 격년으로 조사되고 있어서, 1차, 3차, 5차, 7차, 9차 조사자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연구 문제와 분석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1. 결혼 변화 상태에 따라서 젠더 의식(결혼 가치관, 모성 이데올로기,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1-2 여성 청년 세대의 젠더 의식에 한일 양국간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1 젠더 의식(결혼 가치관, 모성 이데올로기,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이 결혼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2. 결혼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젠더 의식에 한일 양국간 차이가 있는가.

2) 분석방법

먼저, 각국의 데이터를 토대로 각국의 여성 청년 세대의 젠더 의식을 결혼 상태 변화별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 교차표 분석과 t-test를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의 여성 청년 세대의 젠더 의식을

비교한다. 다음으로, 결혼 상태 변화를 종속 변수로, 젠더 의식을 독립 변수로 하는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 방법으로 이산시간 사건사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 모델은 보완적 로그-로그 모델(Complementary log-log-model)을 선택하였다. 분석결과의 계수 해석은 독립변수 1단위 증가함에 따라서 해저드비가 $\exp(b)$ 만큼 증가 혹은 감소하는지로 해석하게 된다.

3. 분석 변수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측정방법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종속변수는 결혼 상태 변화이다. 미혼을 지속하는 경우는 0값을, 미혼에서 기혼으로 결혼 상태가 변화하는 경우는 1값을 취한다. 독립변수로는 젠더 의식을 설정하였다. 젠더 의식은 결혼 가치관, 모성 이데올로기,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결혼 가치관은 결혼 의향, 결혼에 관한 의식(결혼가치관①), 결혼 생활 중단에 대한 의식(결혼가치관②)으로 측정하였다. 모성 이데올로기는 엄마의 취업이 취학 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식(모성이데올로기①), 결혼과 자녀의 관계에 대한 의식(모성이데올로기②)으로 측정하였다.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는 성별 역할 분업 의식(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①), 여성이 일을 갖는 것에 대한 의식(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②)으로 측정하였다. 젠더 의식은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일본 데이터에서 공통적으로 결혼가치관①, 모성 이데올로기①,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①은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는 것으로 역코딩하였다. 추가적으로 한국데이터에서 모성 이데올로기②에 관해서도 역코딩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과 일본의 젠더 의식에 관한 질문은 내용상으로는 결혼 가치관, 모성 이데올로기,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를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질문 형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며, 측정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국 데이터에서는 매우 그렇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척도로 조사된 반면, 일본 데이터에서는 매우 그렇다(1점), 그렇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다(4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의 5점 척도로 조사되었다.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데이터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각의 원본 데이터대로 분석에 이용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원래 문항의 의미를 제시하고자 주의하였다.

통제 변수로는 연령, 학력, 취업 유무, 주거 형태를 설정하였다. 연령은 20

대, 30대, 40대로 구분하였고, 취업 유무는 취업과 미취업으로, 주거 형태는 자가 및 기타로 구분하였다. 학력은 한국과 일본의 구분이 조금 다른데, 한국은 고졸 미만과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일본은 고졸 미만, 전문학교 졸,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일본 문부성이 발간한 학교 기본 통계(2019)에 따르면 2019년도에 여성의 전수학교 혹은 전문학교 진학률은 27.1%인 것이었는데, 단기대학 진학률은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학제 중 단기대학은 한국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것이고, 전수학교 및 전문학교는 직업교육학교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도 분석 대상자의 약 20%가 전문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대졸 이상과는 구분하여 학력 구분을 하였다.

〈표 1〉 변수 측정 방법

변수		측정 방법	
		한국	일본
종속 변수	결혼 상태 변화	미혼 지속(t년도 미혼, t+1년도 미혼)=0 결혼으로 이행(t년도 미혼, t+1년도 기혼)=1	
독립 변수	결혼 의향	'결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결혼 의향이 있다=1, 결혼 의향이 없다=0 (없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결혼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의향이 있다=1(① 꼭 결혼하고 싶다, ② 가능하면 결혼하고 싶다), 결혼 의향이 없다=0 (③ 결혼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④ 결혼하고 싶지 않다, ⑤ 생각해 본 적 없다)
	결혼 가치관 ①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4점)로 역코딩.	'일반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역코딩.
	결혼 가치관 ②	'남편이 외도를 하면 이혼해야 한다' 매우 그렇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불행한 결혼생활을 계속하느니 이혼하는 것이 낫다' 매우 그렇다(1점) ~매우 그렇지 않다(5점).
	모성 이데올로기 ①	'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가 일을 하면 자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4점)로 역코딩.	'엄마가 밖에서 일하면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자녀는 힘든 경험을 하기 쉽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역코딩.
	모성 이데올로기 ②	'결혼을 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4점)로 역코딩.	자녀가 있으면 부부의 자유로운 생활이 방해를 받는다' 매우 그렇다(1점) ~매우 그렇지 않다(5점).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①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로 역코딩.	'남성의 일은 수입을 얻는 일을 하는 것이고, 여성의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역코딩.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②	'여성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해진다' 매우그렇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	'여성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일을 갖는 것이 가장 좋다' 매우 그렇다(1점) ~매우 그렇지 않다(5점).	

변수	측정 방법	
	한국	일본
연령	연령에 대한 본인 응답을 변수로 이용	
학력	고졸 미만 = 0 대졸 이상 = 1	고졸 미만 = 0, 전문학교 졸 = 1, 대졸 이상 = 1
취업 유무	미취업 = 0, 취업 = 1	
주거 형태	기타 = 0, 자가 = 1	

IV. 분석 결과

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한국의 경우, 연령 분포를 보면, 20대가 75.5%, 30대가 18.5%, 40대가 6.0%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26.4세였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 53.0%로 고졸 이하의 47.0%보다 약간 많았다. 취업 유무는 취업하고 있는 사람이 53.3%, 미취업자가 4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형태는 자가가 69.1%, 기타가 30.9%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지속 집단과 결혼으로 이행한 집단의 인구 사회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미혼 지속 집단은 연령 분포에서 20대가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이행 집단은 20대가 55.5%, 30대가 41.3%로 20대가 조금 많은 비율을 보였다. 각 집단별 평균 연령을 보면 미혼 지속 집단은 26.3세, 결혼 이행 집단은 29.6세로 결혼 이행 집단의 평균 연령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혼 지속 집단의 학력은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이 각각 48.1%, 52.0%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결혼 이행 집단은 대졸 이상이 8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유무는 미혼 지속 집단에서는 취업자가 52.3%, 미취업자가 47.7%의 분포를 보였다. 결혼 이행 집단에서는 취업자의 비율이 79.7%로 미취업자 비율 20.3%보다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형태는 미혼 지속 집단은 약 70%가 자가, 결혼 이행 집단은 약 60%가 자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연령은 20대가 49.3%, 30대가 37.8%, 40대가 12.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이하 학력이 24.1%, 전문학교 졸업 학력이 19.7%, 대졸 이상 학력이 56.1%였다. 취업 유무는 취업자가 91%, 미취업자 9%로 큰 차이를 보였다. 주거 형태는 자가가 70.5%, 기타 29.5%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지속 집단과 결혼 이행 집단 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보면, 미혼 지속 집단, 결혼 이행 집단 모두 20대 비율이 높고, 그 다음으로 30대 비율이 높았으나, 미혼 지속 집단의 40대 비율은 13.7%로 결혼 이행 집단의 40대 비율이 1.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지속 집단의 평균 연령은 30.9세, 결혼 이행 집단은 29.6세로 미혼 지속 집단이 평균 연령이 높았다. 학력은 미혼 지속 집단과 결혼 이행 집단 모두 대졸 이상의 학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학교 졸업이 각각 19.6%, 21.1%로 나타났다. 취업 유무는 미혼 지속 집단의 미취업자 비율이 9.3%로 결혼 이행 집단의 미취업자 비율의 5.5%보다 높았다. 주거 형태는 자가의 비율이 기타 비율의 2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특징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결혼 이행 집단의 평균 연령이 미혼 지속 집단보다 높은 반면, 일본은 미혼 지속 집단의 평균 연령이 결혼 이행 집단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혼 지속 집단과 결혼 이행 집단의 평균 연령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은 취업 유무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일본의 경우 전체적으로도 취업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혼 지속 집단 및 결혼 이행 집단 모두 한국보다 취업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모두 결혼 이행 집단에서 취업자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한국		전체 (N=7,893)	미혼 지속 (N=7,612)	결혼이행 (N=281)	x ² /t-value
		빈도(%)	빈도(%)	빈도(%)	
연령	20대	5,956(75.5)	5800(76.2)	156(55.5)	101.017 ***
	30대	1,460(18.5)	1,344(17.7)	116(41.3)	
	40대	477(6.0)	468(6.2)	9(3.2)	-8.181 ***
	평균	26.4	26.3	29.6	
학력	고졸 이하	3,707(47.0)	3,656(48.1)	51(18.2)	97.255 ***
	대졸 이상	4,183(53.0)	3,953(52.0)	230(81.9)	
취업 유무	미취업	3,686(46.7)	3,629(47.7)	57(20.3)	81.678 ***
	취업	4,207(53.3)	3,983(52.3)	224(79.7)	
주거 형태	자가	5,450(69.1)	5,284(69.5)	166(59.1)	13.667 ***
	기타	2,439(30.9)	2,324(30.6)	115(40.9)	

일본		전체 (N=3,429)	미혼지속 (N=3,210)	결혼이행 (N=219)	χ^2 /t-value
		빈도(%)	빈도(%)	빈도(%)	
연령	20대	1,691(49.3)	1,567(48.8)	124(56.6)	27.718 ***
	30대	1,296(37.8)	1,204(37.5)	92(42.0)	
	40대	442(12.9)	439(13.7)	3(1.4)	
	평균	30.8	30.9	29.6	2.76 **
학력	고졸 이하	827(24.1)	773(24.1)	54(24.8)	0.441
	전문 학교 졸	673(19.7)	627(19.6)	46(21.1)	
	대졸 이상	1,920(56.1)	1,802(56.3)	118(54.1)	
취업 유무	미취업	309(9.0)	297(9.3)	12(5.5)	3.559 †
	취업	3,120(91.0)	2,913(90.8)	207(94.5)	
주거 형태	자가	2,389(70.5)	2,250(70.9)	139(63.8)	.042 *
	기타	1,001(29.5)	922(29.1)	79(36.2)	

† <.10 *p<.05 **p<.01 ***p<.001

2. 결혼 상태 변화에 따른 젠더 의식의 특징

다음은 결혼 상태 변화에 따른 젠더 의식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한국의 경우를 보면, 미혼 지속 집단과 결혼 이행 집단의 젠더 의식의 차이에 있어서, 결혼 의향, 결혼 가치관①, 모성 이데올로기①, 모성 이데올로기②,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①,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②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의향은 결혼 이행 집단에서 결혼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80%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미혼일 당시의 결혼 의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결혼 가치관①은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한 응답 비율은 약 60%를 차지하였고,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응답 비율은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 이행 집단은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응답 비율이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매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14.2%로 미혼 지속 집단보다 높다는 특징이 있었다. 평균값을 보면 결혼 이행 집단의 평균값이 2.6점으로 미혼 지속 집단의 2.4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결혼 가치관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가 일을 하면 자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모성 이데올로기①은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응답 비율은 결

혼 이행 집단이 53%, 미혼 지속 집단이 48.3%로 결혼 이행 집단에서 모성 이데올로기①에 동의하는 비율이 약간 높았다. ‘결혼을 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는 모성 이데올로기②를 보면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응답 비율은 결혼 이행 집단에서 51.8%로 미혼 지속 집단의 39.3%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매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은 결혼 이행 집단에서 12.5%로 미혼 지속 집단의 5.0%보다 높았다. 평균값으로 볼 때도 결혼 이행 집단의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 이행 집단의 결혼과 출산에 관한 모성 이데올로기②가 전통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①의 응답 분포에서는 미혼 지속 집단과 결혼 이행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값을 볼 때 결혼 이행 집단의 평균값이 미혼 지속 집단보다 약간 높았다. 결혼 이행 집단이 성별 역할 분업에 관해서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 관계가 평등해 진다’는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②는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①과 마찬가지로 응답 분포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평균값을 볼 때, 결혼 이행 집단의 평균값이 미혼 지속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일을 갖는 것에 대해서 결혼 이행 집단이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결혼 상태 변화에 따른 젠더 의식의 특성-한국

변수		미혼지속 (N=7,612)	결혼이행 (N=281)	χ^2 /t-value
결혼 의향	없다	3,557(46.8)	52(18.6)	86.419 ***
	있다	4,051(53.2)	228(81.4)	
결혼 가치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938(12.3)	30(10.7)	34.477 ***
	별로 그렇지 않다	3,650(48.0)	105(37.4)	
	조금 그렇다	2,542(33.4)	106(37.7)	
	매우 그렇다	479(6.3)	40(14.2)	
	평균	2.4	2.6	-4.638 ***
결혼 가치관 ②	전혀 그렇지 않다	419(5.5)	15(5.4)	0.796
	별로 그렇지 않다	2,029(26.7)	81(28.9)	
	조금 그렇다	3,644(47.9)	128(45.7)	
	매우 그렇다	1,515(19.9)	56(20.0)	
	평균	2.8	2.8	0.380
모성 이데올로기 ①	전혀 그렇지 않다	498(6.5)	21(7.5)	6.962 †

변수		미혼지속 (N=7,612)	결혼이행 (N=281)	χ^2 /t-value
	별로 그렇지 않다	3,435(45.1)	111(39.5)	
	조금 그렇다	3,300(43.4)	127(45.2)	
	매우 그렇다	376(4.9)	22(7.8)	
	평균	2.5	2.5	
여성 이데올로기 ②	전혀 그렇지 않다	753(9.9)	22(7.8)	38.497 ***
	별로 그렇지 않다	3,863(50.8)	112(39.9)	
	조금 그렇다	2,612(34.3)	112(39.9)	
	매우 그렇다	381(5.0)	35(12.5)	
	평균	2.3	2.6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265(16.6)	38(13.5)	5.88
	별로 그렇지 않다	4,048(53.2)	141(50.2)	
	조금 그렇다	1,987(26.1)	86(30.6)	
	매우 그렇다	309(4.1)	16(5.7)	
	평균	2.2	2.3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 ②	전혀 그렇지 않다	775(10.2)	40(14.2)	5.694
	별로 그렇지 않다	3,490(45.6)	130(46.3)	
	조금 그렇다	2,966(39.0)	98(34.9)	
	매우 그렇다	398(5.2)	13(4.6)	
	평균	2.6	2.7	

† <.10 *p<.05 **p<.01 ***p<.001

〈표 4〉는 결혼 상태 변화에 따른 젠더 의식의 특성에 관한 일본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일본의 경우, 미혼 지속 집단과 결혼 이행 집단의 젠더 의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 결혼 의향, 결혼 가치관①, 결혼 가치관②,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②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의향은 결혼 이행 집단에서 결혼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혼 지속 집단은 71.6%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다’는 결혼 가치관①은 응답 분포에서는 미혼 지속 집단과 결혼 이행 집단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평균값으로 볼 때, 결혼 이행 집단의 평균값이 2.8점으로 미혼 지속 집단의 2.6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 결혼 이행 집단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계속하느니 이혼하는 것이 낫다’는 결혼 가치관②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응답을 합한 응답 비율은 미혼 지속 집단 96.1%, 결혼 이행 집단 93.1%로, 미혼 지속 집단에서 결혼 생활 종료에 관해서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평균값으로 보면, 결혼 이행 집단의 평균값이 미혼 지속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일은 수입을 얻는 일을 하는 것이고, 여성의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라는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①는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응답 비율은 결혼 이행 집단에서 67.9%, 미혼 지속 집단에서 2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으로 보면, 결혼 이행 집단의 평균값은 2.6점, 미혼 지속 집단의 평균값은 2.4점으로 나타나, 결혼 이행 집단이 성별 역할 분업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4〉 결혼 상태 변화에 따른 젠더 의식의 특성-일본

변수		미혼지속 (N=3,219)	결혼이행 (N=291)	χ^2/t -value
결혼 의향	없다	906(28.4)	17(7.8)	43.717 ***
	있다	2,289(71.6)	201(92.2)	
결혼 가치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764(24.8)	42(19.4)	5.768
	별로 그렇지 않다	371(12.1)	26(12.0)	
	보통이다.	1,364(44.3)	96(44.2)	
	조금 그렇다	436(14.2)	40(18.4)	
	매우 그렇다	144(4.7)	13(6.0)	
	평균	2.6	2.8	-2.237 *
결혼 가치관 ②	전혀 그렇지 않다	1,337(44.2)	84(38.9)	12.212 *
	별로 그렇지 않다	1,009(33.4)	67(31.0)	
	보통이다	560(18.5)	50(23.2)	
	조금 그렇다	62(2.1)	11(5.1)	
	매우 그렇다	55(1.8)	4(1.9)	
	평균	1.8	2.0	-2.475 *
모성 이데올로기 ①	전혀 그렇지 않다	437(14.1)	31(14.4)	2.283
	별로 그렇지 않다	512(16.5)	38(17.6)	
	보통이다	823(26.5)	57(26.4)	
	조금 그렇다	993(31.9)	73(33.8)	
	매우 그렇다	344(11.1)	17(7.9)	
	평균	3.1	3	0.731
모성 이데올로기 ②	전혀 그렇지 않다	67(2.2)	5(2.3)	0.878
	별로 그렇지 않다	321(10.7)	20(9.4)	
	보통이다	783(26.0)	54(25.2)	
	조금 그렇다	648(21.5)	51(23.8)	
	매우 그렇다	1,189(39.5)	84(39.3)	
	평균	3.9	3.9	-0.358

변수		미혼지속 (N=3,219)	결혼이행 (N=291)	χ^2/t -value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 ①	전혀 그렇지 않다	941(29.9)	53(24.3)	14.534 **
	별로 그렇지 않다	704(22.3)	54(24.8)	
	보통이다	835(26.5)	44(20.2)	
	조금 그렇다	573(18.2)	59(27.1)	
	매우 그렇다	99(3.1)	8(3.7)	
	평균	2.4	2.6	-2.244 *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 ②	전혀 그렇지 않다	740(23.6)	51(23.5)	2.067
	별로 그렇지 않다	1,276(40.7)	93(42.9)	
	보통이다	785(25.0)	46(21.2)	
	조금 그렇다	178(5.7)	14(6.5)	
	매우 그렇다	156(5.0)	13(6.0)	
	평균	2.3	2.3	-0.116

†<.10 *p<.05 **p<.01 ***p<.001

3. 젠더 의식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

젠더 의식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분석 결과를 <표 5>, <표 6>, <표 7>에 제시하였다. 분석 모형은 4가지로 구분하였다. 모형 1에는 통제 변수와 결혼 가치관, 모형2에는 통제 변수와 모성 이데올로기, 모형3에는 통제 변수와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을 독립 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모형4는 통제 변수, 결혼 가치관, 모성 이데올로기,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을 독립 변수로 투입하였다. 모형에 투입된 결혼 가치관, 모성 이데올로기,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는 결혼으로 이행하기 전년도 의식을 나타낸다.

먼저 한국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 <표 7> 참조). 모형1에서는 결혼 가치관 중 결혼 의향과,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로 측정한 결혼 가치관①이 결혼 이행에 정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으로 이행하기 전에 결혼 의향이 있을 경우,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2.7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할수록 즉 결혼 가치관①이 보수적일수록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1.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는 '결혼을 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로 측정한 모성 이데올로기②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을 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1.5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에서는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

장 이상적이다'로 측정한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①과 '여성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해진다'로 측정한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②가 결혼 이행에 정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 역할 분업에 찬성할수록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1.21배 높았다. 또한, 여성이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을수록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1.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가치관, 모성 이데올로기,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를 모두 투입한 모형4의 결과를 보면, 결혼 의향과 모성 이데올로기②가 결혼 이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에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2.64배 높았고, 결혼을 하면 자녀를 일찍 출산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찬성할수록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1.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가치관, 모성 이데올로기,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를 각각 따로 투입했을 때 결혼 이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던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의 효과는 상쇄되었다.

통제 변수의 효과를 보면, 연령, 학력, 취업 여부는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주택 형태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에서 공통적인 특징이었다. 모형4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40대에 비해서 30대의 경우가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2.6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대에서는 그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학력을 보면, 고졸 이하의 학력에 비해서 대졸 이상의 학력일 경우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2.60배 높았다. 취업자는 비취업자에 비해서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1.6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택 형태는 자가 일수록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는 43%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젠더 의식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한국)

			모형1			모형2		
			Coef	SE	exp(b)	Coef	SE	exp(b)
통제 변수	연령 (ref: 40대)	20대	.108	.344	1.115	.513	.342	1.670
		30대	.926	.345 *	2.525	1.294	.345 ***	3.646
	학력 (ref: 고졸이하)	대졸 이상	.947	.177 ***	2.578	1.021	.178 ***	2.775
	취업 여부 (ref: 미취업)	취업	.499	.176 **	1.646	.629	.174 ***	1.875
	주택 형태 (ref:기타)	자가	-.536	.122 ***	.585	-.528	.123 ***	.590

			모형1			모형2		
			Coef	SE	exp(b)	Coef	SE	exp(b)
결혼 가치관	결혼 의향 (ref:없다)	있다	1.008	.164 ***	2.741			
	결혼 가치관①		.213	.092 *	1.238			
	결혼 가치관②		.036	.077	1.037			
모성 이데올로기	모성 이데올로기①					.021	.098	1.021
	모성 이데올로기②					.404	.093 ***	1.497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①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②							
상수			-5.597	.471 ***	.004	-5.861	.450	.003
Log pseudolikelihood			-1077.307			-1103.883		
Wald chi2(df)			247.27(8)***			215.35(7)***		
N			7,875			7,883		
			모형3			모형4		
			Coef	SE	exp(b)	Coef	SE	exp(b)
통제 변수	연령 (ref: 40대)	20대	.462	.344	1.588	.170	.345	1.186
		30대	1.244	0.346 ***	3.472	.976	.346 **	2.655
	학력 (ref: 고졸이하)	대졸 이상	1.022	.178 ***	2.780	.954	.176 ***	2.595
	취업 여부 (ref: 미취업)	취업	.646	0.175 ***	1.908	.495	.176 **	1.642
	주택 형태 (ref:기타)	자가	-.499	.122 ***	.607	-.547	.122 ***	.578
결혼 가치관	결혼 의향 (ref:없다)	있다				.971	.164 ***	2.641
	결혼 가치관①					.122	.095	1.130
	결혼 가치관②					.030	.077	1.031
모성 이데올로기	모성 이데올로기①					-.048	.088	.953
	모성 이데올로기②					.221	.094 *	1.248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①		.188	.081 *	1.207	.120	.104	1.127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②		.150	.089 †	1.162	.111	.097	1.118
상수			-5.618	.426	.004	-6.374	.527 ***	.002
Log pseudolikelihood			-1111.524			-1071.933		
Wald chi2(df)			213.16(7)***			261.71(12)***		
N			7,882			7,874		

† <.10 *p<.05 **p<.01 ***p<.001

다음으로 일본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6〉, 〈표 7〉 참조). 모형1에서는 결혼 의향과 ‘불행한 결혼 생활을 계속하느니 이혼하는 것이 낫다’로 측정된 결혼 가치관②가 결혼 이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에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3.56배 높았으며, ‘불행한 결혼 생활을 계속하느니 이혼하는 것이 낫다’에 찬성하지 않을수록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1.14배 높은 결과였다. 모형2에서는 결혼 이행에 대한 모성 이데올로기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모성 이데올로기의 효과를 확인되지 않았다. 모형3에서는 ‘남성의 일은 수입을 얻는 일을 하는 것이고 여성의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로 측정된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①이 정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 역할 분업에 찬성할수록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1.1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4에서는 모형1에서 그 효과가 확인되었던 결혼 의향, 결혼 가치관②의 효과가 나타났고, 모형2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엄마가 밖에서 일하면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자녀는 힘든 경험을 하기 쉽다’로 측정된 모성 이데올로기①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 이데올로기①에 찬성할수록 즉 엄마 역할 인식이 전통적일수록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1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 변수의 영향을 보면, 모든 모형에서 연령과 주택 형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은 정의 영향, 주택 형태는 부의 영향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은 40대에 비해서 20대, 30대가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각각 10.74배, 12.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형태는 자가일 경우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2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및 취업 여부는 결혼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젠더 의식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일본)

			모형1			모형2		
			Coef	SE	exp(b)	Coef	SE	exp(b)
통제 변수	연령 (ref: 40대)	20대	2.034	.589 **	7.643	2.763	.718 ***	15.845
		30대	2.114	.591 ***	8.285	2.771	.720 ***	15.975
	학력 (ref: 고졸이하)	전문 학교	.142	.167	1.153	-.017	.174	.983
		대졸 이상	.156	.177	1.168	.135	.176	1.145
	취업 여부 (ref: 미취업)	취업	.334	.303	1.397	.409	.304	1.506
주택 형태 (ref: 기타)	자가	-.330	.147 *	.719	-.279	.148 †	.757	
결혼 가치관	결혼 의향 (ref: 없다)	있다	1.268	.262 ***	3.555			

			모형1			모형2		
			Coef	SE	exp(b)	Coef	SE	exp(b)
			결혼 가치관①			.067 .062 1.069		
			결혼 가치관②			.134 .074 † 1.144		
모성 이데올로기	모성 이데올로기①					-.042	.054	.959
	모성 이데올로기②					.011	.062	1.011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①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②							
상수			-6.280	.758 ***		-5.438	.877 ***	.004
Log pseudolikelihood			-728.659			-742.424		
Wald chi2(df)			49.96(9)***			19.55(8)*		
N			3,114			3,136		
			모형3			모형4		
			Coef	SE	exp(b)	Coef	SE	exp(b)
통제 변수	연령 (ref: 40대)	20대	2.427	.587 ***	11.322	2.374	.716 **	10.740
		30대	2.372	.589 ***	10.719	2.502	.718 ***	12.214
	학력 (ref: 고졸이하)	전문 학교	.099	.166	1.104	.012	.175	1.012
		대졸 이상	.114	.176	1.120	.174	.179	1.190
	취업 여부 (ref: 미취업)	취업	.456	0.304	1.578	.273	.305	1.314
	주택 형태 (ref: 기타)	자가	-.336	.146 *	.714	-.306	.151 *	.736
결혼 가치관	결혼 의향 (ref: 없다)	있다				1.255	.275 ***	3.507
	결혼 가치관①					.074	.065	1.077
	결혼 가치관②					.150	.077 *	1.162
모성 이데올로기	모성 이데올로기①					-.117	.060 †	.890
	모성 이데올로기②					-.015	.066	.986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①		.119	.057 *	1.127	.102	.064	1.108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②		-.003	.066	.997	-.063	.071	.939
상수			-5.504	.724 ***	.004	-6.299	.941 ***	.002
Log pseudolikelihood			-767.017			-693.499		
Wald chi2(df)			29.60(8)***			51.02(13)***		
N			3,286			2,946		

† <.10 *p<.05 **p<.01 ***p<.001

〈표 7〉 젠더 의식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의 한일 비교

		한국				일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결혼 가치관	결혼 의향	+	.	.	+	+	.	.	+
	결혼 가치관①	+
	결혼 가치관②	+	.	.	+
모성 이데올로기	모성 이데올로기①	-
	모성 이데올로기②	.	+	.	+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①	.	.	+	.	.	.	+	.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②	.	.	+

(+) (-) 기호는 $p < .10$, $p < .05$, $p < .01$, $p < .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가족 및 젠더 의식에 초점을 두고 결혼 이행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젠더 의식에는 결혼 가치관, 모성 이데올로기,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를 포함하였다. 분석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여성 청년 세대의 젠더 의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여성 청년 세대의 젠더 의식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과 한일 양국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몇 가지 논의를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결혼 상태 변화에 따른 젠더 의식의 특징을 비교하면, 한국과 일본 모두 결혼 이행 집단이 미혼시에 결혼 의향이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었다. 또한, 미혼 지속 집단과 결혼 이행 집단 모두 일본 여성 청년 집단에서 결혼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더 높았다. 한국과 일본에서 젠더 의식이 결혼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특징을 비교하면, 결혼 가치관 중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요인은 결혼 의향이었으며, 젠더 의식을 포함한 모형에서도 모든 변수 중에서 결혼 의향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 의향이 결혼 이행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コルムシ, 2019; 小林, 2006; 橋本, 2009)이라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상립(2019)의 연구에서 미혼 여성의 경우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묻는 질문인 ‘결혼을 반드시 해야한다’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28.8%였던 것에 반해, 자신의 직접적인 결혼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결혼 의

사가 있다'는 응답이 4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국립사회보장 및 인구문제 연구소의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전국조사 보고서(2015)에 따르면, 18~34세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 '언젠가는 결혼을 하려고 한다'는 응답은 미혼 남성에서 85.7%, 미혼 여성에서 89.3%로 매우 높았고(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5), 이러한 경향은 적어도 1987년 이후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었다. 결혼을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충족되었기에 결혼 의향이 있을 수 있다는 관계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의 미혼 여성의 결혼 의향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결혼 의향을 가지게 되는 필수조건이거나 전제조건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 의향이 결혼 이행에 직접적이고 큰 영향요소라고 보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는 성별 역할 분업을 나타내는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가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결혼 이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이점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결혼 가치관의 영향은 한국에서는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결혼 이행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일본은 결혼 관계를 끝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가치관이 결혼 이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젠더 의식 중 모성 이데올로기의 효과만을 살펴볼 때, 일본은 일하는 엄마로 인한 자녀 양육에 대한 모성 이데올로기가 결혼 이행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은 결혼하면 자녀를 갖는 것이 좋다는 의식을 가질 경우 결혼 이행에 정의 영향이 있었다.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중 여성의 일과 관련된 인식은 일본에서는 그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한국에서는 그 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여성이 직장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을수록 결혼 이행에 정의 영향이 있었다. 한국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보수적일수록 결혼으로 이행하는데, 일본은 상황에 따라서는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질 경우 결혼으로 이행이 낮아지며, 또한, 자녀에 관한 어머니의 역할 인식을 강하게 할수록 결혼으로 이행이 낮아져서 한국과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 여성 청년 세대의 결혼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젠더 의식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성별 역할 분업 의식에 찬성할수록 결혼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다는 점이 한국과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밝혀진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성별 역할 분업 의식은 결혼으로 이행하기 직전의 의식인데 실제 결혼 후의 생활을 감안하여 결혼 직전에 성별 분업 의식에 찬성하는 쪽으로 변화했을 가

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희경과 신형진(2020)의 연구에서 결혼 이행 여부에 따른 결혼 가치관의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비혼 유지 집단과 초혼 이행 집단의 가치관은 처음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초혼 이행 집단은 혼인 직전의 가치관이 처음보다 전통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밝혀낸 바 있다.

둘째, 한국은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의 효과 중에서 여성이 직장을 가지는 것에 찬성하지 않을수록 결혼 이행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여성이 직장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면 결혼 이행 확률이 낮아지는 것이다. 가사책임에 관한 부담,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결혼으로 이행하는데 장애임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30대 전반의 미혼 여성이 결혼 이행의 장애로 꼽고 있는 것이 결혼 후 자신의 가사책임이라는 彭潤希 등(1999)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2021)에 따르면 2020년 30대 맞벌이 가구 비율은 51.3%, 40대 맞벌이 가구 비율은 5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1). 일본의 경우, 국립사회보장 및 인구문제 연구소의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전국조사 보고서(2015)에 따르면, 1990년대 조사에서 18~34세의 미혼 여성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라이프코스로 전업주부 코스를 선택하는 비율이 감소한 이후, 일과 가정 양립코스를 선택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5). 다만, 일과 가정 양립코스를 희망하는 경우라도 해도 결혼 후 실제로 일과 가정 양립코스를 선택할 수 있는 비율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결혼 의향이 결혼 이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가사와 육아 책임이 집중되는 성별에 따른 역할 분업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맞벌이의 어려움을 남배우자가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의 확충과 결혼 이후에도 여성이 자신의 역량 발휘와 커리어 발전이 가능한 사회적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한국에서는 성별 역할 분업 의식에 찬성할수록, 또한, 취업하고 있을수록 결혼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일본에서는 취업 여부는 결혼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으로 이행한 그룹의 결혼 전후의 취업 상태를 추적해 본다면 성별 분업 의식, 결혼 후 취업 지속 여부, 결혼 행동의 관계가 보다 명확해 질 것이라고 본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 중 하나로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결혼을 하는가'를 파악할 때 결혼 이행의 선행 조건으로 현실과 결혼 후의 생활에 대한 이상 사이에서 가치관의 타협이 일어날 가능성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 젠더 의식 중 모성 이데올로기의 효과를 볼 때, 한국은 결혼하면 자녀

를 빨리 갖는 것이 좋다는 의식을 가질 경우 결혼 이행에 정의 영향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결혼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혼 가치관의 효과와 모성이데올로기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생애 과정에서 순차적이고 당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규범이 강하게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즉 한국의 여성 청년 세대는 결혼과 출산의 생애단계의 과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선호가 결혼 이행의 동기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무자녀 결정을 이기적 선택으로 치부하고 출산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여성 청년 세대 집단은 편중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한국의 여성 청년세대에게 출산의 책임이 결혼 행위를 결정하는데 매우 무겁게 작용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넷째, 일본은 취학 전 자녀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에 관한 모성 이데올로기 의식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결혼 관계를 끝내는 것에 대해서 다소 전통적일수록 결혼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에 관한 어머니의 역할 인식을 강하게 할수록 결혼으로 이행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한국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흥미로운 점이다. 일본의 자녀 양육에 관한 관심에 대해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60년대에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엄마가 직접 양육을 하지 않으면 자녀 성장 후 악영향이 있다는 '3세 아동 신화(三歲兒神話)'가 대중에 퍼지기 시작하였다(上野 등, 2010). '3세 아동 신화'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찬반의견이 논의되고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도 자녀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책임에 대한 의식이 깊이 자리잡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문에서도 자세하게 기술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가 동일한 모듈로 수행된 조사가 아니므로 젠더 의식의 측정 도구 및 측정 방법이 일치하는 않는 부분이 있다. 이로 인해 분석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있음을 밝혀둔다. 다만 분석 및 해석에 있어서 가능한 두 조사의 측정 도구의 원문항의 내용을 그대로 언급하여 설명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두 가지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경제적 요인의 효과를 통제한 후, 젠더 의식(결혼 가치관, 모성 이데올로기,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이 여성 청년 세대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젠더 의식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결혼, 출산 및 자녀양육, 가정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에 관한 의식을 포

함하고 이러한 의식과 결혼 행동과의 관계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청년 세대의 결혼 및 젠더 의식이 다소 상이하다는 현재의 논의를 고려하여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여성 청년의 특성을 명확히 밝혀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Acknowledgements

The data for this secondary analysis, “Japanese Life Course Panel Survey of the Youth (JLPS-Y) Wave 1-10, 2007-2016, Japanese Life Course Panel Survey of the Middle-aged (JLPS-M), Wave 1-10, 2007-2016(Japanese Life Course Panel Surveys (JLPS) project, Institute of Social Science, The University of Tokyo)” was provided by the Social Science Japan Data Archive, Center for Social Research and Data Archives, Institute of Social Science, The University of Tokyo.

참고문헌

- 김은정(2018). “미혼 여성이 지각한 결혼 가치관과 성역할 가치관이 결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194-194.
- 김정석(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제29권 제1호. 57-70.
- 김주현·이수진(2019). “한국과 일본 비혼 현상의 성별 차이”. 한국인구학. 제42권 제1호. 115-138.
- 박경숙·김영혜·김현숙(2005).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 원인: 계층, 성역할 분리규범, 경제 조정의 우발적 결합”. 한국인구학. 제28권 제2호. 33-62.
- 변수정(2018). “미혼인구의 자녀 및 가족 관련 생각”. 보건복지포럼. 제268권. 19-34.
- 오영은·추주희(2020).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가치관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인문사회21. 제11권 제1호. 1217-1231.
- 오지혜(2020).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이 자녀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 노동패널 1998-2016년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40권 제4호. 50-81.
- 우해봉(2009). “교육이 초혼 형성에 미치는 영향: 결혼 연구 혹은 독신?”. 한국인구학. 제32권 제1호. 25-50.
- 유계숙·정선영(2018). “청년초기 미혼 대학생의 기대자녀수를 설명하는 요인의 탐구 = 태도, 규범, 행동 통제감의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6권 제3호. 79-89.
- 유흥준·현성민(2010). “경제적 자원이 미혼 남녀의 결혼 연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제33권 제1호. 75-101.
- 이상림(2019). “미혼 인구의 결혼 관련 태도”. 보건복지포럼. 제268권. 6-18.
- 이삼식(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제26권 제2호. 95-140.
- 이순미(2016). “비혼 청년층의 가족의식에 나타난 가족주의의 변형과 젠더 차이”. 지역과 세계. 제40권 제3호. 1-30.
- 임훈민·김중백(2013). “취업이 결혼희망연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인구학. 제36권 제3호. 45-67.
- 장경섭(2011). “‘위험회피’ 시대의 사회재생산: 가족출산에서 여성출산으로?”. 가족과 문화. 제23권 제3호. 1-23.

- 정희경·신형진(2020). “결혼가치관의 변화가 초혼이행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제32권 제1호. 153-155.
- 진미정·정혜은(2010).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 가치관의 영향 추세 연구”. *한국인구학*. 제33권 제3호. 31-51.
- 채민진(2019). *한국 2,30대 남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 인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효미(2017). “청년 미혼층의 결혼 및 출산 의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49-55.
- 탁현우(2020). “미혼남녀의 결혼지연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1권 제2호. 223-244.
- 통계청(2021). “지역별 고용조사” 국가통계포털사이트 <http://kosis.kr>에서 2022. 8.31 인출
- 호정화(2014). “비혼과 1인 가구 시대의 청년층 결혼 가치관 연구: 혼인 및 거주형태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37권 제3호. 25-59.
- Barber, J. S., & Axinn, W. G. (1998). Gender role attitudes and marriage among young women. *The Sociological Quarterly*, 39(1), 11-31.
- Bellani, D., Esping-Andersen, G., & Nedoluzhko, N. (2017). Never partnered: A multilevel analysis of lifelong singlehood. *Demographic Research*, 37, 53-100.
- Burgess, S., Propper, C., & Aassve, A. (2003). The Role of Income in Marriage and Divorce Transitions among Young American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6(3), 455-475.
- Cunningham, M., Beutel, A. M., Barber, J. S., & Thornton, A. (2005).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attitudes about gender and social contexts during young adulthood. *Social Science Research*, 34(4), 862-892.
- Espenshade, T.(1985). Marriage Trends in America: Estimates, Implications, and Underlying Caus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1(2), 193-245.
- Esping-Andersen, G., & Billari, F. C. (2015). Re-theorizing family demographic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1), 1-31.
- Goldscheider, F. & Waite, L. (1986). Sex Differences in the Entry into marria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92(1), 91-109.

- Goldscheider, F., Bernhardt, E., & Lappegård, T. (2015). The gender revolution: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changing family and demographic behavior.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2), 207-239.
- Kolpashnikova, K., Zhou, M., & Kan, M. Y. (2020). Country differences in the link between gender-role attitudes and marital centrality: Evidence from 24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61(5), 291-309.
- Pessin, L. (2018). Changing gender norms and marriage dynamic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0(1), 25-41.
- 阿部正浩・北村行伸(1999).「結婚の意思決定モデルとその実証」阿藤誠編『家族政策および労働政策が 出生率および人口に及ぼす影響に関する研究：総合報告書(平成8年度~平成10年度)：厚生科学研究 費補助金政策科学推進研究事業』, 395-417.
- 上野恵子・穴田和子・浅生慶子・内藤圭・竹中真輝(2010). “文献の動向から見た育児不安の時代的変遷”. 西南女学院大学紀要. 14. 185-196.
- 厚生労働省(2013).「若者の意識に関する調査」の報告書,
<https://www.mhlw.go.jp/file/04-Houdouhappyou-12605000-Seisakutoukatsukan-Seisakuhyoukakanshitsu/0000022200.pdf> 에서 2022. 8.31 인출.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2015). 現代日本の結婚と出産 - 第15回出生基本動向調査報告書一,
https://www.ipss.go.jp/ps-doukou/j/doukou15/NFS15_reportALL.pdf 에서 2022. 8.31 인출.
- コラムシオリガ(2019). “ジェンダー意識は結婚への移行に影響を与えるのか:パネルデータを用いた男女比較分析”. *ジェンダー研究*. 22. 169-183.
- ソニー生命保険株式会社(2019). 女性の活躍に関する意識調査 2019,
https://www.sonylife.co.jp/company/news/2019/files/190424_newsletter.pdf에서 2022. 8.31 인출.
- 内閣府(2012).平成24年度男女共同参画社会に関する世論調査報告書,
<https://survey.gov-online.go.jp/h24/h24-danjo/2-2.html> 에서 2022. 8.31 인출.
- _____ (2016). 平成28年度男女共同参画社会に関する世論調査報告書,
<https://survey.gov-online.go.jp/r01/r01-danjo/zh/z13.html> 에서 2022.

8.31 인출.

_____(2019). 令和元年度男女共同参画社会に関する世論調査報告書,
<https://survey.gov-online.go.jp/h28/h28-danjo/2-2.html> 에서 2022.

8.31 인출.

_____(2021). 男女共同参画白書令和2年版,
https://www.gender.go.jp/about_danjo/whitepaper/r02/zentai/html/zuhyo/zuhyo01-02-01.html 에서 2022. 8.31 인출.

永瀬圭(2018). 結婚に関わる意識と女性の社会経済的地位—計量分析を通して—. 京都大学博士論文.

永瀬伸子(2002). “若年層の雇用の非正規化と結婚行動(特集:少子化に関する家族・労働政策の影響と少子化の見通しに関する研究)”. 人口問題研究. 58(2). 22-35.

何芳(2018). “女性の稼働能力は結婚を妨げるのか?”. 生活経済学研究. 47. 129-146.

加藤(2004). 「配偶者選択と結婚」渡辺秀樹・稲葉昭英・嶋崎尚子編『現代家族の構造と変容-全国家族調査 [NFR98] による計量分析』東京大学出版会, 41-58.

橋本摂子(2009). “未婚者層における結婚意識の変動と社会階層的要因:パネル・ロジットモデルによるアスピレーション分析”. 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パネル調査プロジェクト ディスカッションペーパーシリーズ, No. 29.

佐々木尚之(2012). “不確実な時代の結婚[GSSライフコース調査による潜在的稼働力の影響の検証]”. 家族社会学研究. 24(2). 152-164.

三好向洋(2013). “日本における労働市場と結婚選択”. 日本労働研究雑誌. 638. 34-42.

山田昌弘(2015). 「なぜ若者は保守化したのか希望を奪い続ける日本社会の真実」、朝日新書

_____(2019). 「結婚不要社会」、朝日新書

酒井・樋口(2005). “フリーターのその後—就業・所得・結婚・出産”. 日本労働研究雑誌. 535. 29-41.

小林淑恵(2006). “結婚・就業に関する意識と家族形成:循環モデルによる検証”. 人口学研究. 39. 1-18.

小林盾・能智千恵子(2016). “婚活における結婚の規定要因はなにか—結婚研究の視点から, えひめ結婚支援センターを事例とした量的分析—. 理論と方法. 31(1). 70-83.

水落正明(2006). “学卒直後の雇用状態が結婚タイミングに与える影響”. 生活経済学研究. 22-23. 67-176.

中谷奈津子(2018). “婚男女における結婚意欲の関連要因—家族形成意識に関する福井・

- 大阪における調査から一”. 日本家政学会誌. 69(2). 105-114.
- 津谷(2009). “学歴と雇用安定性のパートナーシップ形成への影響”. 人口問題研究. 65(2). 45-63.
- 的場康子(2013) “若者の性別役割分業意識を考える”. LifeDesign REPORT, 2013. 7. 38-40.
- 藤原翔(2016). 「結婚・家族・ジェンダーに関する意識や未婚理由はその後の結婚にどう影響するか」石田浩・有田伸・藤原翔・小川和孝著『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パネル調査プロジェクトディスカッションペーパーシリーズ94:パネル調査からみる非認知的スキル、仕事の負担、結婚に影響する意識、資産の不平等』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
- 白河桃子(2014). 「専業主婦になりたい女たち」, ポプラ新書.
- 福田節也(2007). “ジェンダーシステムと女性の結婚選択(2)-日本における「女性の経済的自立仮説」の検証”. 家計経済研究. 76. 54-62.
- 文部科学省(2019). 『学校基本調査』.
https://www.mext.go.jp/b_menu/toukei/chousa01/kihon/1267995.htm. 에서 2022. 8.31 인출.
- 彭潤希・佐藤龍三郎・武藤孝司(1999). “未婚女性の結婚・出産に対する阻害要因-結婚・出産・育児・介護および就業に関する意識調査から”. 順天堂医学. 44(4). 423-433.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Consciousness and Transition to Marriage of Young Women in Korea and Japan

Lee Sujin*·Kim Ju H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gender consciousness (marriage values, Motherhood ideology, and male breadwinner ideology) on the marriage transition of the younger female generation. In addition, it reveal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 through comparison with the gender consciousness and marriage performance of young Japanese women. The Korean data is the 1-8th KLoWF (2007-2020), Japan's data is the Youth Panel Survey JLPS-Y, the 1-10th (2007-2016) of Tokyo National University's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and the 1-10th (2007-2016) of the Elderly Panel Survey JLPS-M. The analysis subjects were those aged 18 to 50, selected 7,893 in Korea and 3,429 in Japan.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 that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marriage transition in both Korea and Japan was the gender division of labor that men should have a job and women should take care of their families. This is the result of the need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compromising values before transitioning to marriage between reality and ideals about marriage. Second, the more think marriage is essential and the more you think it's better to have children when you get married, the probability of marriage transition is high in Korea. Considering the effects of marriage values and motherhood ideology at the same time, it is a result showing that marriage and childbirth remain sequentially and justifiable norms in the life course. Third, the more important the mother's role in preschool children is recognized, the lower the probability of marriage transition in Japan, which is contrary to the results of Korea.

Keywords : Gender consciousness, Transition to Marriage, young women, Korea, Japan

* First Author: Associate Professor, Faculty of Education, Hirosaki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기혼여성의 경력유지에 성역할가치관이 미치는 영향* - 생존분석방법 적용

황지선**·민현주***

초 록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성역할가치관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의 1차 조사부터 7차 조사까지의 11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을 고려한 생존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여성의 평균 경력유지 기간은 59개월로 나타났으며, 경력유지 생존율의 시각적인 추이로는 2~5년간의 경력유지 이후 경력유지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성역할가치관은 기혼여성의 경력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 평등인식이 높은 기혼여성일수록 경력유지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혼여성의 연령대별 집단과 성역할가치관의 상호작용은 경력유지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젊은 세대 중 비전통적 성역할가치관을 가진 기혼여성들은 다른 여성들보다 경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혼여성들의 경력유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세대별, 성역할가치관에 따른 차등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 여성가족패널조사, 생존분석, 기혼여성 연령효과, 성역할가치관, 경력유지, 사건사분석

* 본 논문은 황지선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음

** 제1저자: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박사과정(cals100@kyonggi.ac.kr)

*** 교신저자: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교수(newrules@kyonggi.ac.kr)

I. 서론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영역에 여성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의하면 2020년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은 19%이고 장관 중 여성 비율은 33.3%로 상승 추세이며,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도 20.9%로 상승 추세이다(통계청, 2021). 또한,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2020년 17.6%로 2015년 대비 4.4%의 하락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연령대별 M자형 고용률의 특징은 여전히 과거의 모습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며,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도 2020년 기준, 50.7%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통계청, 2021).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 논의의 핵심에는 기혼여성이 있다(곽현주·최은영, 2015).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경력단절에 집중되어 경력단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동시장 재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가정 양립 제도가 경력단절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다(김난주 외, 2017; 박효진·은선경, 2012; 이승현·박영일, 2017). 최근에는 기혼여성이 빠르게 고학력화되고 개인의 특성이 과거 10년 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점을 고려하고, 이들의 노동시장 이탈 후 복귀에 드는 높은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에 접근할 때에 재취업보다는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경력유지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경력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급격한 가족 가치관의 변화와 기혼여성의 가정 내 역할을 구분하는 성역할가치관에 주목한다. 최근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 가치관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통계청의 사회조사(2020)에 의하면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여 꼭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거나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응답이 증가하고 있고, 부부가 가사 일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가치관 역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의 성 평등 의식조사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성 평등 의식이 1점 올라갈 때마다 결혼 후 일 년 이내에 하고 있던 직업을 그만둘 가능성을 5.2%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여성의 인식과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지만, 사회정책의 변화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기혼여성의 경력유지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혼여성은 평소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가족 가치관 중에서도 성역할가치관이 노동시장 참여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가족 가치관에 대해서는 주로 혼인의향과 출산 의지, 삶의 만족 또는 갈등,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을 다룬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김경자, 2016; 성정혜·김춘경, 2019; 전해영, 2020). 가족 가치관 중에서도 가족 내 역할 가치관인 성역할가치관과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연구로는 출산 계획과 양육 시기,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으며(김정원, 2021; 민현주, 2011; 윤미례·김태일, 2016; 이진숙·최원석, 2012), 성역할가치관이 기혼여성의 경력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기혼여성의 성역할가치관과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이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 횡단연구로 진행되었다는 한계를 갖는다. 다시 말해서 한 시점에서의 가치관이 바로 그 시점에서의 생애 사건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시간 차이를 두고 이후의 생애 사건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성역할가치관과 여성의 경력유지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관찰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치관과 의사결정 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역할가치관이 기혼여성의 경력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를 이용하여 패널자료의 장점을 살려 역동적인 종단분석을 실시한다. 시간을 통계적으로 추정해주는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방법을 적용하여 첫째, 기혼여성의 경력유지 기간의 생존율을 분석하고, 둘째, 기혼여성의 경력유지에 미치는 성역할가치관의 영향을 분석한다. 셋째로는 기혼여성 중에서도 세대에 따라 성역할가치관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기반으로 기혼여성의 연령대별 집단과 성역할가치관 간의 상호작용이 경력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II. 선행연구

1. 기혼여성의 경력유지

기혼여성의 경력유지가 어려운 환경적 요인으로는 결혼, 출산, 육아와 같은 생애사적 가족 요인과 일자리 특성, 가족 친화정책과 같은 정책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력이란 한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서 일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총체적인 것으로 직업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Arthur·Hall·

Lawrence, 1989) 기혼여성의 경력유지는 생애사적 특수한 경험과 사회 구조적 요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과거의 가부장 제도하에서는 여성이 결혼하게 되면 가족 구성원의 의사결정권이 가장인 남성에게 집중되고 기혼여성의 경력유지 여부 결정에도 가족 내 남성이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마리아 미즈(Maria Mies)는 이러한 가부장제도와 자본주의가 결합하여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착취와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Meis, 1998). 최근 가부장제의 영향력이 많이 쇠퇴하고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였지만, 여성이 결혼, 임신, 출산을 전후로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참여를 결정하는데 남편의 선호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곽현주·최은영, 2015), 기혼여성의 경력유지를 이해하는데 가부장제의 설명력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출산과 육아를 둘러싸고 여성의 본질을 모성에 국한하는 모성 이데올로기는 기혼여성의 경력유지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Kaplan, 1990). 통계청(2021)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경력유지에 방해가 되는 첫 번째 사유는 육아이고 다음으로는 결혼, 출산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미성년자녀가 없는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7%에 불과하지만,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경력단절 비율이 37.7%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rinton(2001)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 양육의 질(quality)을 더 중요시하는 고학력 기혼여성에게 모성 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이들 여성의 경력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자녀 양육기 동안 고학력 여성들의 경력단절은 이후 노동시장의 복귀를 어렵게 만들고 국가적인 인적자원의 손실로도 연결된다.

기혼여성의 경력유지를 둘러싼 또 하나의 환경적 요인으로는 일자리 특성이나 가족 친화정책과 같은 여성 노동의 특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자리 특성 중 임금은 경력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인적자본을 많이 투자한 고학력 여성일수록 임금 수준이 높으며, 따라서 경력을 유지하는 것이 이들의 생애 임금 수준을 높이는데 더 유리하다(민현주, 2011). 기혼여성의 경력유지 관점에서 요인을 분석한 정성미·이진숙(2018)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 본인의 임금과 사업체 규모가 여성의 경력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기혼여성의 경력유지 메커니즘은 개인특성보다도 일자리 특성 요인이 핵심적으로 작용하여 고임금과 대규모 사업체의 특성을 갖는 괜찮은 일자리(good jobs)에 진입한 경우에만 유리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학력 여성은 배우자의 학력과 소득수준도 높은 경향이 있으며, 이는 이들이 힘든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의 책임을 맡으면서 굳이 경력유지를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동기부여를 낮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민현주, 2011).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에 대한 높은 관심, 가족 돌봄에 대한 강한 책임감 등은 기혼여성들, 특히 고학력 여성들이 노동시장 이탈을 촉진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도린저(Doeringer)와 피오레(Piore)가 제기한 분절 노동시장 이론은 이미 오래전에 고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보호되는 일차 노동시장과 그렇지 못한 이차 노동시장으로 구분되어 여성의 경력유지에 더 불리한 구조화가 이루어지는 기제를 설명하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여성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제도, 모성보호 제도 등이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노동시장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은 외부 정당성은 확보하되 여성 근로자들이 이런 제도들을 활용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으며(민현주, 2010), 이러한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확장되고 있으나 직장 여건과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사용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정미주·임상호, 2016). 더욱이 이러한 일·가정 양립 제도는 우리나라 여성 대다수가 취업해 있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보다는 대기업 위주로 도입되고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윤명수·부가청, 2016), 직장 내 일·가정양립제도가 기혼여성의 경력유지에 실질적 의미가 있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2. 기혼여성의 성역할가치관과 경력유지

성 역할은 사회적으로 확인된 성별에 기초하여 개인에게 적용되는 적절한 자질과 행동에 대한 공유된 기대이다(Eagly, 1987). 가치관은 태도의 일종으로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내릴 때 인지적인 측면의 판단 기준과 정서적인 측면의 느낌과 행동적인 측면의 조화를 통합한 가치체계이고, 그 구체적인 발현은 일관성 있는 행동으로 표출된다(정호범, 2013). 따라서 개인이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할 때 가치관에 따라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며, 가족 가치관 중에서 가정 내에서 성별에 따라 역할을 구분하고 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성역할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역할가치관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환경과 결합하여 기혼여성의 경력유지에 어떤 차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성역할가치관과 같은 가족 가치관의 변화는 사회적으로 구성원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고(세대효과(cohort effect)), 특정 기간의 사회현상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기간효과(period effect))(정선영, 2021). 개인 차원에서 보면 특정한 생애주기 단계나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전통적인 성역할가치관을 갖게 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연령효과(age effect)로 설명하고 있다(전상진, 2004; 이내영·정한울, 2013). 최근 우리 사회의 성역할가치관은 비전통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성역할태도의 형성과 변화에 가장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대가 강조되었다(강유진, 2016).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성 평등인식이 높다는 분석결과는 위의 연령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점차 양성 평등한 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세대 간 성 평등인식의 차이가 우리 사회의 세대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대별 성역할가치관의 변화는 여성의 경력유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기혼여성의 경력을 유지하는 의사결정에는 인적자원의 문제와 개인의 취향에 의한 선택으로 두 가지의 서로 밀접한 기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한다(민현주, 2012). 첫째로는 고학력 여성일수록 인적자본이론에 따라 결혼과 출산과 같은 생애 사건으로 인해 노동시장을 떠날 확률이 떨어진다고 하는 설명이다. 둘째로는 여성이 성 역할 사회화이론에 따라 초기 사회화 과정에서 학습한 성역할가치관이 이후 성인기에서 경력유지에 대한 태도에 반영된다고 하였다(Becker, 1991; 민현주, 2012에서 재인용). 따라서 성역할가치관은 기혼여성의 경력유지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평등주의(egalitarianism) 성역할가치관을 가진 여성들은 전통적인(traditionalism) 성역할가치관을 가진 여성들보다 직업적인 역할을 더 중요시하여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은 소득을 누리는 경향이 있다(Stickney·Konrad, 2007).

기혼여성의 경력유지에 관해서는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성역할가치관에 따라 경력이 유지되는 궤적을 추적하여 분석하는 종단연구를 통해 세밀하고 통합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여성 직업인을 대상으로 기혼여성들의 성역할가치관이 경력유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종단연구에 의하면 전통적인 성역할가치관을 가진 여성들보다는 비전통적인 성역할가치관을 가진 여성들이 더 오래 경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지애, 2018). 특히 진보적인 성역할가치관을 가진 여성들은 한 직장을 꾸준하게 유지하기보다는 경력을 전환하면서 지속적으로 경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경력의 양적인 연장

속에서 경력전환의 질적인 요소를 관찰한 결과이다. 한편 여성 근로자는 퇴직 사건에서 경력이 단절되는 위험 요소를 갖게 되는데 현재 일자리를 떠날 때 비취업으로 이동하기보다는 이직을 통해 경력을 유지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선애, 2021). 또한, 직급별 경력을 살펴보면 사원급에서 이직 가능성이 가장 크고 과장급에서 비취업으로 이동할 위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여성의 일자리 특성과 성역할가치관이 기혼여성의 경력유지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단순하게 괜찮은 일자리에의 취업이 경력유지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조직환경, 노동시장 제도 그리고 여성들의 가치관 등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이 여성들의 경력유지를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경력유지는 개인특성, 가족 요인, 일자리 특성, 여성 노동시장 구조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심리적 요인인 성역할가치관까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종단연구를 통해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를 활용하였고 통계프로그램(IBM SPSS 25)의 생존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 1차 조사대상의 기혼여성 중에서 경력유지의 궤적을 추적하기 위해 첫 일자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인 8,170명으로 정하였다. 이들의 1차 조사 이후에 발생하는 경력유지 여부와 경력유지 기간을 관찰하여 경력유지의 생존율을 분석하고, 성역할가치관을 포함한 다양한 변인들이 경력유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2007년에 이루어진 1차 조사에서 시작하여 2018년에 이루어진 7차 조사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7차에 걸친 종단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총 11년에 걸친 시계열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1. 생존분석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은 특정 집단에 대해 기간별로 어떤 상태를 유지하거나 벗어나게 되는 사건(event)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되는 변수의 범주에 따른 생존율(또는 사망률)을 구하거나 생존 또는 사망 사건에 미치는 변수

들의 영향력 등을 분석해주며,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이라고도 한다. 생존분석의 특징으로는 첫째, 일반적인 로지스틱 분석이 사건의 발생 여부만을 고려하는 것과 비교하여 생존분석은 사건의 발생 여부와 함께 통계기법으로 시간을 고려한 추정 확률을 적용하므로 좀 더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둘째, 중도절단(censored) 자료를 포함하여 분석해주므로 실제 생존율보다 과대평가할 가능성을 줄여주고 시간의 흐름으로 야기되는 분석상의 오차항을 최소화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민현주, 2011).

다음은 생존분석에서 사용하는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의 함수식이다. 첫 번째 식인 $S(t)$ 는 t 시점(실제로 관찰된 생존시간)까지 생존할 확률을 의미하고, 여기서 T 는 생존시간을 의미한다. 두 번째 식인 밀도함수는 $D(t)$ 로 표현하여 주어진 시간에 사건이 일어날 강도를 의미하고, 세 번째 식인 위험함수는 $H(t)$ 로 표현하여 t 시점까지 살아남은 사례들이 t 시점에서부터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사망할 확률을 계산해준다.

$$S(t) = \Pr(T \geq t) \quad \Pr : \text{proportion}(\text{비율})$$

$$D(t) = \lim_{\Delta t \rightarrow 0} \frac{[\Pr(t \leq T \leq t + \Delta t)]}{\Delta t}$$

$$H(t) = \frac{t \text{ 시점에서부터 짧은 기간에 발생한 사건(사망)수}}{t \text{ 시점에 생존한 사례수} \times \text{기간의 단위수}}$$

카플란마이어 분석방법(Kaplan-Meier method)은 생존분석 방법 중에서 정규분포가 아닌 비모수 기술(nonparametric descriptive)의 방식으로 특정 집단에서 각 사례의 사건이 일어난 시점의 생존율을 계산해준다. 이 분석을 위해서는 자료의 요건으로 첫째, 동일 사례에 대해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조사한 패널 자료이어야 하고 둘째,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생존 기간(duration)과 사건(event)의 발생 여부에 해당하는 두 개의 자료가 필요하다.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의 직업력 자료가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경력유지 기간(duration), 경력유지 여부(event)를 판정한 자료를 구축하여 전체적인 생존율을 분석하였다.

코크스회귀분석은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가 여러 개일 때 각 변수가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준다. 코크스회귀분석의 종속변수는 로지스틱 분석과는 달리 두 개로 설정해야 하는데, 하나는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duration)이고, 다른 하나는 사건(event)의 발생 여부가 해당한다. 코크스회귀

분석의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는 공변수(covariate)라고 하는데 일차적으로 공변수의 개수가 0일 때의 베이스라인 위험률(baseline hazard rate)은 일정하다는 가정을 두고, 공변수를 추가로 투입할 때마다 베이스라인 위험률을 곱하여 계산하여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원리이다. 사례 i 의 t 시점에서의 위험확률을 $h_i(t)$ 라고 하고 위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x_1, x_2, \dots, x_3 라고 할 때의 콕스회귀분석의 식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h_i(t) = h_0(t) \times e^{b_1x_1 + b_2x_2 + \dots + b_nx_n}$$

$$h_i(t) = h_0(t) \times e^{b_i x_i} = h_0(t) \times \exp(b_i x_i)$$

$h_i(t)$: 독립변수 x_i 를 가진 사례의 관찰시간 t 에서의 위험률

$h_0(t)$: 독립변수의 수가 0인 경우의 베이스라인 위험률

e : 2.718(자연로그의 밑에 해당)

b_i : 독립변수 x_i 의 회귀계수에 해당

exp : 지수함수, $\exp(x) = e^x$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의 1차~7차까지의 일자리에 대한 응답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1차 조사에 참여한 9,997명 중에서 기혼여성으로 첫 일자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8,170명을 분석대상으로 제한하여 월 단위의 개인별 직업력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경력유지 여부(event)와 경력유지 기간(duration)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경력유지 기간은 1차 조사부터 응답한 이전 일자리의 입직연도, 입직월과 퇴직연도, 퇴직월의 자료를 활용하여 월 단위로 도출하였는데 만약 퇴직사건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일시까지의 기간으로 도출하였다. 경력유지 여부는 첫 직장부터 조사 시점까지 그 직장을 유지한 경우에는 경력유지(1)로 정의하였다. 첫 직장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다른 일자리로 전환하여 경력이 유지된 경우에도 경력유지(1)로 정의하였는데 다음 일자리로 이동할 때 실업 기간이 8주 이상의 경우에는 경력이 이어지는 연속성이 없다고 보아 경력비유지(0)로 판정하였다. 기혼여성의 경우 생애사적 요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노동경제학 관점의 4주 실업의 의미보다 2배 더 긴 기간에 해당하는 8주 실업의 의미를 적용하였다. 결혼, 출산, 육아와 같은 생애사적 가족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기혼여성의

경우 경력유지의 공백을 조금 더 느슨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표 1>은 개인별 직업력에 따라 경력유지 여부를 판정한 다양한 예이다.

<표 1> 사례에 따라 경력유지여부 판정의 예

사례	전체 기간		경력유지여부 판정
	2007년 1차조사	~ 2018년 7차조사	
A	○	—	1
B	○	— ●	0
C	○	— ● 4주 ○	1
D	○	— ● 10주 ○	0
E	○	— ■	c
범례	○ — : 입직시점 — ● : 퇴직시점 — ■ : 중도절단(이후 조사를 중단한 사례)		경력유지 : 1 경력비유지 : 0 중도절단 : 0

본 연구에서는 공변수로 투입하는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로 경력유지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변인들을 선택하였다. 1단계로는 개인특성 변인을 투입하고, 2단계로는 개인특성 변인, 성역할가치관 변인을 투입하고, 3단계에서는 개인특성 변인, 성역할가치관 변인, 연령대별 성역할가치관의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하여 위계적인 세 개의 모형으로 구성하여 경력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2>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명	설명(조작적 정의)	측정
종속변수	경력유지 여부	경력유지(1) 경력비유지(0)	범주형
개인의 특성 변인	연령대별 집단	1=만 19~29세 집단 2=만 30~39세 집단 3=만 40~49세 집단 4=만 50~59세 집단 5=만 60~69세 집단	범주형
	학력 수준	1=중졸 이하, 2=고졸, 3=2~3년 초대졸, 4=4년제대졸, 5=석사 이상	범주형
	1) 종사상 지위	1=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를 받는 일자리, 2=내 사업, 3=가족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돕는 것, 4=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독립적인 개인사업자	범주형
	가구 총소득	상반기 6개월 동안의 가구 총소득 (단위 천만 원, 로그값)	연속형
가치관 변인	성역할가치관	성평등인식이 높은 집단(1)=6개 문항의 점수의 평균값을 표준화한 점수에서 2SD(standard deviation)이상의 점수를 가진 경우	범주형

구분	변수명	설명(조작적 정의)	측정
		성평등인식이 낮은 집단(0)=6개 문항의 점수의 평균값을 표준화한 점수에서 2SD 미만의 점수를 가진 경우	

성역할가치관의 측정 도구는 개인용 설문지 섹션의 ‘가족 내 역할’에 해당하는 총 6개의 항목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질문은 ‘여성은 가정을 돌보고 남성은 직장을 다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부부관계가 평등해지려면 여성도 직장을 다녀야 한다’, ‘취학 전 자녀를 둔 엄마가 일하면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맞벌이 부부는 가사 일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역문항)’, ‘부부의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역문항)’, ‘부부가 같이 사는 집은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역문항)’이다. 이상의 총 6개의 질문에 ‘매우 그렇다’=1, ‘조금 그렇다’=2, ‘별로 그렇지 않다’=3, ‘전혀 그렇지 않다’=4로 측정하였다. 이때 측정한 점수가 높을수록 성 평등인식이 높고, 측정한 점수가 낮을수록 성 평등인식이 낮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는 본 연구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의 의미와 측정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의 1차부터 7차까지의 조사대상 중 기혼여성으로 첫 직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8,170명이다. 분석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 조사기준으로 만 30~39세 집단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3,021명이고, 고졸 집단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3,671명이고, 임금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가 24.9%로 가장 많았다. 성역할가치관을 측정하는 문항에 응답한 점수는 최소 1점부터 최대 4점인데 6개 문항 전체의 평균값은 2.572이고 표준편차는 0.351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는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1. 카플란마이어 생존율 분석

카플란마이어 분석을 실행하여 첫 번째 연구문제에 해당하는 분석대상의 경력유지 생존율을 분석하였다. <표 4>의 결과를 통해 생존 기간의 평균 추정값

1)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일자리용 설문 문항의 기반 변수임(변수명 PP199RA).

은 104개월이고 중위 수(median) 추정값은 59개월임을 확인하였다. 이때 생존 기간의 평균과 중위 수의 차이가 큰 것은 오랜 기간 경력을 유지하는 소수의 집단이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경우처럼 몇몇 집단에서 유독 값이 큰 경우에는 중위 수로 해석하는 것이 유의미하다. 따라서 중위 수 59개월은 생존 기간의 의미가 크고 <표 4>의 결과와 같이 경력유지 생존 기간이 긴 순서대로 3 사분위에 해당하는 75%의 추정값은 35개월로 분석되었다.

기혼여성 중에서 첫 직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분석대상의 의미 있는 경력유지 생존 기간은 5년 미만이고,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하여 3 사분위의 경력유지 생존 기간은 3년 미만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개인이 첫 직장에서 출발하여 3년 또는 5년 정도의 경력유지 기간을 유지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기간에 주로 임금 인상이나 승진의 기회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경력유지 기간의 단절은 승진이나 더 나은 경력으로 발전하는 기회의 상실을 의미한다.

<표 3> 연구대상의 기술통계

변수	범주	N(명) 첫조사기준	조사수 (Spells)	비율 또는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연령대별 집단	만 19~29세	595	728	2.7%	-	1/5
	만 30~39세	3,021	6,586	24.1%		
	만 40~49세	2,378	9,524	34.8%		
	만 50~59세	1,653	6,632	24.2%		
	만 60~64세	523	3,899	14.2%		
학력 수준	중졸 이하	1,846	6,607	24.1%	-	1/5
	고졸	3,671	11,973	43.7%		
	2~3년초대졸	994	3,392	12.4%		
	4년제대졸	1,527	4,956	18.1%		
	석사이상	128	431	1.6%		
종사상 지위	1(임금일자리)	1,264	6,814	24.9%	-	1/4
	2(내사업)	752	2,988	10.9%		
	3(가족일봉사)	766	3,317	12.1%		
	4(도급계약)	98	577	2.1%		
가구 총소득	가구총소득 (원, 상반기합계)	8,170	26,932	7,337,328	4,655,589	0/145,333,300
	가구총소득 (천만원, 로그값)	8,170	26,661	-.217	.305	-3.079/1.162
성역할 가치관	6개 문항 평균값	8,170	27,360	2.572	.35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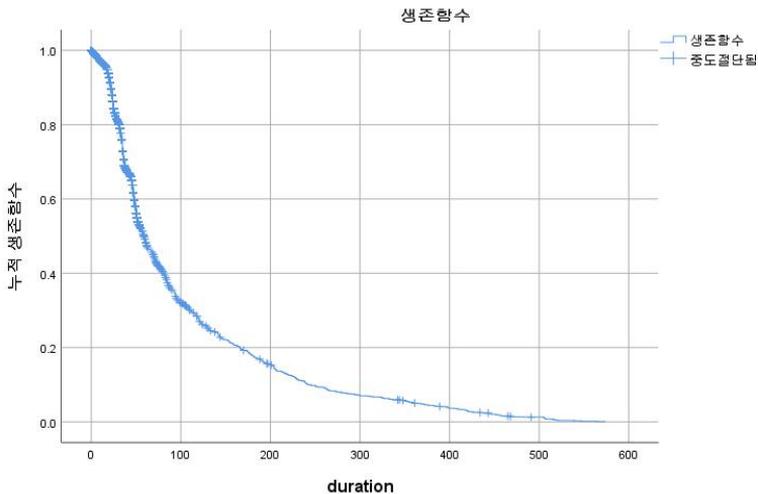
변수	범주	N(명) 첫조사기준	조사수 (Spells)	비율 또는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성 평등인식 낮은 집단	7,995	26,405	96.5%	-	1/2
	성 평등인식 높은 집단	175	964	3.5%		
전체		8,170	27,369	100%	-	-

〈표 4〉 경력유지 생존 기간의 평균, 중위 수, 백분위 수 추정값

평균 ^a		중위 수		백분위 25%		백분위 50%		백분위 75%	
추정값	표준화 오류	추정값	표준화 오류	추정값	표준화 오류	추정값	표준화 오류	추정값	표준화 오류
104.12	2.20	59.00	1.38	131.0	4.95	59.00	1.38	35.00	.28

a. 중도절단된 경우 추정값은 가장 큰 생존기간으로 제한됩니다.

[그림 1]은 카플란마이어 생존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분석대상의 경력유지 생존율은 초기 20개월 정도에서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50개월 정도에서 급한 기울기의 속도가 줄어들어 100개월 정도에서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혼여성 중에서 첫 직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분석대상은 입직 후 2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에 생존율이 가장 떨어지고 이 위험을 넘어서 생존한 경우 8년 이후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존율이 유지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분석대상 전체에 대한 KM분석 생존함수

2. 콕스회귀분석

콕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대상의 경력유지에 미치는 성역할가치관의 영향력과 분석대상의 연령대별 집단과 성역할가치관의 상호작용이 경력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연구문제에 해당한다. 경력유지 여부(event)와 경력유지 기간(duration)이 콕스회귀분석의 종속변수로 사용되었고,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로 투입되는 공변수(covariate)는 위계적으로 투입하는 모형을 사용하였다. 모형 I에서는 개인 특성 변인을 투입하고, 모형 II에서는 개인특성 변인, 성역할가치관 변인을 투입하고, 모형 III에서는 개인특성 변인, 성역할가치관 변인, 연령대별 집단과 성역할가치관의 상호작용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콕스회귀분석의 유의성 검증은 우도비 통계량을 활용하는데 <표 5>는 각 모형의 총괄 유의성 검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2 로그우도(-2log likelihood)값이 모형에 따라 47,766.12, 47,761.59, 47,748.50이고 유의수준이 모두 0.000으로 각 모형 모두 적합성이 인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모형 I, II, III의 총괄 유의성 검증

유의성 검정	-2 로그 우도	전체 통계량(점수)		이전 단계와의 상대적 변화		이전 블록과의 상대적 변화	
		카이 제곱	유의 확률	카이 제곱	유의 확률	카이 제곱	유의 확률
모형 I	47,766.12	5,191.47	.000	3,295.59	.000	3,295.59	.000
모형 II	47,761.59	5,196.20	.000	3,300.11	.000	3,300.11	.000
모형 III	47,748.50	5,232.05	.000	3,313.20	.000	3,313.20	.000

모형 I에서는 개인특성 변인으로 연령대별 집단, 학력 수준, 종사상 지위, 가구 총소득을 공변수로 투입하여 경력유지 여부(event)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6>의 모형 I의 결과와 같이 연령대별 집단, 고졸 집단만 제외하고 학력 수준별 집단, 종사상 지위, 가구 총소득은 분석 집단의 경력유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콕스회귀분석의 B값은 각 독립변수의 회귀계수이고 $\text{Exp}(B)$ 값은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종속변수의 생존율이 어느 정도의 배수로 증가하는지를 설명해주는 계수이다. 여기서 생존을 대신에 생존율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콕스회귀분석의 회귀식이 선형이 아니기 때문이고, $\text{Exp}(B)$ 값을 추정하기 위한 신뢰수준은

95%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연령효과를 살펴보면, 만 19~29세 집단과 비교하여 연령대가 높은 집단일수록 경력을 유지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수준의 효과를 살펴보면, 준거집단인 중졸 이하와 비교하여 고졸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졸 외의 다른 집단은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2~3년제 초대졸, 4년제 대졸,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기혼여성들은 중졸 여성들보다 경력을 유지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2~3년제 초대졸 여성들은 중졸 여성들보다 경력을 유지할 확률이 약 35.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여성 노동시장에서 2~3년제 초대졸 집단은 높은 취업률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한국교육개발원, 2019),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혼여성들의 경력유지에 가장 취약한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 효과를 살펴보면, 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기혼여성들은 비임금 종사자, 가족 종사자, 그리고 특수고용직에 있는 기혼여성들보다 경력을 유지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여성들의 일자리가 소득이 보장된 안정된 일자리일수록 여성의 경력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기혼여성들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배우자 소득 등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기혼여성들의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

모형 II는 모형 I의 개인특성 변인에 추가로 성역할가치관 변인을 투입하여 경력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성역할가치관에 해당하는 6개 항목의 평균점수를 표준화한 다음 2표준편차(SD)이상의 점수를 가진 집단을 성 평등인식이 높은 집단=1으로 분류하였고, 2표준편차(SD)미만의 점수를 가진 집단을 성 평등인식이 낮은 집단=0으로 분류하였다. 성 평등인식이 낮은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성 평등인식이 높은 경우 경력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6>의 모형 II의 결과와 같이 성역할가치관 변인은 회귀계수(B)=0.165이고 생존율비(Exp(B))가 1.179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모형 I, II, III의 콕스회귀분석결과

변인 구분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B	Exp(B)	B	Exp(B)	B	Exp(B)
개인 특성 변인	(준거집단) 만 19~29세 집단	-	-	-	-	-	-
	만 30~39세 집단	-.208*	.812	-.212*	.809	-.114	.892
	만 40~49세 집단	-.418***	.658	-.422***	.655	-.319**	.727
	만 50~59세 집단	-.566***	.568	-.567***	.567	-.474***	.622
	만 60~64세 집단	-.639***	.528	-.641***	.527	-.543***	.581
	(준거집단) 중졸 이하	-	-	-	-	-	-
	고졸	-.109	.896	-.112	.894	-.114	.893
	2~3년제 초대졸	-.440***	.644	-.446***	.640	-.450***	.637
	4년제 대졸	-.181*	.835	-.188**	.829	-.189**	.828
	석사 이상	-.281**	.755	-.293**	.746	-.313**	.731
	(준거집단) 1(임금일자리)	-	-	-	-	-	-
	2(내사업)	-1.856***	.156	-1.857***	.156	-1.858***	.156
	3((가족일봉사)	-2.246***	.106	-2.245***	.106	-2.245***	.106
	4(도급계약)	-1.766***	.171	-1.763***	.171	-1.766***	.171
	가구 총소득 (천만 원, 로그)	-.166*	.847	-.173*	.842	-.159	.853
가치관 변인	(준거집단) 성 평등인식 낮은 집단	-	-	-	-	-	-
	성 평등인식 높은 집단	-	-	.165 *	1.179	1.208 ***	3.347
상호 작용 변인	(연령대별집단)×(성 역할가치관) (준거집단) (만19~29)×성평등인 식낮은집단	-	-	-	-	-	-
	(만30~39)×성평등인 식높은집단	-	-	-	-	-1.086***	.337
	(만40~49)×성평등인 식높은집단	-	-	-	-	-1.168***	.311
	(만50~59)×성평등인 식높은집단	-	-	-	-	-.950**	.387
	(만50~59)×성평등인 식높은집단	-	-	-	-	-.978	.376

* $p < 0.05$, ** $p < 0.01$, *** $p < 0.001$

즉 비전통적인 성역할가치관을 가진 기혼여성은 전통적인 성역할가치관을 가진 기혼여성들보다 경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III는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문제인 분석대상의 연령대별 집단과 성역할가치관의 상호작용이 경력유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모형 II에 연령대별 집단과 성역할가치관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만 19~29세 집단 중에서 성 평등인식이 낮은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세대별 성역할가치관의 경력유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표 6>의 모형 III의 결과를 통해 (연령대별 집단)×(성역할가치관)의 상호작용은 경력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만 60~64세 집단 제외). 만 30~39세 집단 중에서 성 평등인식이 높은 집단일지라도 준거집단과 비교하여 경력유지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B=-1.086$), 생존율이 66.3% 감소($(Exp(B))=0.337$)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형 II에서 성 평등인식이 높을수록 경력유지의 확률이 높다는 가정을 전제로 할 때 성역할가치관이 기혼여성들의 경력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성 평등인식이 낮은 20대 기혼여성이 높은 성 평등인식을 가진 30대 이상의 기혼여성들보다 경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크다는 점을 통해 기혼여성의 경력유지 결정을 이해하는데, 성 평등인식과 더불어 연령대의 조절 효과가 유의미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의 1차 웨이브(2007년)부터 7차 웨이브(2018년)까지의 11년간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고 시간을 고려한 생존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기혼여성의 경력유지에 성역할가치관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기혼여성 중에서 첫 일자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총 8,17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월 단위의 직업력 데이터를 구축하여 경력유지 기간(duration)과 경력유지 여부(event)를 판정한 다음 기혼여성의 경력유지 생존율을 분석하고, 기혼여성의 성역할가치관이 경력유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3개의 모형으로 위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인 기혼여성의 경력유지

기간의 중위값은 약 59개월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생존함수의 그래프로 시각적인 분석결과로는 기혼여성의 경력유지 생존율이 2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에 가장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8년 이후에는 다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의 1차 조사 시점의 일자리가 2차 조사까지 유지되는 기간을 분석한 민현주(2011)의 연구에 의하면 경력유지 생존기간이 약 30개월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가 1차부터 7차까지의 경력유지를 추적하였고 경력유지의 개념에 8주 실업 미만의 의미를 적용한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3년에서 5년 사이의 경력유지는 임금 인상이나 승진과 같은 노동시장 진입 초기 경력을 개발하고 향후 경력 개발의 디딤돌이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활용하여 시간에 따른 승진 위험률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여성은 40개월 정도에 승진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장지연·양수경, 2007).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기혼여성이 3년에서 5년 사이의 경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생애경력개발과 소득 측면에서 큰 손실을 경험하거나 노동시장 복귀가 매우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다양한 정책과 혜택들이 이러한 시기에 집중된다면 높은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역할가치관은 기혼여성의 경력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 평등인식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경력을 더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을 유지하는 여성의 평등인식은 높은 편이라는 분석과(윤미례·김태일, 2016)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을 때에는 전통적 성역할가치관이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분석(정선영, 2021)을 함께 고려할 때, 기혼여성의 가족 가치관 요인은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예측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시장 환경에서 성역할가치관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과 성 평등인식을 함양하는 교육과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연령대별 집단과 성역할가치관의 상호작용 효과는 경력유지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본 연구가 기혼여성의 성 평등인식이 높을수록 경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과 논의를 마쳤다면 우리나라 기혼여성이 경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주된 요인이 전통적 성역할가치관이라는 확대 해석의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령대별 집단과 성역할가치관의 상호작용을 추가하여 분석함으로써 성역할가치관 뿐만 아니라 연령대의 조절 효과와 함께 경력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두 번째 연구문제의 결과인 성 평등인식이 높을수록 경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전제에서 더욱 흥미롭게 논의해 볼 수 있는데, 나이가 많은 연령대의 높은 성 평등인식의 효과는 젊은 연령대의 낮은 성 평등인식만큼도 경력유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성 평등인식이 높더라도 연령대가 30대의 경우에는 성 평등인식이 낮은 20대보다 경력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성 평등인식과 여성의 경력에 대한 욕구를 단선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세대별로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문화적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경력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사업체 규모와 업종과 같은 일자리 특성과 지역적인 특성 및 사회 구조적인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젊은 연령대의 일자리와 중장년 일자리의 특성은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경력이 양적으로 이어지는 데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또한, 중장년 기혼여성의 기억에 의한 첫 직장 직업력과 같은 측정의 한계와 성역할가치관 집단 분포의 불균형을 비롯하여 연령대와 성역할가치관의 상호작용 결과의 해석에 대해 준거집단과 비교한 단정적인 해석보다는 어떤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해석이 적절하다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족 가치관 중에서 성역할가치관을 중심으로 기혼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기혼여성의 연령대별, 교육수준별, 그리고 종사상 지위별 성역할가치관의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여 대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정규교육이나 진로 상담의 현장에서 기혼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의 개입을 통해 가족 가치관 및 성역할가치관에 대한 폭넓은 인식이 확장될 수 있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선애(2021). 여성 근로자의 경력지속 및 이탈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유진(2016). “한국사회 성인의 가족가치관 실태와 영향요인 : 결혼가치관, 성역할태도, 부양관을 중심으로”. 總神大論叢. 제36권. 231-256.
- 곽현주·최은영(2015).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정과 노동시장의 성불평등 구조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88권 제1호. 429-456.
- 김경자(2016). “기혼여성의 연령대별 경제가치관과 가족가치관”. 여성연구논총. 제19권 제0호. 65-87.
- 김난주·김태홍·이승현·이서현·전병유·박미연(2017). “2017년 여성관리자 패널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제2017권 제0호. 1-398.
- 김정원(2021).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영향 요인에 관한 메타 분석”. 인적자원개발연구. 제24권 제1호. 55-84.
- 민현주(2010). “기업특성과 가족친화제도 활용 용이성”. 노동정책연구. 제10권 제3호. 119-145.
- _____(2011). “여성가족패널(KLOWF)을 활용한 여성일자리 연속성분석 - 생존 분석방법 적용”.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대회. 제2011권 제1호. 207-228.
- _____(2012). “자녀출산과 양육시기동안의 여성취업 유형화: 집단중심추세모형(Group-based Trajectory Model)의 적용”. 韓國社會學. 제46권 제2호. 61-87.
- 박효진·은선경(2012). “경력단절 경험을 가진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의 일-가족양립 정책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17권 제1호. 5-29.
- 성정혜·김춘경(2019). “기혼 직장여성의 가족관련 가치관이 일-가정 양립 갈등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 : 다변량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여성연구. 제101권 제2호. 111-133.
- 윤명수·부가칭(2016). “육아휴직제도 사용실태와 결정요인”. 여성연구논총. 제18권. 63-90.
- 윤미례·김태일(2016). “출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상황, 유형과 영향 요인 분석”. 政策分析評價學會報. 제26권 제2호. 153-185.

- 이내영·정한울(2013). “연구논문 : 세대균열의 구성 요소: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 의정연구. 제19권 제3호. 37-83.
- 이승현·박영일(2017). “고학력 30대 한국여성들의 퇴직과 경력단절에 대한 연구”. 유라시아연구. 제14권 제3호. 45-68.
- 이진숙·최원석(2012). “기혼 직장여성의 출산계획 경로에 관한 연구 - 성역할태도, 일가정양립갈등, 결혼행복감과 출산계획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3권 제4호. 5-30.
- 장지연·양수경(2007). “승진대기기간의 성별격차와 결정요인”. 韓國社會學. 제41권 제4호. 104-127.
- 전상진(2004).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연구의 빈곤”. 韓國社會學. 제38권 제5호. 31-52.
- 전혜영(2020). “여성의 가족가치관과 스트레스에 대한 결혼 전·후 변화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제2020권 제9호. 293-312.
- 정미주·임상호(2016).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인식과 활용에 관한 연구”. 산업진흥연구. 제1권 제2호. 41-47.
- 정선영(2021). “가족가치관의 변화의 연령-기간-세대 효과 - 부모의 기대충족과 전통적 성역할관을 중심으로 -”. 社會科學研究. 제37권 제1호. 55-79.
- 정성미·이진숙(2018).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경력유지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제2018권 제9호. 99-112.
- 정지애(2018). “중상상지위 및 경력유지/전환 여성직업인의 일 만족도와 일·가정양립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제2018권 제9호. 313-355.
- 정호변(2013).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동기와 태도”. 사회과교육연구. 제20권 제1호. 121-135.
- 통계청(2020). 2020 사회조사 결과. 서울: 통계청.
- _____(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서울: 통계청.
- 한국교육개발원(2019).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교육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여성가족패널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Arthur, M. B., Hall, D. T., & Lawrence, B. S.(1989). *Handbook of career theory*.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cker, G.(199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 Havard University Press.
- Brinton, M. C.(2001). *Women's working lives in East Asia*.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Eagly, A. H.(1987).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A social-role interpreta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Kaplan, E. A.(1990). Motherhood and representation: From post-war Freudian figurations to post-modernism. *in Psychoanalysis and Cinema*, 128-143.
- Mies, M.(1998). *Patriarchy and Accumulations On A World Scale: Woman in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ur*. Palgrave Macmillan.
- Stickney, L. T. & Konrad, A. M.(2007). Gender-Role Attitudes and Earnings: A Multinational Study of Married Woman and Man. *Sex Roles*, 57, 801-811.

Abstract

Effect of Gender Role Values on Married Woman's Career Retention - Application of survival analysis method

Jiseon Hwang*·Hyunjoo Min**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gender role valu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of career interruption among married woman in Korea, which is consistently high. For this purpose, the survival analysis method considering time was applied using 11 years of data from the 1st to 7th survey of the KLoWF(Korea Woman's and Family Panel Surve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career retention period of married woman was 59 months, and as a visual trend, it was analyzed that the career retention rate declined sharply after two to five years of career retention. Second, the gender role values were analyze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areer retention of married woman. The higher the gender equality awareness,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maintaining a career. Third, it was analyzed that the interaction of married woman by age group and gender role value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career retention. In other words, it was found that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married woman with non-traditional gender role values were significant more likely to maintain their careers than other woman. This study emphasized the need to prepare differential policies according to generational and gender role valu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career retention of married woman.

Keywords : gender role values, career retention, married woman age effect, event history analysis, survival analysis, Korea Longitudinal Survey of Woman and Families

* First Author: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Vocational Studies, Kyonggi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Vocational Studies, Kyonggi University

결혼이주여성의 다중부담에 영향 미치는 사회적 관계: '단단한 껍데기'와 '날개'가 되는 관계를 중심으로

유수정*·이청아**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다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 양상을 그대로 드러내어 보여줌으로써 이들의 다중부담 완화와 웰빙(well-being)을 위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 6명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에 적응해가는 결혼이주여성을 나비가 되어 비상을 기다리는 번데기에 비유하여 이들의 다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결혼이주여성에게 '단단한 껍데기'로 작용하는 사회적 관계는 이들의 어머니, 며느리, 아내, 외국인으로서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한편,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지지가 되는 사회적 관계는 '날개'로 작용하여 이들의 다중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이주 후 새롭게 맺는 사회적 관계가 이들의 다중부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정 내 성평등을 위한 프로그램 방향성 설정, 상호문화존중을 기반으로 한 문화적응 교육 실시, 원주민과 이주여성 간 자조모임 확대를 위한 정책 개정 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결혼이주여성, 사회적 관계, 다중부담, 사례연구

* 제1저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ysj9706@yonsei.ac.kr)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violet9741@snu.ac.kr)

I. 서론

2021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점수(남성 4.7점, 여성 5.3점)와 우울 위험군(남성 17.2%, 여성 18.9%)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1).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해외에서도 남성에 비해 여성의 우울장애 유병률이 2배 이상 높으며, 기혼여성의 우울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Dietch & Bunney, 2002; Noble, 2005). 기혼여성은 가사노동과 양육에 남성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고 다중역할로 인한 역할 갈등을 겪기 때문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은 외국인으로서 낮은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한 채 여성에게 주어지는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까지 해내야 하다 보니 다중부담이 심화된다(유수정 외, 2021). 이에 결혼이주여성은 우울에 더욱 취약한 집단임이 다수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된 바 있다(전경숙, 2017; 박민희·양숙자·지연경, 2015; 최현미·고미경·윤명숙, 2013; 노소영·김은영, 2012;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2021).

한편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사회적응과 다중부담 및 정신건강에 있어 사회적 관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적 관계로 인한 어려움이 커질수록 결혼이주 여성의 부담이 심화되어 우울을 경험하게 될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Chaudhry et al., 2012; O'Mahoney et al., 2012). 다수의 결혼이주여성은 기존의 관계와 단절되고 사회적 관계 범위가 좁으며 이주 이후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다.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더라도 관계 내 여러 갈등과 어려움은 이들의 부담을 심화하며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Sodowsky & Lai, 1997; 이주재·김순규, 2010). 반대로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 긍정적 사회적 관계는 지지가 되어 큰 도움이 된다(Sam & Berry, 2005; Townley & Kloos, 2011). 결혼이주여성의 긍정적 사회적 관계는 새로운 문화에서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고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완충해준다(이주재·김순규, 2010). 특히 사회적 지지는 낮은 환경에서 결혼이주여성 개인의 능력 정도를 향상시키고 이들의 심리적응을 촉진한다는 점(Levitt, 2005)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다중부담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듯 사회적 관계는 한 개인의 다중부담을 심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지지 체계로 작용하여 부담을 완화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다중부담과 사회적 관계를 함께 본 국내 연구 가운데 다중부담에 미치는 사회적 관계의 양면성에 집중하는 연구는 거의 부재하였다. 이에 연구진은 다중부담에 미치는 사회적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이주민이자 여성으로서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결혼이주여성을 번데기에 비유하고, 사회적 관계를 '단단한 껍데기'와 '날개'를 활용해 표현하였다. 번데기는 '단단한 껍데기'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러한 '단단한 껍데기'의 모습은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방해하여 다중부담을 심화하는 사회적 관계의 모습과 유사하다. 반대로 결혼이주여성의 다중부담을 완화하고 지지 역할이 되어주는 사회적 관계는 결혼이주여성에게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번데기에서 나와 비상하는 나비처럼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는 데 기여한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다중부담과 그들의 사회적 관계가 가지는 풍부한 의미와 특성을 가감 없이 담아내기 위해 질적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다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의 총체를 제시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다중부담 완화 및 웰빙(well-being)을 위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총 6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다중부담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 둘째, 결혼이주여성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는 어떤 모습인가?
-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가 이들의 다중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문헌 고찰

1. 결혼이주여성의 다중부담

결혼이주여성은 여성으로서 어머니, 며느리 그리고 아내 등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다중부담을 가지게 되고 이는 이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결혼이주여성이 아내로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가부장적인 권력 배분으로 인한 종속적 관계, 불신과 감시 등이 있다(홍달아가·채옥희, 2006; 최금해, 2007; 김진숙·이혁구·이근무, 2010). 며느리로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언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 문화차이로 인한 가치관 및 생활방식과 관련한 갈등, 시집살이 등이 지적된다(홍달아가·이선우·황은경, 2014). 결혼이주여성은 시부모에게 종속되거나(김기홍, 2011) 인정받지 못할 때 정신

적 어려움이 크며 시대식구의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는 이들의 스트레스 원인으로 작용한다(이현심, 2014). 또한 결혼이주여성은 이주 후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임신과 출산을 하여 어머니로서 겪는 어려움이 크다. 미숙한 한국어능력,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함께 양육에 참여하지 않는 남편은 어머니로서의 역할 부담을 더해준다. 더욱이 결혼이주여성은 일반적인 유자녀 기혼여성에 비해 외국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할 확률이 높아 부담이 가중된다.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30.9%이었다(최윤정 외, 2019). 구체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대화에서 소외되는 관계적 배제, 동네 사람들과의 안전 혹은 친숙함에서 소외되는 지역사회 배제 등을 겪는다(김창기·이진성, 2013). 즉, 결혼이주여성은 여성이자 외국인으로서 다중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언어, 문화, 관습, 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김영란, 2006) 어머니, 아내, 며느리 등 다중 역할 수행에 있어 부담이 심화된다.

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 특징

결혼이주여성은 장기 정착 가능성이 높은 이주 집단으로 이주 후 맺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는 이들의 행복한 삶과 직결된다(민무숙 외, 2013). 하지만 박순희와 조원탁(2013)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여성에 비해 사회적 관계망이 좁고 약하다. 구체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은 가족 의존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가족 외적으로는 동일 출신국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있어 상당히 한정적인 관계 범위를 구축하고 있다(Ryan et al., 2008; Donnelly et al., 2011). 또한 본국 사회적 관계와의 단절과 새롭게 형성한 사회적 관계 내 갈등은 결혼이주여성에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초래하며 결혼이주여성의 부담을 가중한다(Sodowsky & Lai, 1997; 이주재·김순규, 2010). 결혼이주여성은 본국에서 가깝게 지냈던 가족 및 친구들과 떨어져 지내며 심리적 외로움과 낮은 자존감, 죄책감, 슬픔, 불안 등을 경험하며 심할 경우 우울을 겪는다(Potocky & Naseh, 2002). 즉, 문화적으로 낯선 환경 및 관계가 결혼이주여성을 고립시킴으로써 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는 우울과 같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진다. 또한 이주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 내에서 겪는 차별과 배제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을 낮춘다(Simich, Maiter

& Ochocka, 2009).

반면 사회적 관계의 긍정적 효과, 즉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관계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를 통해 제공되는 정신적·물질적 형태이다(김진·이종운·김영숙, 2015).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는 결혼이주여성의 부담을 완화해줌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과 정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김순옥·임현숙·정구철, 2013). 배우자뿐 아니라 가족 및 친구, 주변인의 지지 또한 이들의 삶에 긍정적 의미를 주며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문무현·한진환, 2018; 이해경·전혜인, 2013). 이외에도 결혼이주여성은 가족으로부터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과 돌봄 등의 서비스를 비롯한 물질적 지지를 얻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한다(임안나·박영숙, 2017). 또한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가족 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가족센터¹⁾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정보적 지지가 되어준다. 즉, 긍정적 사회적 관계를 통한 지지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부담을 완화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를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가족, 이웃, 친구), 공식적(가족센터) 연결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본 연구 전 연구진들은 가족센터에서 설문조사를 하며 거주기간이 길더라도 결혼이주여성들이 구조화된 설문지 응답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서술형 문항은 아예 적지 못하거나 현지어로 작성해 그들의 욕구와 목소리가 완벽히 전달되지 않았다. 그래서 본 연구진은 질적연구가 비언어적 표현도 함께 고려해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구 참여자의 고유한 언어로 그들을 깊이 이해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의 여러 방법 중 사례연구를 채택하였다. 사례연구는 연구하고자 하는 특정 사례에 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해 실시하는 연구 방법론이다(Stake, 1995). 사례연구의 초점은 상황 속의 사람에 있으므로 사례를

1) 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맥락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신경림, 2004). 따라서 연구진은 본 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이라는 특정 사례에 집중하여 이들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와 다중부담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사례연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고 두 가지 분석을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다중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들은 총 6명으로 의도적 표집 과정을 통해 선정하였다. 본 연구진은 서울시 OO구 가족센터에 협조를 요청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원활한 인터뷰 진행을 위해 참여자 선정 기준을 한국에 거주한 지 8년 이상²⁾인 결혼이주여성으로 설정하였다. 참여자에 대한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인적사항

참여자	본국	연령	거주기간	남편 연령	자녀 연령
A	중국	35	9년 8개월	39	10/8
B	중국	32	9년 3개월	40	9/4
C	베트남	37	15년	50	14/11/5
D	일본	42	16년 11개월	46	12/9
E	베트남	29	8년	42	7
F	베트남	32	9년 9개월	50	10/8

코로나19로 비대면 인터뷰를 고민했으나 한국어가 서툰 참여자의 특성상 제대로 된 라포 형성 및 비언어적 표현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측면을 고려해 인터뷰 전에 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 및 철회 가능성과 철회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또한 녹취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모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윤리적 측면에 대한 설명은 서면과 구두로 모두 진행하였으며, 6명 참여자의 연구 동의서 서명을 받아 보관하

2) 연구참여자 모집을 의뢰한 OO구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초기정착 지원사업’에서 8년 이상 거주자를 장기 정착 결혼이주여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연구진도 8년 이상 거주자가 한국어 인터뷰가 비교적 수월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참여자로 설정하였다.

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인터뷰는 2021년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 OO구 가족센터 상담실에서 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한 시간에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참여자 1명과 연구자 2명이 참여하는 대면 인터뷰로 진행되었고, 참여자 1인당 약 90분 동안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인터뷰 사전에 구조화된 질문을 설문지로 제작해 참여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조사하였으며 참여자의 사회적 관계 및 다중부담에 관한 반구조화된 질문을 하였다. 이때 질문 내용은 가족센터 사례관리사 분들과 회의를 통해 작성하였다.

수집한 자료들은 에믹코딩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에믹코딩은 연구 현장의 내부적 관점, 참여자들의 시선과 입장을 취하는 태도로 자료를 귀납적으로 코딩 및 분류하는 방법을 의미한다(전가일, 2021). 본 연구진은 원자료를 반복하여 읽어보면서 핵심 어절이나 어구를 표시하고 비슷한 내용끼리 묶어 분류하였다. 주제들을 모아 중범주를 정하였고 그 후 대범주를 만들었다. 이 작업을 한 번에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추가적으로 수정·보완하며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였다.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본 연구진의 해석이 참여자가 말한 의도를 반영했는지 재확인하였다.

IV. 연구결과

1. 사례 내 분석

참여자 A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며 한국에 관심이 생겼고 당시 중국에 유학 온 남편을 만나 연애 후 결혼해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이주 초반에는 언어로 인해 시댁 식구들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고 현재도 시어머니와 단동이 있을 때 불편함을 느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표현했다. 면세 매장에서 일을 할 때도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었는데 남편도 반대해서 참여자 A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참여자 B는 중국에서 남편을 만나 연애 후 결혼했으며 남편의 직업 때문에

결혼 후 한국으로 이주하였다. 참여자 B는 낯선 환경에서 남편의 양육 참여 없이 자녀를 돌보고 있어 부담이 컸고, 코로나19 이후 자녀와 갈등이 잦아져 부담이 가중되는 상태였다. 아내로서의 역할에 있어서도 남편이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고 대화 자체를 피해서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답답하다고 표현했다. 또한 이웃에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였고 그 정도가 심해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있다.

참여자 C는 중매결혼을 통해 남편을 만났으며 결혼 초반에는 시어머니가 결혼사진도 보지 않고 아이를 낳아도 기뻐하지 않을 정도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첫째가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분가를 하고 싶어했으나 시부모님의 반대로 갈등이 있었다. 또한, 남편이 시댁 일을 모두 참여자 C에게 맡겨 참여자 C가 겪는 스트레스와 부담이 크다.

참여자 D는 지인 소개로 남편을 만나 한국에서 연애 끝에 결혼하였다. 참여자 D는 자주는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남편과 갈등이 있으며 특히 '남편이 화를 낼 때 과격해 스트레스가 쌓였다'고 말하였다. 이로 인해 부부 상담을 받고, 2년 넘게 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정신과에서 도움을 받고 있었다. 참여자 D는 모든 식구가 정신과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 잘못된 것이 아님은 알지만 가족 모두에게 문제가 있어 보일 것 같아 좌절감을 느낀다.

참여자 E는 한국에서 먼저 결혼한 큰 언니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다. 분가 전에는 시어머니가 자녀에게 한국 음식만 먹이게 하고 베트남어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여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다. 남편이 일 때문에 바빠 양육부담을 모두 떠안게 되어 참여자 E는 본인만의 온전한 시간이 없다. 코로나19 심화로 자녀가 어린이집을 가지 못해 함께 하는 시간이 늘면서 스트레스는 더욱 커지고 있었다. 또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다.

참여자 F는 베트남에서 살고 싶지 않아 국제결혼을 결심 후 중매결혼을 했다. 참여자 F는 시댁이나 친척 모임에서 본인만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시댁 식구가 본인을 소외시킴에도 남편의 요구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내로서,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시댁을 자주 가고 있었다. 참여자 F는 배우자가 화낼 때 욕하고 물건을 던져 남편을 무서워하고 있으며 아파도 챙겨주는 사람 없이 혼자 병원에 갔을 때 의사소통의 한계를 느끼는 등 참여자 F의 어려움과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2. 사례 간 분석

연구 참여자 6명의 사례를 귀납적으로 분석한 후 코드화 작업을 통해 17개의 주제, 7개의 중범주, 2개의 대범주를 도출하였다. 각각의 범주와 주제는 <표 2>와 같다.

<표 2> 범주와 주제

주제	중범주	대범주
'나'로서 존재하지 못하는 삶: 내 시간이 없는 독박육아	어머니로서의 부담	단단한 껍데기
이주 후 급격한 역할 전환: 출산		
시댁의 한국문화 강요: "베트남 음식 먹지마라"	며느리로서의 부담	
며느리로서 애쓰는 삶: "결혼 사진도 보지 않았어"		
실망스러운 남편의 소통방식: "스트레스가 쌓였던 것 같아요"	아내로서의 부담	
본인의 삶 포기하고 아내로서만 살아가기: "그냥 포기했어요"		
낯선 환경에서의 고립과 외로움: "완전 혼자야"	외국인으로서의 부담	
외국인으로서 겪는 차별과 부정적 시선: "일부러 하는 것 같아서"		
내 편이 되어주는 남편: "내 편에서 시어머니를 설득해줬어요"	정서적 지지	날개
자존감을 높이는 자녀의 인정: "엄마를 막 자랑해요"		
시댁의 존중과 배려: "시댁살이 없어요"		
친구의 위로와 공감: "친구 집이 더 편한 것 같아요"	물질적 지지	
마음이 풍족해지는 경제적 지원: "필요한 물건들 다 준비해줬어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양육: "어머니가 와서 도와주고"		
추억과 관계회복을 선물하는 다문화센터: "관계가 좋아졌어요"	정보적 지지	
적응에 디딤돌이 되는 다문화센터 교육: "한국어 교육이 도움이 됐어요"		
육아선배의 아낌없는 조언: "아이들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1. 단단한 껍데기

1) 어머니로서의 부담

(1) '나'로서 존재하지 못하는 삶: 내 시간이 없는 독박육아

참여자들은 양육을 혼자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즉, 참여자들은 본인의 삶이 아닌 누군가의 어머니로서 역할이 요구되었고 그 안에서 '나'로서는 존재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모든 참여자들이 주양육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남편은 일하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무관심하거나 육아를 보조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의 악화로 거리두기 단계가 심화되면서 자녀가 학교에 가지 못해 자연스럽게 자녀와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참여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양육의 양과 시간은 배가 되었고 자녀와 부딪히는 일은 더 많아졌다. 가중된 양육 부담으로 인해 '나'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온전히 본인만을 위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참여자들의 스트레스와 어려움은 심화되었다.

“요즘에도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코로나 때문에 더 못 나가고 아기도 못 나가고 엄마도 못 나가고. 그래서 더 힘들어... 남편은 아예 나가서 일하고 얼굴도 잘 안 보고” (참여자 B)

“힘든 적도 있죠. 지금도 계속 집에 있으니까. 힘들지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중략) 집에 있다보니까 아이랑 싸워갖고, 싸우는 게 있잖아요. 말하면서 이제 가끔 스트레스 받죠.” (참여자 E)

(2) 이주 후 급격한 역할 전환: 출산

결혼이주여성은 이주 후 빠른 시일 내에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과도기조차 거치지 못한 채 역할 전환이 급히 이루어졌다. 낯선 문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채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바로 주어진 것이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한국에 적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전적으로 담당해야 하다 보니 참여자들이 겪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더욱 심했다. 한편 기존의 사회적 관계와 단절되어 남편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큰 상황에서 배우자가 지지가 되지 못하는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부담은 심화되었다. 낯선 환경에서 배우자의 지지가 없으면 혼자 여러 변화를 감당하고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참여자는 출산 후 친정어머니가 한국에 와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남편의 도움은 거의 없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첫째) 아기 낳고 우울 있었어요. 처음에 한국어 배우지 않았어요. 아기 낳았어. 그때 느꼈어요. 아... 한국말 배워야 돼... 그래서 좀 어려웠어 그때 많이. 혼자 병원도 못 갔어요. 남편도 일해야 돼서. 아기 아프면 저 혼자도 못 가는데 그때가 제일 힘들어... (중략) 그냥 아기 울면 저도 따라서 울고. 그냥 맨날 기분도 안 좋고.” (참여자 B)

“출산하고 그러면 우리 친정 어머니가 와서 도와주는 건데 어머니가 없으면 진짜 힘들어요. ... (중략)아기 낳은 후에 바로 어머니가 와가지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어머니가 베트남에 가요. 그거 때문에 계속 집에 있고 근데 우리 아기 아빠가 놀러가는 별로 그거 신경 안 쓰고 돈만 버는 거 신경써요. 내 집에 놀러 간 적은 별로 없어요.” (참여자 F)

2) 며느리로서의 부담

(1) 시댁의 한국문화 강요: “베트남 음식 먹지 마라”

결혼이주여성은 이주와 동시에 결혼을 하게 되어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때 시댁 식구들과 결혼이주여성은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수십 년간 생활했기 때문에 서로가 낯설게 느껴지고 그 가운데서 이질감과 갈등을 겪는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은 친정 식구와 떨어져 혼자 낯선 땅에 오게 되어 시댁 식구와 갈등을 겪게 될 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시댁 식구와 함께할 때 심리적 불편함과 부담을 호소하였다. 한 참여자의 시댁 식구는 결혼이주여성에게 본국 요리를 못 하게 하거나 본국 언어를 자녀에게 가르치지 못하게 하였다. 시댁이 결혼이주여성 본국 문화에 대한 존중 없이 한국문화를 강요할 때 이들은 며느리로서 시댁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 옆에 있으면 아마도 스트레스 받아요.” (참여자 A)

“먹는 거는 그냥 자주 신경쓰셔가지고. (아이들) 음식은 한국 음식 먹여줘라, 베트남 음식 먹지 마라’ 그런 것도 있고. 옛날에는 베트남 얘기 가르치잖아요. ‘네가 이거 알려주면 안 된다’ 시어머니 그랬는데”. (참여자 E)

(2) 며느리로서 애쓰는 삶: “결혼 사진도 보지 않았어”

참여자들은 시댁 식구로부터 며느리로서의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행사나 모임에서 소외당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참여자 C는 시어머니와 시할머니가 중매 결혼으로 온 외국인 며느리는 아이만 낳고 본국으로 도망갈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결혼을 완강히 반대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반대로 시어머니와 시할머

니는 결혼 이후 아이를 낳을 때까지도 한동안 참여자 C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참여자 C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의 간병을 돕는 등 며느리로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시댁 식구들끼리의 대화에서 소외당하거나 무시 받는 참여자도 있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 시댁 식구들은 한국 문화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참여자 F를 챙기기보다는 소외시키며 본인들끼리만 아는 대화를 나눴고 그 속에서 참여자 F는 심리적 거리감을 느껴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럼에도 참여자 F는 남편의 요구로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가족 모임에 남편과 동행해야 했고 이는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같이 참여자들을 며느리로서 인정해주지 않는 시댁은 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관계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결혼할 때는 (시)엄마하고 우리 (시)할머니하고 반대 많이 했대요. 저 결혼 사진도 안 봤잖아요. 저 올 때까지 결혼 사진도 보지도 않았어 시어머니가… (중략) 애기 낳고도 반가워하지도 않았어.” (참여자 C)

“(시골에 가는 거는) 남편이 그럼 가는 거죠. (제가) 원하는 건 아니죠. 남편이”가 “그러면 가죠.”(참여자 F)

3) 아내로서의 부담

(1) 실망스러운 남편의 소통방식: “스트레스가 쌓였던 것 같아요”

연애 및 결혼 전후로 달라진 남편의 실망스러운 소통방식은 참여자들에게 아내로서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남편의 의사소통 방식은 부부 간 문제해결 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이지은·윤호균, 2007)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내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한 참여자는 연애 때는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던 남편의 과묵함이 결혼 후에는 답답함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토론했다. 남편의 회피적 소통방식은 참여자의 일방적인 소통과 부부 간 대화의 단절을 가져왔다. 남편의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태도와 언행,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성격으로 무서움을 느끼거나 감당하기 힘들다고 표현한 참여자들도 있었다. 또한 남편의 다혈질적인 성격은 참여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지속적인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참여자 F는 중매결혼으로 남편과 결혼 전 교류가 부족한 채 결혼생활을 하게 되어 어려움이 있었다. 결혼 후 알게 된 실망스러운 남편의 소통방식으로 상처를 받았지만,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남자 성격 너무 좋았는데. 그때 좋은 점 지금 보면 다 안 좋은 거야. 그땐 말도 많
이 없이 조용한 남자 너무 좋았고...지금 보면 너무 짜증나.” (참여자 B)

“그렇게 심하게 화를 낼 일인가. 제가 감당이 가능한 수준보다 좀 더 세계 화를 내가지
고. 그래서 좀 제가 스트레스가 쌓였던 것 같아요.” (참여자 C)

“(남편한테) 자꾸 달라고 하면(요구하면) 안 되고. 그냥 포기해...(중략) 그냥 지나가.
따지는 거하고 싸우는 거 그런 건 안 해요. 참아야죠.”(참여자 F)

(2) 본인의 삶을 포기하고 아내로서만 살아가기: “그냥 포기했어요”

참여자들은 한국에 이주함으로써 본인의 삶을 포기하고 아내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끼기도 하였다. 참여자 E의 경우, 결혼 때문에 한국에서 살게 된 것에는 후회는 없으나 본국에서의 유아 교사를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여 한국에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만 살아가는, 직장이 없는 본인의 모습이 ‘허무하다’고 하였다. 참여자 B 또한 결혼 당시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던 본인이 남편을 따라 한국에 오는 것이 유일한 길이였기에 한국으로 이주했지만 본인의 삶을 ‘포기했다’고 말하고 있었으며 참여자 B와 참여자 E 모두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본인만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내비쳤다.

“저는 원래 한국에 온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는 시험 봐가지고 이제 유아 교사 합격했는데 그걸 포기해서 여기 온 거예요. 결혼하니까. 허무했어요. 살짝 (시험) 다 봤는데.” (참여자 E)

“그 당시에는 직장 안 다니고 있어서 남편 따라 한국에 살게 됐어요. 여기 오면 언어 때문에도 힘들고 쉽지 않아서. 내가 그냥 포기했어요. 지금은 이제 애들이 어리긴 한데 조금 더 크면 직장 다니고 싶어요.” (참여자 B)

4) 외국인으로서의 부담

(1) 낯선 환경에서의 고립과 외로움: “완전 혼자야”

본국과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결혼이주여성은 타지 생활로 인하여 고립을 겪는다(주소희·이경은, 2014). 참여자들은 낯선 환경 내 본인을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 외국인으로서의 ‘외톨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실제로 많은 참여자들이 인터뷰 과정에서 ‘외롭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타지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고 이들의 외로움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된다. 한 참여자는 이주 후에도 몇 년 동안 제대로 바깥세상과 교류할 일이 없어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시댁

식구, 남편,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주더라도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로 고립과 심적인 거리감을 느끼는 참여자들도 있었으며, 본국에서처럼 편하게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상대가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친구 문제 어렵고... (중략) 보통 시부모 있으면 또 조금 도와주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저 거의 완전 혼자야.” (참여자 B)

“외국 사람인데 병원에 있을 때 혼자 지내니까 그래요... (중략) 우리 베트남에 그런 건(머느리가 혼자 병원에선 지내게 하는건) 없어요. (베트남에서는 보통) 시어머니하고 친정 엄마도 오고. 그다음에 시집 사람들이 또 와서 보고 친척도 와서 보고. 근데 여기는 그런 걸 좀... 외로워.” (참여자 F)

(2) 외국인으로서 겪는 차별과 부정적 시선: “일부러 하는 것 같아서”

참여자들은 외국인으로서 낮은 환경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며 여러 형태의 차별적 언행을 경험했고 그 경험은 눈에 보이는 확연한 차별부터 간접적 차별까지 그 범위와 유형이 다양했다. 한 참여자는 같은 직장 내 휴게실이더라도 한국인과 외국인 직원들이 사용하는 휴게 환경을 구분하여 확연한 차별을 느낀 적이 있었다고 토로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차별 및 무시를 받은 경험을 공유해준 참여자도 있었다. 참여자 B는 본인이 버린 쓰레기가 아님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웃이 본인을 의심해 싸운 경험이 빈번했다. 이외에도 다른 입주자의 실수로 주차장 차단기에 참여자 B가 얼굴을 맞았지만 본인의 말투를 들은 후 외국인임을 알고는 상대방이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며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듯 참여자들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는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어렵게 하고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부담을 가중시켰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은 차별을 겪어도 한국의 법체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외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차량 리모컨 눌러서 (제) 얼굴 이렇게 치고 지나갔어요. 사과도 안 하고 저한테 소리 지르고... (중략) 그러다 그냥 말투 들으면 바로 알잖아. 외국 사람이라서 그렇게 일부러 하는 것 같아서.” (참여자 B)

2. '날개'가 되어주는 사회적 관계

1) 정서적 지지

(1) 내 편이 되어주는 남편: “내 편에서 시어머니를 설득해줬어요”

남편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주 후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존재이기에 결혼이주여성은 가족 중 남편에게 가장 많이 의존하며(이은주·전미경, 2013) 남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받는 영향은 크다. 이들은 남편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느낄 때 부담이 완화되고 안정감을 느끼며 지속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신혜정 외, 2015). 인터뷰를 통해서도 문화 차이로 시대 식구와 참여자 간 갈등이 있을 때 남편이 참여자 편이 되어 중재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참여자에게 지지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 E는 자녀 양육 방법에 있어 시어머니와 의견이 달라 며느리로서의 역할에 어려움을 겪고 부담을 느꼈는데, 그때 남편이 참여자 E 입장에서 시어머니를 설득해주었다. 참여자 E는 평소에도 남편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 참여자 E가 다중부담으로 역할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때 남편이 참여자 E의 입장을 잘 이해해주었고 이는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낯선 환경에서 내 편이 되어주는 남편의 역할과 의미는 결혼이주여성에게 큰 정서적 지지가 되며 이들이 가진 다중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남편도 다문화 다니니까 상담도 많이 받고 어머니랑 같이 다시 얘기해 보니까. 이제 괜찮아요. ... (중략) 이제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제 남편도 ‘이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야. 엄마도 엄마가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이렇게 자꾸 얘기해요. 많이. 자꾸 설득을 했어요.” (참여자 E)

(2) 자존감을 높이는 자녀의 인정: “엄마를 막 사랑해요”

참여자들을 인정해주는 자녀의 존재는 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요인이 되며,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겠다는 다짐의 원동력이 되는 등 한국 생활 및 적응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자녀의 인정은 어머니, 며느리, 아내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하며 겪는 부담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국사회에 더욱 잘 적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어넣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참여자 A의 자녀는 어머니가 외국인임을 친구들한테 숨김없이 이야기했으며, 자녀의 인정은 참여자 A에게 큰 지지로 다가왔다. 참여자 E는 본인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녀를 보며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해

야겠다는 원동력을 얻었으며, 한국 사회에 앞으로도 잘 적응하고 싶다는 다짐을 하였다.

“□□이는 친구한테도 자랑하는데 ‘우리 엄마가 외국인이야. 그냥 중국어 국제 강사인데’ 이렇게 (말하는거) 들었어요. (엄마가 외국인인 거 속인 적) 지금까지 없어요.”
(참여자 A)

“○○이는 항상 어디 가서든 엄마 막 자랑해요...(중략) 그래서 제가 맨날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그래야 이제 아끼랑 같이 또 대화하고 다른 엄마들도 만나서 대화할 수 있게 그 부분을 노력하고 있어요.” (참여자 E)

(3) 시댁의 존중과 배려: “시댁살이 없어요”

이주 후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관계 중 하나인 시댁 식구의 배려와 존중은 참여자들에게 큰 지지가 되었으며 며느리로서 겪는 부담을 완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참여자 D는 시집살이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시댁 식구들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표현했으며 본인을 배려해주는 시댁 식구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다. 시댁 식구들은 외국인 며느리가 어려워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배려함으로써 참여자 D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참여자 C의 경우 이주 초반에 한국어가 서툰 본인을 배려하여 시아버지가 베트남 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소통하려고 노력해주셨다고 서술하였다. 시댁 식구가 참여자 C에게 한국 문화 적응을 강요하지 않고 며느리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는 참여자 C에게 큰 지지가 되었다. 시댁의 존중과 배려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 후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여러 역할로 인한 다중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용기를 가진다.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주 후 시댁과 가까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시댁의 정서적 지지는 이들의 부담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안정적인 정착생활에 ‘날개’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댁살이 없어요... (중략) 시댁에 윗분들이나 다른 식구들 때문에 상처받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정말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제가 속상할 때도 이게 저희 형님, 아주버님의 부인 되시죠. 그분 이랑도 이게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언도 해주시고, 좀 낯두리 하기도 하고.”
(참여자 D)

“아버님께서 베트남어 배우는 거예요...(중략) 아버님 어디 가면 (베트남어) 책 이렇게 딱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고 그냥 딱 넣고. 저랑 얘기 할 때는 (책을) 빼가지고 애

기하고.” (참여자 C)

(4) 친구의 위로와 공감: “친구 집이 더 편한 거 같아요”

참여자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동일 국적 친구와의 교류과정에서 지지를 얻고 있었으며 이는 참여자들이 가진 부담과 이로 인한 정신건강의 어려움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동일 국적에서 오는 소속감과 모국어 사용의 이점은 참여자들이 다중부담으로 겪은 어려움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참여자들은 모국 친구들을 만나 한국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털어놓고 서로 위로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였다. 참여자들이 관계를 맺는 모국 친구들은 결혼이주여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동질감이 형성하는 위로와 공감은 참여자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한 참여자는 친정에 가는 것보다 한국에서 사귀 친구네 집에 가는 것이 더 편하다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한국 내에서 가까이 관계하는 친구의 위로와 공감을 통해 얻는 정서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큰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동네 친구들이랑 만나서 살짝 ‘우리 남편 그릇이 너무 작아’ 또 서로 그런 이야기들 이 조금씩 있으니까. ‘일본에 가버리고 싶어’ 그러다가 서로 막 위로해주고 그럴 때도 있었고.” (참여자 D)

“(친구가) 다 한 동네에 살아서 편해요. 정말 친정집에 가는 것보다 친구 집에 가는 게 더 편한 거 같아요.” (참여자 B)

2) 물질적 지지

(1) 마음이 풍족해지는 경제적 지원: “필요한 물건들 다 준비해줬어요”

참여자들은 시댁 혹은 친정 식구의 도움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참여자 C의 경우, 시누이가 여러 방면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다. 참여자 C의 핸드폰, 자녀 물건 등을 대신 구매해주어 참여자 C의 생활 및 참여자 C 가정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다. 참여자 E는 한국으로 먼저 결혼 이주한 친언니가 분가 당시 집을 구하는데 부족한 자금 및 새 보금자리에 필요한 살림살이를 장만할 때 도움을 준 덕분에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경제적 문제는 결혼이주여성의 33.3%가 한국 생활의 주된 어려움과 부담으로 언급할 정도로(정해숙 외, 2016) 이들의 생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에게는 가장 주요하면서도 긴급한 문제다. 그러한 가운데 가족의 물질적

지원은 이들의 생계를 지원해줌으로써 하나의 지지가 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은 어머니, 아내로서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은 참여자들의 부담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기씨가 고마운 게 친정 엄마한테 연락하라고 핸드폰을 사줬고 보험도 들어주고. 아기 낳고서(필요한 물건들) 다 준비해줬어요.” (참여자 C)

“분가할 때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또 돈이 부족해서 언니한테 얘기했어요… (중략) 살림 다 사야하니까(돈이) 좀 부족하고. 근데 언니한테 얘기해가지고 언니가 ‘너 걱정하지 마. 그거는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돈에 대해서 도와줬어요.” (참여자 E)

(2)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양육: “어머니가 와서 도와주고”

한국에 홀로 이주한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잠시 일이 있거나 혹은 아플 때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치가 않아 양육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나마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친정 식구로부터 양육 도움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혼자 아이를 양육했다면 힘들었을 것’이라는 말을 통해 친정 식구의 양육 도움으로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 F의 경우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낳은 후 바로 도와주어 부담을 많이 덜었다고 이야기하였고, 참여자 B는 두 아이를 낳았을 때 모두 친언니가 도와주었는데 특히 상대적으로 더 힘들었던 둘째 때 더욱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는 결혼이주성이 어머니로서 가지는 부담을 감소시키며, 양육과업에 있어 심리사회적 적응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기 낳은 후에 바로 어머니가 와가지고 도와주고 그다음에 며칠 후에 어머니가 베트남에 가요… (중략) 친정어머니가 없었으면 진짜 힘들어요. 혼자 아기 보면 힘들어요.” (참여자 F)

“(친언니가) 둘째 낳아서 거의 자주 와요. 거의 (중국) 들어가서 한, 두 달 있으면 다시 (한국으로) 오고 했어요… (중략) 처음에 둘째가 맨날 잠 안 자고, 낮이든 밤이든 계속 울고 안아줘야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언니가 왔어요.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참여자 B)

(3) 추억과 관계 회복을 선물하는 가족센터: “관계가 좋아졌어요”

가족센터는 참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결혼이주여성 가정에 필요했던 점을 채워준다. 특히 가족센터의 여러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의 육아 및 가사부담을 덜어주고 가족 간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지체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참여자 E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와 아빠 관계가 좋아졌다고 말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가족센터의 가족 나들이 프로그램은 평소 여행을 자주 가지 못했던 가족들에게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 참여자는 가족센터의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음을 느낀다고 표현하였다. 즉, 가족센터 프로그램은 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으며, 단순한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결혼이주여성의 다중부담을 완화해주고 있었다.

“집에 가서 아빠랑 같이 아기가 (장난감) 만들고. 저는 또 (그런 모습을) 사진 찍고. 관계가 약간 또 좋아졌어요. 아기랑 (아빠가) 같이 놀고 하면서.”(참여자 E)

“우리는 진짜 여기서(가족센터에서) 식구가 됐어요. 1년에 가족 여행이 두 번이고, 저는 여행 잘 안 다녔는데 여기서 많이 다녔어요.”(참여자 C)

3) 정보적 지지

(1) 적응에 디딤돌이 되는 가족센터 교육: “한국어 교육이 도움이 됐어요”

참여자 6명 모두 가족센터의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가족센터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남편과의 건강한 소통 방법, 자녀 양육법을 배웠다. 가족센터의 서비스가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강복정, 2012)처럼 실제로 참여자들 또한 교육 이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자녀의 언어 학습에 관심을 가지는 한편, 자녀가 제대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지 걱정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걱정을 가족센터의 언어 발달 수업, 이중언어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면서 해소했다. 예를 들어 가족센터의 토픽 교육, 이중언어프로그램은 참여자와 자녀들의 언어 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정보적 지지의 모습을 띤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언어 문제로 인한 관계 및 육아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족 내 소통의 부재를 해결하기도 했다. 가족센터의 정보적 지지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정보와 근

본적 도움을 줌으로써 이들이 가지는 부담을 덜어주었다.

“저는 도움이 되는 거는 한국말. 한국말도 배우면서 시험도 보고. 내 능력이 어느 정도로 돼서 나중에 일할 때 ‘이 사람이 한국말 어느 정도 아냐’ 그게 또 증명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E)

“도움이 되는 거는 많아요. (자녀한테) 한국어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우리 아기한테도 4살부터 7살까지. 교육하는 거죠. 그런 거는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참여자 F)

“아기 핸드폰 이용하는 공부(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 들었어요.” (참여자 B)

(2) 육아 선배의 아낌없는 조언: “아이들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참여자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 후 1-2년 이내에 아이를 갖기 때문에 육아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마땅치 않으며 그 기간 또한 상대적으로 적어 양육 부담이 가중된다. 특히,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자녀 양육 어려움의 유형이 달라지면서 그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은 양육에 한계를 느끼기도 한다. 참여자들 대부분은 적극적으로 주변 친구 혹은 시댁 식구들에게 자녀 양육 시 필요한 정보를 묻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학령기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참여자 E는 주변 육아 선배들로부터 자녀의 숙제 및 교과 지도에 대한 조언을 얻으며 곧 입학할 자녀 양육에 대한 불안함과 걱정을 덜었다. 참여자 D는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때 극복 방법에 대한 경험 및 조언을 시댁식구로부터 종종 구하고 있었다. 낯선 언어 및 문화로 결혼이주여성은 자녀 양육에 더욱 부담을 느끼고 있기에 사회적 관계로부터 얻는 자녀 교육 및 양육에 대한 정보는 정보적 지지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기 키우는 거(많이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딸이 둘이에요. 다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애기 내년엔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저는 그런 경험 없잖아요. 그분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고.” (참여자 E)

“결혼 선배로서 시부모님 비롯해서 시누이도 그런 상담 이런 아이들의 마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 받아보기도 하고 해서. 그리고 또 아주버님 덕의 형님은 지금 상담사 공부를 또 대학원에서 하고 계시고 해서 이게 경험이나 배우신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이들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참여자 D)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질적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다중부담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가 이들의 다중부담을 심화하는 '단단한 껍데기'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완화해주는 '날개'가 되기도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는 IRB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연구를 진행하여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가 제시한 연구참여자 동의취득 과정과 연구참여자 보호를 위한 제반 절차를 준수하여 연구의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한국어로 면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화적, 언어적 측면에서 이들의 언어를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출신국가 언어를 사용하여 인터뷰를 진행하면 더욱 깊고 풍성한 내용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혼이주여성의 다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를 질적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 및 아내로서의 역할 부담 완화를 위해 가정 내 성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 인터뷰를 통해 양육분담 및 가사역할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결혼이주여성에게 스트레스를 주며 '단단한 껍데기'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겪고 있는 다중부담을 덜어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가정 내 가사 분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현재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가정 내 성평등을 위한 내용보다는 '안정적 가족생활의 유지'만을 강조하고 있어 해당 계획을 위한 프로그램은 형식적 차원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김이선, 2019b). 정책기본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내 성평등에 대한 내용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피해 문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성평등한 다문화 가족관계를 위해 가족센터는 현재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방향과 그 배경에 가정 내 성 평등성을 지향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 교재는 여성의 역할을 가사와 돌봄에만 한정한다(김이선, 2019a). 따라서 기존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성평등적인 의식을 기초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가정 내 가사 분담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센터의 성평등 프로그램이 질적 수준을 확보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문화 차이에서 오는 관계 내 갈등과 이로 인한 며느리로서의 역할 부

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문화적응 교육이 동화주의 중심이 아닌 상호존중 기반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문화적응 교육은 이주민인 결혼이주여성과 원주민인 시댁 식구가 상호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외국인 며느리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시댁식구의 충분하지 못한 이해는 결혼이주여성의 부담을 가중하는 ‘단단한 껍데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한 교육은 많으나, 시댁 식구가 결혼이주여성이 살아왔던 국가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동화주의 시각을 바탕으로 이주민을 가르침, 포용,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구정화·박윤경·설규주, 2010).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에게만 무조건적으로 한국 문화 수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문화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문화체험 교육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되면 가족 구성원 간 소통 과정 중 갈등이 줄어들고 가족 구성원이 ‘날개’로 작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다중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이 외국인으로서 갖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족구성원 및 모국 출신 사람들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기존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Berry와 Sam(1997)은 출신국과 이민국 주민 모두와 균형 있게 교류 잘 지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라고 분류하고 있다. 원주민과의 관계는 결혼이주여성이 장기적으로 낮은 환경인 한국에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유용한 자원이 된다(민무숙 외, 2013). 특히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통한 정서적, 정보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다중부담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족센터 내 원주민과 이주민의 관계를 고려한 프로그램은 거의 부재하여 두 집단 간 구분과 위계를 재생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김이선 외, 2021).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도 이주여성의 사회 참여를 중요한 의제로 다룰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계획 및 조치가 조항으로 신설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도 이주민과 원주민 간 사업 및 활동을 적극 지원한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등의 해외 사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기존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는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 시 결혼이민자 활동가 비율이 높으면 가점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뿐더러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이마저 삭제되었다(김이선 외, 2021). 따라서

결혼이주여성 and 원주민 간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법과 기본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센터를 비롯한 이주여성 지원 센터도 기존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점검하여 이주여성 and 원주민 간 교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함으로써 링커(linker)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복정(2012).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 및 서비스의 현황분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제5권 제1호. 143-184.
- 구정화·박윤경·설규주(2010).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 김기홍(2011).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경험과 기대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Nongch'on Sahoe*. 제21권 제2호. 49-102.
- 김순옥·임현숙·정구철(2013).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지지, 가족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1호. 221-235.
- 김영란(2006).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관련 정책”. *아시아여성연구*. 제45권 제1호. 143-189.
- 김이선(2019a). “다문화가족 내 성 불평등 실태와 정책 방향”. *KWDI 이슈페이퍼*. 1-8.
- _____(2019b). “다문화가족의 젠더 협상과 한국사회 전반의 성 평등 실천”. *KWDI 이슈페이퍼*. 1-6.
- 김이선·최윤정·장희영·김도혜·박신규(2021). *이주여성의 사회적 포용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 사회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진·이종운·김영숙(2015).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41권 제2호. 79-103.
- 김진숙·이혁구·이근무(2010). “다문화가정 부부의 결혼적응연구-근거이론 방법론 접근”. *한국가족복지학*. 제30권. 135-166.
- 김창기·이진성(2013).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제13권 제2호. 296-307.
- 노소영·김은영(2012). “농촌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성인간호학회지*. 제24권 제4호. 370-370.
- 문무현·한진환(2018).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제16권 제7호. 165-175.
- 민무숙·김이선·주유선·이정연(201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양상을 통해 본 사회통합의 과제”. *여성연구*. 제85권 제2호. 5-43.
- 박민희·양숙자·지연경(2015).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 *한국보건의간호학회지*. 제29권 제2호. 298-311.

- 박순희·조원탁(201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망 비교: 이주여성과 일반여성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18권 제2호. 41-57.
- 보건복지부(2021). 2021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2022.04.02. 인출.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2021). 국민건강통계-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 1차년도 (2019). <http://www.cdc.go.kr>에서 2022.04.03. 인출.
- 신경립(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신혜정·노충래·허성희·김정화(2015).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67권 제3호. 5-29.
- 유수정·송현주·박다운·황연재(202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복지와 문화다양성 연구*. 제3권 제2호. 69-92.
- 이은주·전미경(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변인 메타분석”.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제31권 제5호. 125-141.
- 이주재·김순규(2010).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관계망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5권 제4호. 73-91.
- 이지은·윤호균(2007). “기혼여성의 마음챙김과 부부의사소통패턴, 결혼만족도의 관련성”.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2권 제3호. 331-345.
- 이현심(2014).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주자의 한국생활 어려움에 관한 질적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제21권 1호. 143-176.
- 이혜경·전혜인(2013). “결혼이주여성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18권 제4호. 413-432.
- 임안나·박영숙(2017).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3호. 675-682.
- 전가일(2021). *질적연구, 계획에서 글쓰기까지*. 서울:학이시습.
- 전경숙(2017).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관련요인”. *정신간호학회지*. 제26권 제4호. 402-411.
- 정해숙·김이선·이택면·마경희·최윤정·박건표·동제연·황정미·이은아 (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여성가족부
- 주소희·이경은(2014).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서적고립 및 소외와의 관련성 연구”.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7권 제1호. 45-64.
- 최금해(2007).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결혼생활 적응유형에 관한 질적연구”. *여성 연구*. 제72권 제1호. 143-188.

- 최윤정·김이선·선보영·동제연·정해숙·양계민·이은아·황정미(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최현미·고미경·윤명숙(2013).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영향요인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9권 제3호. 119-142.
- 홍달아기·이선우·황은경(2014). “결혼이주여성이 지각하는 고부갈등과 대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3권 제5호. 789-805.
- 홍달아기·채옥희(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5권 5호. 729-761.
- Berry, J. W., & Sam, D. L.(1997).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2), 291-326.
- Chaudhry, N., Husain, N., Tomenson, B., & Creed, F.(2012). A prospective study of social difficulties, acculturation and persistent depression in Pakistani women living in the UK. *Psychological Medicine*, 42(6), 1217-1226.
- Dietch, K. V., & Bunney, B.(2002). The “Silent” disease: Diagnosing & treating depression in women. *AWHONN Lifeline*, 6(2), 140-145.
- Donnelly, T.T., Hwang, J.J., Este, D., Ewashen, C., Adair, C., & Clinton, M.(2011). If I was going to kill myself, I wouldn't be calling you. I am asking for help: challenges influencing immigrant and refugee women's mental health.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32(5), 279-290.
- Levitt, M. J.(2005). Social relation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The convoy model perspective. *Human development*. 48(1-2). 28-47.
- Noble, R. E.(2005). Depression in women. *Metabolism*, 54(5), 49-52.
- O'Mahony, J.M., Donnelly, T.T., Este, D. & Bouchal, S.R.(2012). Using critical ethnography to explore issues among immigrant and refugee women seeking help for postpartum depression.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33, 735-742.
- Potocky, M. & Naseh, M.(2002). *Best practices for social work with refugees and immigrants*. Columbia University Press.
- Ryan, L., Sales, R., Tilki, M., & Siara, B.(2008). Social networks, social support and social capital: The experiences of recent Polish migrants in London. *Sociology*, 42(4), 672-690.
- Sam, D., & Berry, J.(2005). *The Cambridge handbook of acculturation*

psycholog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Simich, L., Maiter, S. & Ochocka, J.(2009). From social liminality to cultural negotiation: Transformative processes in immigrant mental wellbeing. *Anthropology & Medicine*, 16, 253-266.

Sodowsky, G. R. & Lai, E. W.(1997). Asian immigrant variables and structural models of cross-cultural distress. In Booth, A., Crouter, A., & Landale, N.(Ed.), *Immigration and the Family: Research and Policy on U.S. Immigrants* (pp.211-234). Mahwah,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Stake, R. E.(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 Sage Publications.

Townley, G. & Kloos, B.(2011). Examining th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for individual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residing in supported housing environment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7, 436-446.

Abstract

The impact of the social relationships on married immigrant women's multiple burdens: Focusing on the relationships that act as 'hard shells' and 'wings'

Sujeong Yu*·Cheong-ah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social welfare implications for well-being and multiple burdens relief by revealing the social relationship patterns that affect the multiple burdens of married immigrant women. To this end, a case study was conducted on six married immigrant women. We analyzed the social relationships that affect their multiple burdens by comparing married immigrant women who are adapting to Korea to pupae waiting for becoming butterflie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ocial relationships that act as "hard shells" for married immigrant women intensified their burden as mothers, daughters-in-law, wives, and foreigners.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social relationships, which are emotional, material, and information support, act as 'wings' and play roles in alleviating their multiple burdens. It shows that the newly formed social relationships of married immigrant women after immigration have important effects on their multiple burdens. Therefore, it suggested setting program's direction for gender-equality in the home, conducting cultural adaptation education based on mutual respect, and revising policies to expand self-help groups between indigenous and married immigrant women.

Keywords : married immigrant women, social relationships, multiple burdens, case study

* First Author: Sujeong Yu, Ph.D. Student,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Choeng-ah Lee, Researcher, Institute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고등학생의 수학에 대한 태도와 성취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성차*

정병삼**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수학에 대한 태도와 수학 성취에 주는 영향을 주는 변수에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고 여학생의 수학에 대한 태도를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20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참여한 고등학교 212개교의 남녀 학생 104,720명의 수학성적을 분석했다. 먼저 수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의 성차를 규명하기 위해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났고, 여학생은 부모와의 관계가 수학에 대한 태도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남학생은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수학에 대한 태도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수학에 대한 태도가 수학성적에 끼치는 매개효과에 유의미한 성차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성차가 있었다. 여학생집단에서는 수학자신감, 수학가치인식, 수학흥미 등이 모두 성적에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였으나 남학생 집단에서는 수학흥미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수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부모와 교사가 수학의 가치와 유용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교육해야 함을 보여준다.

주제어 : 코로나19, 팬데믹, 고등학생, 수학 성취, 성차, 중다집단 구조방정식

* 본 연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학술지원사업으로 제공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자료를 사용하였음.

** 육군3사관학교 교수(byong3@hanmail.net)

I. 서론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 19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강타했고, 2022년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는 거의 모든 국가가 소위 섯다운(shutdown)이라고 하는 봉쇄를 통해 코로나 확산을 통제하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대면수업이 중단되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격수업이 시작되어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혼란을 낳았다(김효원·최현준·김누리, 2021; Mitchell et al., 2021).

팬데믹 상황이 지속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약 2년간 학교교육에는 큰 충격과 변화가 발생했는데, 팬데믹의 영향을 고찰한 연구에서는 학교교육의 기능과 효과가 감소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에 의해 학생들의 학력저차가 심해졌다고 보고했다(정송·안영은, 2021; Bailey et al., 2021).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대면수업 감소, 고립 등으로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우울 등 심리적 문제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이에 따르는 다양한 문제를 비대면으로 처리해야 했던 교사와 학교 행정가들의 스트레스도 심각했다(박현진 외, 2022; Kulikowski, Przytula, & Sulkowski, 2022).

2022년에 들어서면서 코로나19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학교 수업은 이전의 대면수업으로 전환되었지만,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악화되면 비대면 수업으로 회귀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김형민, 2022.5.30.). 그러므로 교육당국과 학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면 비대면수업이 시행되었던 기간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것의 정책적, 교육적 함의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함의 중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원격수업상황이 남녀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태도와 성취도에 주는 영향도 정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Laudato & Punzalan, 2021; Yu & Yu, 2021).

일반적으로 수학과 과학성취에서 남학생이 우세하다는 보고가 있었지만(Wajngurt & Sloan, 2019), 최근 들어 이러한 성차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이순주, 2019).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은 고등학생의 거의 모든 과목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특히 수학의 경우 다른 과목보다 하향세가 뚜렷했다(김홍겸, 2021; Bailey et al., 2021). 향후에도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Smitham & Glassman, 2021), 비대면 원격수업 간 물리적 환경조성, 교육자료의 제작과 함께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정 등 정의적(affective) 변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김준엽·서민희·성경희, 2022; Vanbecelaere

et al., 2021).

이봉주와 송미영(2011)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나타난 초·중·고 등학생의 수학에 대한 태도에 주목하고, 성차를 분석했다. 그 결과 우수학력 집단에서 수학에 대한 태도의 성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했는데, 우수 집단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수학에 대한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Eccles 등(1985)은 학문 선택모형을 제시하여 교사와 부모의 기대가 학생의 능력에 대한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고, 이런 의식들이 교과목에 대한 가치 인식에 영향을 주며, 학업성취로 연결된다는 경로모형을 제시했다. 이봉주와 송미영(2011)은 Eccles 등이 제시한 모형에 근거하여 수학에 대한 태도가 수학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로 규명하여, 수학성취에 끼치는 태도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연구는 학교학습 상황을 기반으로 하는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약 1년 정도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학생과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제한된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학교의 교육환경에서 단절되어 주로 가정에서 머물면서 받는 원격수업이 지속되어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기존의 모형이 타당한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졌다(이은경·오민아, 2022; Kanik, 2021). 정혜원 등(2021)은 랜덤포레스트기법을 적용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예측변인을 규명했는데, 2020년에 특징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해 집중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성차에 대한 규명은 없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원격수업이 지속된 상황에서 수학에 대한 태도와 수학성취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성별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팬데믹 상황에서 성차를 고려한 교수설계와 교육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원격수업 상황에서 여학생이 수학에 대해 가지는 태도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변수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데이터를 분석하여 수학에 대한 태도와 성취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서 성차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향후 재현될 수 있는 비대면 수업상황에서 여학생의 수학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2020년 비대면 수업상황에서 고등학생의 수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유의미한 성차가 있는가?

둘째, 2020년 비대면 수업상황에서 고등학생의 수학에 대한 태도가 수학 성적에 끼치는 매개효과에는 유의미한 성차가 있는가?

II. 선행연구 분석

1. 학업성취도의 성차에 영향을 끼친 변수

지금까지 전국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를 종단적으로 살펴보면 국어, 영어의 학업성취도 수준은 대체로 여학생의 성취가 높았지만, 수학 학업성취도는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임현정·시기자·김성은, 2016).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여학생의 학업성취가 높게 나타났는데, 서울교육종단 자료를 분석한 김경근 등(2014)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의 성취도가 높았다. 그러나 정예화와 정제영(2017)이 경기종단연구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여학생들은 국어와 영어에서 유의미하게 남학생보다 학업성취 수준이 높았으나, 수학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 자습시간, 사교육시간이 여학생의 학업성취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순근 등(2013)이 수행한 연구에서는 EBS 교육방송을 시청한 집단이 시청하지 않은 집단보다 국어성적은 높았으나 영어와 수학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홍순상과 홍윤표(2016)는 EBS 교육방송 시청이 수학 학업성취를 부정적으로 예측한다고 보고했는데, 이에 대해 연구자는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EBS 교육방송 시청이 학업성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김경근 등(2014)은 교과목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보고했고, 박소영과 정혜원(2020)은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송미영 등(2015)이 수행한 연구에서는 학교소속감이 높을수록 또래와 어울리고 학업에 집중하지 못해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는데, 남녀 학생의 성취에서는 엇갈리는 결과가 산출되었다.

이은경과 오민아(2022)가 2020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결과에서도 자기주도학습시간, 학습태도, 교사에 대한 만족도, 사교육 참여시간 등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서시간, 운동시간, EBS 교육방송 시청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수학성취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주는데, 이러한 요인의 영향에 대한 성별차이가 일관성있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또 2020년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수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유의미한 성별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분

석이 요구된다.

2. 수학적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성차

국가수준 학업성취도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여학생의 성취수준이 남학생보다 높는데(정혜원·김아름·백예은, 2021), 이러한 결과는 외국에서도 유사하다(McGeown & Warhurst, 2020). 다만, 이러한 차이는 과목별로 다른데 남학생은 과학과 수학에서 성취가 높고, 여학생은 읽기와 쓰기에서 성취수준이 높다(이광상·박인용, 2017).

특히 수학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성차가 발견되는데, 수학에 대한 태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이 높고, 이러한 차이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비교적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봉수·송미영, 2011; Duerr, 2012). 그러나 이순주(2017)가 분석한 연구에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수학에서 성취가 높게 나타나고, 특히 고등사고가 필요한 문항에서 남녀간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엇갈린 선행연구도 있다.

고상숙(2020)이 수행한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수학에 대한 불안수준이 높고, 수학 불안감 감소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여학생 집단에서 남학생에 비해서 그 효과가 더 높았음을 보고했다. Vakili와 Pourrazavy(2017)가 수행한 연구에서도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수학과 과학에 대한 불안수준이 높고 이것이 수학, 과학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다. 결국 수학과 과학에서 성차가 나타나는 것은 남녀 학생간 수학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서도 기인하는 것이다(Ahmed et al., 2017).

선행연구에서 수학에 대한 태도는 자신감, 흥미, 가치인식 등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김재철, 2002; Koyuncu & Dönmez, 2018). 수학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오랫동안 수행되었는데, 자신감은 수학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효능감으로서 과제에 대한 친숙함, 과제해결을 위한 전략 수립 용이성 등을 의미한다(McLeod, 1992). 수학에 대한 흥미는 수학과제에 대한 관심과 학습의욕을 의미하고, 수학에 대한 가치인식은 수학을 공부함으로써 인해서 학습자에게 발생할 이익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대학입학, 향후 진로개발 등에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감 등이 포함된다(김재철, 2002).

Eccles 등(1985)이 제안한 학업성취모형에 따르면 수학에 대한 태도는 수학적성취에 영향을 주는데, 수학에 대한 자신감, 흥미, 가치인식에서 나타나는

성차가 수학성취에 영향을 준다(이봉주·송미영, 2011). 수학에 대한 태도형성에는 문화적 환경, 과거의 경험, 사회적 기대, 수학성적에 대한 주관적 해석, 교사와 부모의 기대에 대한 학생의 주관적 해석, 자신의 목표에 대한 판단 등이 영향을 주는데(Eccles et al., 1985), 일반적으로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수학과 과학을 활용하는 전공과 직업에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진로성숙에 수학태도와 성취에 영향을 준다(Bielinski & Davison, 1998).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수학에 대한 태도에서 성차가 비대면 수업 환경에서 여전히 나타나는지, 수학에 대한 태도가 수학성취에 영향을 주는지, 이러한 영향에 성차가 나타나는지 여부 등 다양한 연구문제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정혜원 등(2021)은 랜덤포레스트 기법을 적용하여 팬데믹 상황에서 시행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결과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남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규명했는데, 여기에는 부모와의 관계, 교사에 대한 만족도, 진로성숙도, 원격수업만족도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했으며, 영향력에 성차가 있는 것으로 규명했다. 팬데믹 기간에 수행된 연구로서 부모, 교사, 원격수업만족도, 진로성숙도 등의 영향을 보여주어서 의미가 있다. 다만, 그 연구는 세부적인 경로계수를 도출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서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경로계수의 차이를 규명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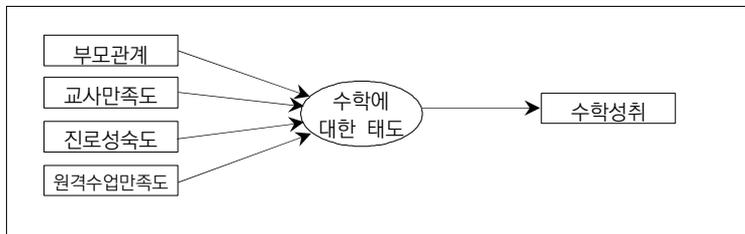
그러므로 이러한 선행연구 분석과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1. 수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는 유의미한 성차가 있을 것이다.
 - 1-1. 부모와의 관계, 수학교사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 진로성숙도, 원격 수학수업 만족도 등이 수학효능감, 수학흥미, 수학기치인식 등에 끼치는 영향은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수학에 대한 태도가 학업성취에 주는 정도에는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1. 수학태도가 수학성적에 끼치는 매개효과에는 유의미한 성차가 있을 것이다.
 - 2-2. 수학효능감, 수학흥미, 수학기치인식 등이 수학성적에 끼치는 영향에는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그림 1]과 같이 제시했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20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 응시한 당시 고등학교 2학년 104,720명이고, <표 1>에는 연구대상의 인구통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적 배경 비율

단위: %

구분	설립유형		지역규모			유형		학생 성별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일반고	특목고	남	여
학교 (N=212개교)	56.6	43.4	38.2	40.6	21.2	89.6	10.4	-	-
학생 (N=104,720명)	57.8	42.7	38.3	41.0	20.7	89.1	10.9	48.6	51.4

<표 1>을 살펴보면 설립유형으로는 국공립학교에 재학중인 학생(57.8%)이 사립학교 학생(42.7%)보다 많았고, 지역규모로는 중소도시에 재학 중인 학생(41.0%) 비율이 많았으며, 성별로는 여학생(51.4%)이 많았다.

3. 연구변수

1) 종속변수: 학업성취도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학업성취도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의 수학점수로서 200점 만점에 평균 146.68점이다. 성취수준별 학생의 분포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남녀 학생들 간에 수학학업성취도 분포를 살펴보면 우수집단에서 남학생의 비중(7.6%)이 높았고, 기초집단에서는 여학생의 비중이 높았으며(17.6%), 이러한 분포도에는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chi^2=88.08$, $df=3$, $p<.001$).

<표 2> 학업성취도 수준별 학생분포(N=104,720)

성별	우수		보통		기초		기초 미달		$\chi^2(df)$
	N	%	N	%	N	%	N	%	
남 (50920)	7930	7.6	12370	11.8	15290	14.6	15330	14.6	880.86 (3) $p<.001$
여 (53800)	5490	5.2	14790	14.1	18460	17.6	15060	14.4	
계 (104720)	13420	12.8	27160	25.9	3375	32.2	3039	29.0	

2) 독립변수: 부모와의 관계, 교사만족도, 진로성숙도, 원격수업만족도

부모와의 관계는 평소 부모와 학업이나 생활에 관련된 대화를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2개 문항으로 신뢰도는 알파계수 .87이었고, 교사 만족도는 교사가 열의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고, 학습자와 관계를 형성하는 정도에 관한 6문항으로 신뢰도는 알파계수 .89였다. 다음으로 진로성숙도는 장래에 가지고 싶은 직업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정도에 관한 5문항으로 신뢰도는 알파계수 .86이었다. 원격수업만족도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4문항으로 신뢰도는 알파계수 .85였다. 각 척도는 Likert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고, 신뢰도는 .86~.89 범위로 나타나서 사용하기에 적합했다.

3) 매개변수: 수학에 대한 태도(자신감, 흥미, 가치인식)

본 연구의 매개변수는 고등학생의 수학에 대한 태도로서 구체적인 하위변수

는 자신감, 흥미, 가치인식 등인데, 먼저 자신감은 수학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확신으로서 ‘친구에게 수학 문제를 설명해줄 수 있다’ 등 4개 문항으로 신뢰도는 알파계수 .85였다. 또 흥미는 ‘금방 답을 구할 수 없더라도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을 좋아한다’ 등 4개 문항으로 신뢰도는 알파계수 .86이다. 수학에 대한 가치인식은 ‘수학을 배우면 장래 여러 직업에서 쓸모가 있을 것이다’ 등 4개 문항으로 신뢰도는 알파계수 .89였다.

4. 자료분석 방법

첫 번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부모와의 관계, 교사만족도, 진로성숙도, 원격수업만족도 등을 독립변수로 하고, 수학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각 독립변수가 수학태도의 하위변인들에 끼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했다.

두 번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부모와의 관계, 교사만족도, 진로성숙도, 원격수업만족도 등을 독립변수로, 수학에 대한 태도를 매개변수로 하고, 수학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했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적용하여 유의미성을 확인하고, 수학태도의 하위변인들이 수학성적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기술통계, 상관분석을 위해서는 IBM SPSS 20.0을 사용했고,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위해서는 AMOS 21.0을 사용했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아래 <표 3>에는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8개 변수가 여학생 집단에서 나타나는 상관계수와 기술통계가 제시되어 있고, <표 4>에는 남학생 집단에서의 상관계수와 기술통계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수학 자신감, 수학 가치인식, 수학 흥미 등 수학에 대한 태도관련 변수들이 수학 성적과 상관성이 높았고, 원격수업만족도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수학성적과 부적 상관성이 있었는데, 여학생 집단에서의 부적 상관성이 다소 높았다.

〈표 3〉 여학생 집단에서 변수의 상관계수 및 기술통계(N=53,800)

변수	1	2	3	4	5	6	7	8
1	$\alpha = .88$							
2	.13*	$\alpha = .90$						
3	.11*	.17**	$\alpha = .87$					
4	.02	.47***	.13*	$\alpha = .86$				
5	.07*	.11*	.14*	.17**	$\alpha = .91$			
6	.18**	.22**	.09	.06	.32***	$\alpha = .88$		
7	.05	.21**	.08	-.08	.39***	.41***	$\alpha = .84$	
8	.11*	.18**	.12*	-.18*	.27**	.19**	.26**	$\alpha = .88$
M	2.81	2.19	3.17	2.12	2.02	2.21	2.15	147.13
SD	.41	.65	.57	.93	.99	.56	.61	20.59

* $p < .05$, ** $p < .01$, *** $p < .001$

변수명: 1=부모관계, 2=교사만족도, 3=진로성숙도, 4=원격수업만족도, 5=수학자신감, 6=수학가치인식, 7=수학흥미, 8=수학성적

〈표 4〉 남학생 집단에서 변수의 상관계수 및 기술통계(N=50,920)

변수	1	2	3	4	5	6	7	8
1	$\alpha = .82$							
2	.12*	$\alpha = .88$						
3	.15*	.16**	$\alpha = .89$					
4	.04	.45***	.16*	$\alpha = .87$				
5	.11*	.12*	.18*	.15**	$\alpha = .90$			
6	.17**	.24**	.07	.08	.35***	$\alpha = .87$		
7	.06	.20**	.11*	-.09	.37***	.40***	$\alpha = .85$	
8	.15*	.19**	.13*	-.15*	.28**	.18**	.24**	$\alpha = .83$
M	3.20	3.02	3.17	3.04	3.10	3.01	2.85	146.04
SD	.53	.61	.59	.88	.91	.60	.55	19.05

* $p < .05$, ** $p < .01$, *** $p < .001$

변수명: 1=부모관계, 2=교사만족도, 3=진로성숙도, 4=원격수업만족도, 5=수학자신감, 6=수학가치인식, 7=수학흥미, 8=수학성적

2. 수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의 성차분석

부모와의 관계, 교사에 대한 만족도, 진로성숙도, 원격수업 만족도 등이 수

학에 대한 태도에 끼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성차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다집단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시하고, 완전 동일성 제약모형, 구조 동일성 제약모형, 자유추정모형의 적합도를 <표 5>에 제시했다.

<표 5> 다집단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RMSEA	CFI	NFI	TLI
① 완전 동일성 제약	324.09	43	.11	.81	.80	.80
② 구조 동일성 제약	126.78	31	.07	.91	.91	.90
③ 자유 추정	93.02	27	.04	.95	.94	.93
Δ ②-③	33.76	4	.03	.04	.03	.03

남녀 고등학생에 대한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① 구조모수와 측정모수를 모두 동일 추정하도록 제약을 가한 모형, ② 구조모수만 동일하게 추정하도록 제약을 가한 모형, ③ 구조모수와 측정모수를 집단별로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한 모형의 적합도를 검토한 결과 ②번모형($\chi^2=126.78$, $df=31$, $RMSEA=.07$, $CFI=.90$, $NFI=.91$, $TLI=.90$)과 ③번 모형($\chi^2=93.02$, $df=27$, $RMSEA=.04$, $CFI=.95$, $NFI=.94$, $TLI=.93$)의 적합도가 수용할 만한 수준에 있었다. 두 가지 모형이 위계적으로 배속되어 있으므로 위계적 카이자승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유추정모형이 자유도가 4단위 감소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절대적 적합도와 비교 적합도를 개선했다($\Delta\chi^2=33.76$, $\Delta df=4$, $p<.001$, $\Delta RMSEA=.03$, $\Delta CFI=.04$, $\Delta NFI=.03$, $\Delta TLI=.03$). 이에 따라서 자유추정모형을 최적 모형으로 채택하고, 남녀 집단별 구조모수 추정치를 <표 6>에 제시했다.

<표 6> 남녀 고등학생의 모수 추정치 비교

여학생			남학생		
경로	추정치	CR	경로	추정치	CR
부모관계 →수학태도	.11	2.06*	부모관계 →수학태도	.08	1.37
교사만족도→수학태도	.16	3.11**	교사만족도→수학태도	.12	2.07*
진로성숙도→수학태도	.17	3.20**	진로성숙도→수학태도	.11	2.70*
원격만족도→수학태도	-.09	1.12	원격만족도→수학태도	-.11	-2.02*

* $p<.05$, ** $p<.01$

<표 6>에 제시된 결과를 검토해보면 여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가 수학에 대한 태도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이 유의미했으나($\gamma=.11$, $p<.05$), 남학생의 경

우 유의미하지 않았다($\gamma=.08, p>.05$). 수학교사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수학에 대한 태도에 끼치는 영향은 여학생($\gamma=.16, p<.01$)과 남학생($\gamma=.12, p<.05$) 모두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이었는데 여학생의 수학태도에 끼치는 영향이 다소 높았다. 진로성숙도가 수학에 대한 태도에 끼치는 영향도 여학생($\gamma=.17, p<.01$)과 남학생($\gamma=.11, p<.05$) 모두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이었는데 여학생의 수학태도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원격수업만족도가 수학에 대한 태도에 끼치는 영향은 여학생 집단($\gamma=-.09, p>.05$)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남학생 집단($\gamma=-.11, p<.05$)에서는 유의미하게 부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판단할 때 외생 독립변수가 수학에 대한 태도에 끼치는 영향에는 유의미한 성차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1은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어서 외생 독립변수들이 수학에 대한 태도의 하위변인들에 끼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 경로분석의 모형 적합도와 모수 추정치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남녀 고등학생의 모수 추정치 비교

여학생				남학생			
경로	추정치	CR	경로	추정치	CR		
부모관계 →자신감	.16	2.12*	부모관계 →자신감	.12	2.06*		
교사만족도→자신감	-.07	1.01	교사만족도→자신감	-.01	.26		
진로성숙도→자신감	.08	1.12	진로성숙도→자신감	.18	2.17*		
원격만족도→자신감	-.04	-.98	원격만족도→자신감	-.05	-.91		
부모관계 →가치인식	.19	2.31*	부모관계 →가치인식	.15	2.08*		
교사만족도→가치인식	.15	2.11*	교사만족도→가치인식	.12	2.09*		
진로성숙도→가치인식	.16	2.14*	진로성숙도→가치인식	.17	2.17*		
원격만족도→가치인식	-.02	-.71	원격만족도→가치인식	-.05	-.85		
부모관계 →흥미	.09	1.02	부모관계 →흥미	.07	.98		
교사만족도→흥미	.18	2.86*	교사만족도→흥미	.15	2.14*		
진로성숙도→흥미	.12	2.04*	진로성숙도→흥미	.19	3.11**		
원격만족도→흥미	-.08	-.43	원격만족도→흥미	-.10	-.81		
χ^2	df	RMSEA	CFI	NFI	TLI		
113.18	46	.06	.92	.92	.91		

* $p<.05$, ** $p<.01$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모형적합도는 통계적으로 허용할 만한 범위에 있었다 ($\chi^2=113.18, df=46, RMSEA=.06, CFI=.92, NFI=.92, TLI=.91$). 세부적인

경로계수의 유의미성을 살펴보면 먼저, 부모와의 관계는 수학에 대한 자신감에 남녀 학생 모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는데, 여학생 집단의 영향력이 다소 높았다($r=.16, p<.05$). 다음으로 진로성숙도는 여학생 집단의 자신감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남학생의 경우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r=.18, p<.05$).

부모와의 관계, 수학교사의 수업만족도, 진로성숙도 등은 남녀 학생 모두 수학기치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여학생 집단에 끼치는 영향이 다소 높았다. 그러나, 원격수업만족도가 수학기치인식에 끼는 영향을 남녀학생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 수학교사의 수업만족도가 수학흥미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은 남녀 학생집단 모두 유의미했는데, 여학생 집단에서 다소 더 높았고, 진로성숙도는 남녀 학생집단의 수학흥미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남학생 집단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이 더 컸다.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 원격수업만족도는 남녀 학생의 수학흥미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대체로 여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수학에 대한 태도의 하위변인에 끼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고, 남학생의 경우는 진로성숙도가 끼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서 차이점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판단할 때 부모와의 관계, 교사의 수업만족도, 진로성숙도, 원격수업만족도 등이 수학자신감, 수학기치인식, 수학흥미 등에 끼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성차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1-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3. 수학에 대한 태도가 수학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성차

수학에 대한 태도가 수학성취에 끼치는 매개효과에 유의미한 성차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적용하여, 500회 반복했고, 95% 신뢰수준을 검토했다. 그 결과를 아래 <표 8>에 제시했다.

<표 8> 남녀 고등학생의 모수 추정치 비교

여학생			남학생		
매개효과	CR	95% CI	매개효과	CR	95% CI
.22	3.78**	.38~.12	.17	2.55*	.09~.23

* $p<.05$, ** $p<.01$

〈표 8〉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여학생의 수학태도가 수학성적에 끼치는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beta=.22, p<.01$),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았다. 남학생 집단에서도 매개효과는 유의미했고($\beta=.17, p<.01$),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여학생 집단의 매개효과보다는 낮았다.

다음으로 수학효능감, 수학흥미, 수학기치인식 등이 수학점수에 끼치는 영향에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경로분석을 실시하고 모형적합도를 〈표 9〉에 제시했다.

〈표 9〉 다집단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RMSEA	CFI	NFI	TLI
① 동일성 제약	485.23	42	.09	.82	.83	.81
② 자유추정	103.15	35	.05	.91	.91	.90
Δ ②-①	382.08	7	.04	.09	.08	.09

〈표 9〉를 살펴보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로계수 추정치를 남녀 집단 동일하게 추정하도록 제약을 가한 모형의 적합도는 열악하게 나타났으나($\chi^2=485.23, df=42, RMSEA=.09, CFI=.82, NFI=.83, TLI=.81$), 제약을 가하지 않은 자유추정모형은 수용할만한 적합도를 보였다($\chi^2=103.15, df=35, RMSEA=.05, CFI=.91, NFI=.91, TLI=.90$). 두 모형이 위계적으로 배속되어 있으므로 위계적 카이자승 검정으로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했는데, 자유추정모형이 자유도가 7단위 감소하지만, 모형 적합도를 유의미하게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lta \chi^2=382.08, \Delta df=7, p<.001$). 또한 증가적합도 지수 역시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lta CFI=.09, \Delta NFI=.08, \Delta TLI=.09$).

구체적으로 개별 매개변수의 영향력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매개효과를 비교하여 〈표 10〉에 제시했다.

〈표 10〉 남녀 고등학생의 모수 추정치 비교

여학생			남학생		
경로	추정치	CR	경로	추정치	CR
수학자신감→수학성적	.13	2.97*	수학자신감→수학성적	.12	2.81*
수학기치인식→수학성적	.11	2.66*	수학기치인식→수학성적	.08	2.26*
수학흥미 → 수학성적	.09	2.17*	수학흥미 → 수학성적	.07	1.70

* $p<.05$

결과를 살펴보면 수학자신감이 수학성적에 끼치는 영향은 여학생($\beta=.13$, $p<.05$)과 남학생 집단($\beta=.12$, $p<.05$)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수학기치인식이 수학성적에 끼치는 영향도 여학생($\beta=.11$, $p<.05$)과 남학생 집단($\beta=.08$, $p<.05$)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학생 집단에서의 영향이 다소 높았다. 수학에 대한 흥미가 수학성적에 끼치는 영향은 여학생 집단($\beta=.09$, $p<.05$)에서는 유의미하게 긍정적이었지만, 남학생 집단($\beta=.07$, $p>.05$)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판단할 때 수학에 대한 태도의 하위변수들이 수학성적에 끼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성별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2-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V. 결론 및 논의

1. 결론 및 논의

위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부모와의 관계, 교사에 대한 만족도, 진로성숙도, 원격 수학수업에 대한 만족도 등이 수학태도에 끼치는 영향에는 유의미한 성차가 있다. 둘째, 부모와의 관계, 수학교사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 진로성숙도, 원격 수학수업 만족도 등이 수학자신감, 수학기치인식, 수학흥미 등에 끼치는 영향에는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셋째, 수학에 대한 태도가 수학성적에 끼치는 매개효과에는 유의미한 성차가 있다. 넷째, 수학효능감, 수학흥미, 수학기치인식 등이 수학성적에 끼치는 영향에는 유의미한 성차가 있다. 이러한 결론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의 관계는 여학생의 수학에 대한 태도에 남학생보다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기대와 관여가 자녀의 수학에 대한 신념과 성취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국내외 선행연구와 일치한다(임해미, 2016; Kiss & Vukovic, 2021; Levine & Pantoja, 2021). 임해미(2016)는 PISA 데이터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학부모의 수학에 대한 태도와 기대가 자녀의 수학에 대한 태도, 동기, 성취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다. 부모가 수학이 필요한 과목이라고 인식할수록 자녀 역시 수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진로를 설정할 때 수학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ss와 Vukovic(2021)이 수행한 연구에서도 부모의 교육에 대

한 기대가 자녀의 수학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루어진 원격수업 환경에서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에 대한 관여와 지지를 할수록 자녀의 수학성취가 증진된다고 보고했다. Levine과 Pantoja(2021)는 부모와 교사는 청소년이 수학에 대한 태도와 동기, 성취 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사회적 역할자(key socializer)로서 영향을 주며, 이들이 끼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있다고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 여학생 집단에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수학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남학생 집단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로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전면 비대면수업이 이루어졌던 학습환경을 고려한다면 가정에서 부모와 학업에 관련된 대화를 하고, 부모의 지원을 받는 것이 여학생의 수학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부모의 지도감독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생에게는 학교와 교육행정당국의 확인과 배려가 요구되는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 집단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남녀 고등학생 모두에게 수학에 대한 태도 긍정적 태도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외에서 보고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김용석, 2020; 김홍겸, 2021; Ye & Singh, 2017). 김용석(2020)이 수행한 종단연구에서 수학교사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 수업 분위기 등은 수학태도와 성취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김홍겸(2021)이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원격수업 상황에서 수행한 연구에서도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수학에 대한 태도와 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Ye와 Singh은 수학교사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태도에 주는 영향을 규명하면서 동시에 이에 관여하는 변수로서 교사의 근무환경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결과를 본 연구와 관련하여 생각해보면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남녀 학생 모두의 수학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교사들이 원격수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과정에서부터 체계적인 원격수업을 설계하고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Young & Dyess, 2021).

셋째, 진로성숙도가 수학에 대한 태도에 끼치는 영향은 남녀 학생 모두에게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여학생 집단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송주연, 2018; Franz-Odendaal, Blotnicky, & Joy, 2020). 송주연(2018)은 수학에 관련된 진로선택이 수학에 대한 태도와

수학성취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영향에 유의미한 성차가 발견된다고 보고했다. Franz-Odendaal 등(2020)이 보고한 연구결과에서도 미래 진로에 대한 기대는 청소년들이 수학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수학과 과학이 진로에 끼치는 영향을 인식한 여학생들이 수학학습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들은 여학생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수학이 향후 직업선택에 끼치는 영향을 설명하여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고, 수학을 활용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야 한다.

넷째, 수학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수학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여기에 성별차이가 나타난 결과는 Ali(2020)가 보고한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Ali의 연구에서 원격수업의 부정적인 영향은 남학생에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기에 반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면 비대면 수업은 이전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전면적 혹은 부분적 비대면 수업이 재개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 남학생의 수학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여학생에게 주는 부정적 영향을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냈다.

다섯째, 수학에 대한 태도가 수학성취에 끼치는 매개효과에는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났는데, 이는 수학에 대한 태도에 관해 수행된 국내외 선행연구와 일치한다(이봉주·송미영, 2011; 이상희·안성희, 2016; Kombe et al., 2016). 이봉주와 송미영(2011)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수학에 대한 태도가 수학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보다 그 영향이 크다고 보고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 집단에서 매개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상희와 안성희(2016)의 연구결과에서는 수학태도는 남학생의 수학관련 진로선택과 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결과가 달랐다. Kombe 등(2016)이 보고한 결과에서는 수학은 남학생이 우위에 있는 과목이라는 인식이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수학성취가 다소 높고, 수학에 대한 태도가 성취에 끼치는 매개효과도 높게 나타났다. 이전의 연구결과들은 대면수업 환경에서 수행한 것이지만 본 연구는 비대면수업 상황에서 실시된 것이다. 이런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주로 가정에 머무르면서 온라인 원격수업에 얼마나 집중했는지가 성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학생에게 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학습동기가 높은 여학생이 비대면 원격수업 상황에서 수학성취에 더 우수한

결과를 보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섯째, 수학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인 중 수학 자신감, 수학 가치인식, 수학 흥미는 모두 여학생의 수학성적에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주영주 등(2012)이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 주영주 등(2012)은 여학생 집단에서 수학에 대한 태도가 교수활동 등이 수학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매개한다고 규명했는데, 이들은 중학생의 결과를 분석한 것이어서 본 연구를 통해서 수학에 대한 태도의 영향력이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수학에 대한 태도의 세 가지 하위요인 중 특히 수학에 대한 가치인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제4차 산업혁명기술 중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중 핵심능력은 모두 수리적 이해도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볼 때 수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원격수업만족도 등의 요인이 여학생의 수학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수학의 가치에 대한 설명, 전문가 초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2. 제언

이러한 결론이 여학생 수학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고생의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을 위해 부모와 교사의 노력이 중요하다.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초등학교까지는 수학에 대한 태도나 성취에서 성차가 유의미하지 않지만, 중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성차가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부모나 교사가 단지 수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수학이 향후 학습이나 진로 선택 등에 끼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수학불안을 감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학생들이 수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교사와 부모가 지속적으로 여학생이 수학과제에 관심을 가지고, 수학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 진로탐색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원격수업 환경에서 여자 고등학생이 남자 고등학생보다 다소 성취가 높게 나타났고, 원격수업이 수학태도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남학생에 비해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원격수업이 수학에 대한 태도나 수학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따라서 향후 코로나19가 심화되어 원격수업을 하더라도 교사와 상호작용을 유지하고, 개별적인 질의/응답, 설명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블렌디드 수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즉, 비대면수업 상

황에서도 교사로부터 지속적인 피드백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교수설계가 꼭 필요하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수업 상황에서 시행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데이터를 분석하여 여학생의 수학태도와 성취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 성차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연구의 한계도 있다. 즉, 조사연구의 결과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향후 실험설계를 적용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개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의 특성상 연구자가 의도한 변수를 추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에는 연구자가 설문도구를 개발하여 보다 다양한 변수를 추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상숙(2020). “수학불안감소 처치프로그램에서 남녀 성차에 관한 연구”. 한국학 교수학회논문집. 제23권 제1호. 111-127.
- 김경근·연보라·장희원(2014). “서울시 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 영향요인 및 그 함의”. 교육사회학연구. 제24권 제4호. 1-29.
- 김용석(2020). “수학수업 태도, 분위기, 만족도가 수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수학교육 논문집. 제34권 제4호. 525-544.
- 김재철(2002). 학생 배경변인과 수학에 대한 태도 변화와의 관계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준엽·서민희·성경희(2022). “학생의 학업성취와 정의적 태도에 나타난 혁신학교의 성과”. 한국교육문제연구. 제40권 제1호. 27-51.
- 김형민(2022.5.30.). “안심은 금물...코로나 여름 재유행 경고한 방역당국”. <https://www.sedaily.com/NewsView/26666J02L8>에서 2022.5.30. 인출
- 김홍겸(2021).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수학과 원격수업의 만족도 및 수학학습과의 연관성에 대한 사례연구”. 수학교육논문집. 제35권 제3호. 341-358.
- 김효원·최현준·김누리(2021). “코로나19 대응 원격수업에 대한 중등교사의 인식 변화: 2020년 1, 2학기 비교”. 교원교육. 제37권 제4호. 273-293.
- 박소영·정혜원(2020).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삶의 만족도 잠재프로파일 유형 분류 및 영향요인 검증”. 열린교육연구. 제28권 제3호. 47-72.
- 박현진·고현국·장영수·정진욱·권동택(2022). “코로나19 스트레스와 교사의 직무만족 및 학생의 학교생활만족 간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2권 제4호. 919-935.
- 백순근·길혜지·홍미애(2013). “EBS강의가 고등학생의 교과별 사교육비와 영영별 수능 성적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제14권 제1호. 137-162.
- 송미영·임현정·임해미·박혜영·구자옥(2015). “PISA 2012 결과에 나타난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 영향요인 비교”. 교육과학연구. 제46권 제4호. 99-122.
- 송주연(2018). “수학 관련 진로선택과 수학 수업참여, 수학성취에 대한 성별의 역할: 수학 자기효능감과 과제가치, 과제비용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제31권 제2호. 1-25.
- 이광상·박인용(2017). “TIMSS 수학성취도 평가에 나타난 한국 학생들의 성차 특성”. 교육과정평가연구. 제18권 제1호. 155-183.
- 이봉주·송미영(201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나타난 초·중·고등학생의

- 수학에 대한 태도의 성차 분석”.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제14권 제1호. 65-84.
- 이상희·안성희(2016). “고등학생의 수학 자기효능감, 수학불안, 수학태도에 따른 수학 진로선택”. 청소년학연구. 제23권 제6호. 1-26.
- 이순주(2019). “수학 학업성취도에서의 학교급별 성차 분석”. 교육혁신연구. 제29권 제2호. 1-16.
- 이은경·오민아(2022).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중·고등학생 학업성취도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2권 제4호. 531-545.
- 임해미(2016). “부모의 수학에 대한 태도와 기대가 수학 학습 동기와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수학교육학연구. 제26권 제4호. 701-714.
- 임현정·시기자·김성은(2016). “학생 학업성취 변화의 영향요인 탐색: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세시점 연계자료 분석”. 교육평가연구. 제29권 제1호. 123-145.
- 정송·안영은(2021). “코로나19 전후 학교 내 학력격차 실태 분석: 서울 소재 중학교 학업성취등급 분포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제31권 제2호. 53-74.
- 정예화·정제영(2017).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제35권 제2호. 1-20.
- 정혜원·김아름·백예은(202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기반한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 예측 변인 탐색”. 중등교육연구. 제69권 제4호. 493-527.
- 주영주·이종희·유나연(2012). “중학생의 수학 교과에 대한 자신감, 긍정적 태도, 교수활동, 성취도의 구조적 관계규명과 남·녀 집단 간의 영향력 차이 검증”. 중등교육연구. 제60권 제4호. 963-986.
- 홍순상·홍윤표(2016). “사교육 경험과 EBS 방송 시청이 수학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제19권 제2호. 123-151.
- Ahmed, K., Trager, B., Rodwell, M., Foinding, L., & Lopez, C. (2017). A Review of Mindfulness Research Related to Alleviating Math and Science Anxiety. *Journal for Leadership and Instruction*, 16(2), 26-30.
- Ali, P. (2020). Performance and Attitude in Relation to Gender in a Computer Aided Developmental Math Class. *Research & Teaching in Developmental Education*, 17-22.
- Bailey, D. H., Duncan, G. J., Murnane, R. J., & Au Yeung, N. (2021).

- Achievement Gaps in the Wake of COVID-19. *Educational Researcher*, 50(5), 266-275.
- Bielinski, J., & Davison, M. L. (1998). Gender differences by item difficulty interactions in multiple-choice mathematics item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5, 455-476.
- Duerr, S. R. (2012). *Relationships between Gender, Socioeconomic Status, Math Attitudes, and Math Achievement: A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Rhode Island
- Eccles, J., Adler, T. F., Futterman, R., Goff, S. B., Kaczala, C. M., Meece, J. L., & Midgley, C. (1985). Self-perceptions, task perceptions, socializing influences, and the decision to enroll in mathematics. In S. F. Chipman, L. R. Brush, & D. M. Wilson(Eds.), *Women and mathematics: Balancing the equation* (pp. 95-121).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Franz-Odendaal, T. A., Blotnicky, K. A., & Joy, P. (2020). Math Self-Efficacy and the Likelihood of Pursuing a STEM-Based Career: A Gender-Based Analysis. *Canadian Journal of Science, Mathematics and Technology Education*, 20(3), 538-556.
- Kanik, M. (2021). Students' Perception of and Engagement in Reactive Online Education Provid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ternational Online Journal of Education and Teaching*, 8(2), 1063-1082.
- Kiss, A. J., & Vukovic, R. (2021). Exploring Educational Engagement for Parents with Math Anxiety. *Psychology in the Schools*, 58(2), 364-376.
- Kombe, D., Che, S. M., Carter, T. L., & Bridges, W. (2016). Student Academic Self-Concept and Perception of Classroom Environment in Single-Sex and Coeducational Middle Grades Mathematics Classes. *School Science and Mathematics*, 116(5), 265-275.
- Koyuncu, B., & Dönmez, P. (2018). Predictive Value of Sense of Self-Efficacy and Attitudes of High School Students for Their Resistance to Mathematics. *Univers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6(8), 1629-1636.

- Levine, S. C., & Pantoja, N. (2021). Development of Children's Math Attitudes: Gender Differences, Key Socializers, and Intervention Approaches. *Grantee Submission, Developmental Review*, 62, Article 100997.
- McGeown, S. P., Warhurst, A. (2020). Sex Differences in Education: Exploring Children's Gender Identity. *Educational Psychology*, 40(1), 103-119.
- McLeod, D. B. (1992). Research on affect in mathematics education: A reconceptualization. In D. A. Grouws (Ed.), *Handbook of research on mathematics teaching and learning* (pp. 575-595). New York: Macmillan.
- Mitchell, C., Anderson, K., Laverie, D., & Hass, A. (2021). Distance Be Damned: The Importance of Social Presence in a Pandemic Constrained Environment. *Marketing Education Review*, 31(4), 294-310.
- Kulikowski, K., Przytula, S., & Sulkowski, L. (2022). E-Learning? Never Again! On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COVID-19 Forced E-Learning on Academic Teacher Motivational Job Characteristics. *Higher Education Quarterly*, 76(1), 174-189.
- Laudato, E. E., & Punzalan, C. H. (2021). Digital Literacy of Selecte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An Analysis for Online Education Readiness.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18(2), 53-62.
- Smitham, E., & Glassman, A. (2021). The Next Pandemic Could Come Soon and Be Deadlier.
<https://www.cgdev.org/blog/the-next-pandemic-could-come-soon-and-be-deadlier> retrieved on 2022. 5. 31.
- Vakili, K., & Pourrazavy, Z. A. (2017). Comparing the Math Anxiety of Secondary School Female Students in Groups (Science and Mathematical Physics) Public School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and Science Education*, 12(4), 755-761.
- Vanbecelaere, S., Matsuyama1, K., Reynvoet1, B., & Depaepel, F. (2021). The Role of the Home Learning Environment on Early Cognitive and Non-Cognitive Outcomes in Math and Reading.

- Frontiers in Education*, 6:746296. Doi: 10.3389/feduc.2021.746296
- Wajngurt, C., & Sloan, P. J. (2019). Overcoming Gender Bias in STEM: The Effect of Adding the Arts (STEAM). *InSight: A Journal of Scholarly Teaching*, 14, 13-28.
- Ye, Y., & Singh, K. (2017). The Effect of Working Condition on Math Teacher Effectiveness: Value-Added Scores and Student Satisfaction in Teaching. *Educational Research for Policy and Practice*, 16(3), 283-295.
- Young, E. S., & Dyess, S. R. (2021). Supporting Prospective Teachers in Problem Solving: Incorporating Mindset Messaging to Overcome Math Anxiety. *Mathematics Teacher Educator*, 10(1), 9-28.
- Yu, Z., & Yu, L. (2021). A Meta-Analysis of Online Learning Outcomes and Their Gender Differ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Distance Education Technologies*, 19(3), 33-50.

Abstract

Gender Differences in Variables Affecting High School Students' Attitudes toward Mathematics and Achievement in the COVID-19 Pandemic

Byongsam, 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whether there is a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between the attitude toward mathematics and the variables affecting mathematical achievement in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and to suggest a plan to improve female students' attitudes toward mathematics. To achieve this goal, the mathematical grades of 104,720 male and female students from 212 high schools who participated in the 2020 national-level academic achievement evaluation were analyzed. First, as a result of conducting a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to determine the gender difference of variables that affect attitudes toward mathematics, female students' relationships with parents have a large influence on attitudes toward mathematics, and male students have a large influence on attitudes toward mathematics. In addition, as a result of conducting a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in the mediating effect of attitudes toward mathematics on mathematical grades. In the female student group, mathematical confidence, mathematical value recognition, and mathematical interest all showe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on grades, but in the male student group, the mediating effect of mathematical interest was not significant. These results show that in order for female students to form a positive attitude toward mathematics, parents and teachers should specifically educate about the value and usefulness of mathematics.

Keywords : covid19, pandemic, high school student, gender difference, multiple 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Professor,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oen

2022년 3호
(통권 114호)
여 성 연 구

발행인 문 유 경
편집인 이 미 정
등록일 1983년 11월 23일
등록번호 바-813
발행일 2022년 9월 30일
발행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 (불광동 1-363)
TEL. 02)3156-7000(代) FAX. 02)3156-7007
인쇄처 리드릭 TEL. 02)2269-1919

